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총괄	박용주 재정정보연구본부장
기획·조정	연훈수 재정운영지원팀장
작성	한승희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지원	조승현 재정운영지원팀 사원 김서영 재정운영지원팀 인턴
문의	재정정보연구본부 재정운영지원팀 02-6908-8580 shhan@kpfis.kr

이 책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국고보조금 8

제1장 ▶▶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해**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2**

1) 개념 12

2) 목적과 특징 13

2. 국고보조금의 규모 **16**

1) 연도별 추이 16

2) 분야·부문별 현황 17

3) 담당 부처별 현황 21

4) 의무·재량지출 현황 21

5) 회계·기금별 현황 23

6) 집행 현황 26

3. 국고보조금의 유형 **29**

1)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민간 29

2) 부담 방식: 정액, 정률 30

3) 보조율 기준: 일률보조, 차등보조 31

4) 지원 내용: 경상보조, 자본보조 33

5) 교부 조건: 특정보조, 포괄보조 35

4. 근거 법령과 연혁 **36**

1) 근거 법령과 지침 36

2) 근거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37

5.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42**

1) 공모와 선정 42

(1) 공모 42

(2) 선정 43

(3)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 46

2) 집행 48

3) 정산과 검증 49

6. 정보공시 **51**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51

2) 중요재산 정보공시 53

7.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55**

1)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55

2) 평가 지표와 결과 55

제2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이해**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60**

1) 도입 배경 60

2) 구축 경과 62

3) 주요 기능 68

(1) 보조사업 관리 및 사업 수행 관리 68

(2) 집행 관리 68

(3) 집행 정산 및 반납 관리 69

(4) 중복·부정수급 관리 70

(5) 정보 공개 72

제3장

▶▶ 주요 국고보조사업 소개

2. 구축 효과	76
1) 실시간(real-time) 보조금 업무 관리	76
2) 중복·부정수급 방지 체계 구축	77
3) 사업 구조 세분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79
4)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81
1. 생애주기별	86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영·유아)	86
2) 가정양육수당 지원(영·유아)	88
3) 아동수당 지급(영·유아)	89
4) 국가 예방접종 실시(영·유아/아동/노년)	90
5) 아이 돌봄 지원(영·유아/아동)	91
6)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93
7) 중·장년층 취업 지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중년/장년)	95
8) 기초연금 지급(노년)	97
9)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노년)	99
10) 노인 돌봄 서비스(노년)	101
2. 경제활동별	103
1) 직장 어린이집 지원(근로자·직장인)	103
2) 쌀 소득 보전 직불제(농업인)	105
3)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농업인)	106
4) 밭농업 직불제(농업인)	108
5)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어업인)	109
6) 정책숲가꾸기(임업인)	111

3. 소득 기준별	113
1) 의료급여(기초생활 수급자)	113
2) 생계급여(기초생활 수급자)	115
3) 교육급여(기초생활 수급자)	117
4) 주거급여(기초생활 수급자)	119
5)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121
6) 에너지 바우처(기초생활 수급자)	123
7) 해산장제급여(기초생활 수급자)	124
8) 긴급복지(긴급 지원 대상자)	126
4. 기업 규모별	128
1)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소기업/소상공인)	128
2) 시장 경영 혁신 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	131
5. 기타	132
1) 장애인 활동 지원(장애인)	132
2) 장애인연금(장애인)	134
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장애인)	136
4)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환경 개선)	137
5)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환경 개선)	140
부록 1: 보조사업 공고	144
부록 2: 보조사업 매뉴얼(예시)	154
부록 3: 보조사업 목록	160

미리 보는 국고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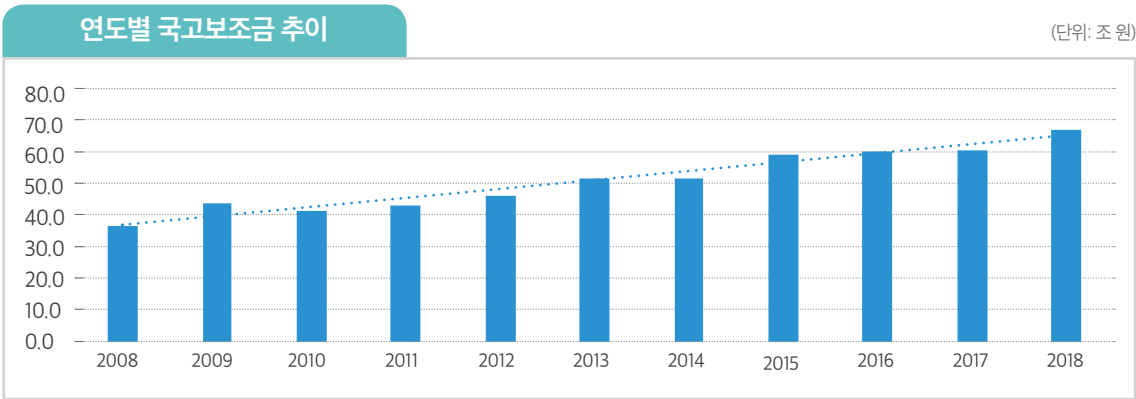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됨
-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matching fund) 확보 및 사후정산 의무가 있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조사업(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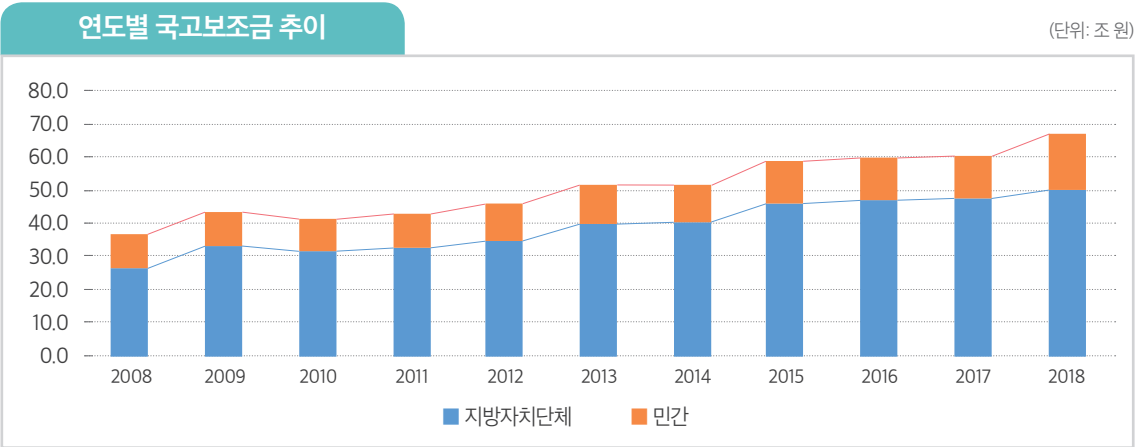
보조사업(예시)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	구호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전직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철도 공익 서비스(PSO) 보상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민자철도 운영 지원
주거급여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도시 재생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문화재 보수 정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	자활 사업	긴급복지

2018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66.9조 원(본예산)이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임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 그림 내의 점선은 추세선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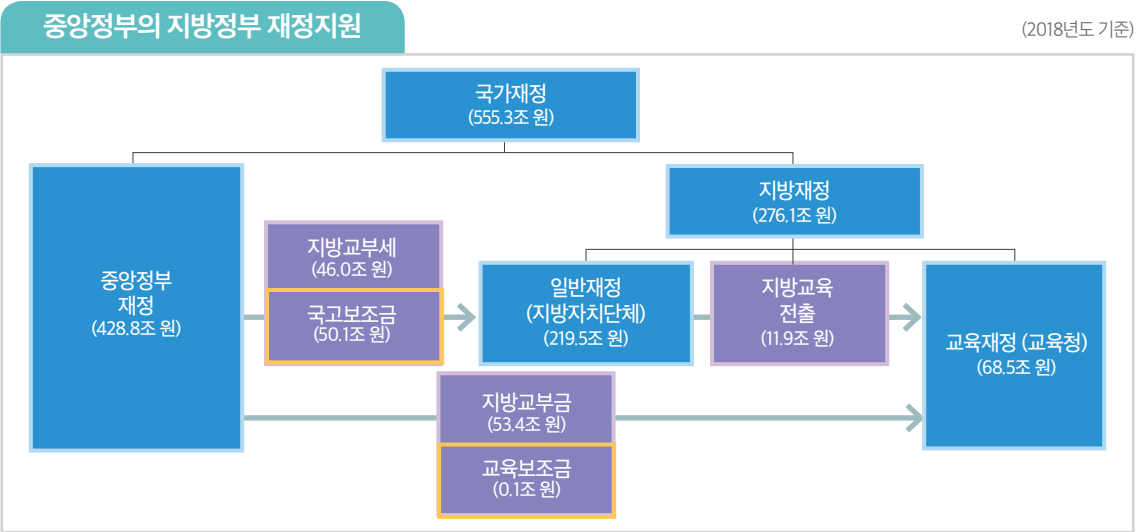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 보조금이 72% 이상(2008~2018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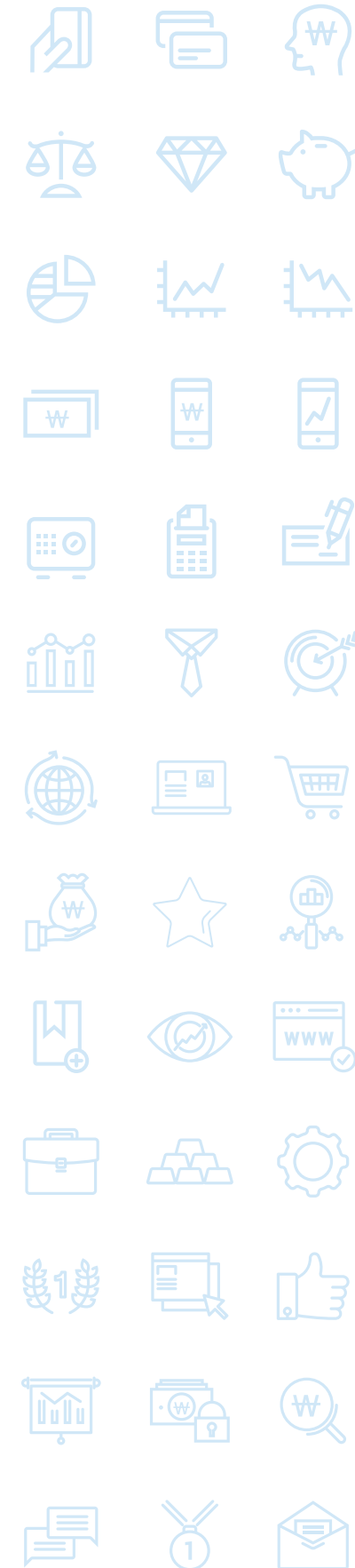
주: 2008~2017년은 결산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해의 이전 보조금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18), 2018 주요 재정 통계



제1장 국고보조금의 제도적 이해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2
2. 국고보조금의 규모	16
3. 국고보조금의 유형	29
4. 근거 법령과 연혁	36
5.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42
6. 정보공시	51
7.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55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보조금을 구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

국고보조금 예시

1. 기초연금

(목적)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대상)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

(지급 금액) 2017년 20.6만 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

2.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 유지

(대상)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기업)

(지급 금액) 2017년 월 최대 20.6만 원에서 2018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3. 아동수당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균등한 기회 보장

(대상) 0세~5세 아동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예산서의 비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분류

* 민간 경상 보조(320-01), 민간자본 보조(320-07),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해외 경상 이전(340-01), 해외 자본 이전(340-03)

- 실무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담금, 급부금, 장려비, 위탁금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해 사용
- 현재는 예산서의 비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분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 용어 정리가 필요

지방정부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 다른 지방정부와 민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가 지원

- 보조사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짐

- 전국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 재정 자급의 계획적 · 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 사업)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 사업의 보급 · 장려(협오 시설 또는 주민 기피 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 사업의 균형 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 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 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2017), 국고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
-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함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재원으로 함

표 1-1-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사업을 지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 재원
특징	사업별 용도 지정, 지방비(matching fund) 확보 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 배정

자료: 기획재정부(2017), 국고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국고보조금은 출연금, 출자금과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함

-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출자금은 공익 사업을 수행 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

표 1-1-2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 비교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개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대행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
일반법상 근거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개별법상	불필요	필요	필요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민간	정부 출연 기관	공익 사업 수행 법인
용도 지정 여부	사용 용도 지정	목적출연금은 지정, 기관출연금은 비지정	비지정
집행 잔액 처리	사후 정산, 국고 반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	사후 미정산, 집행 잔액은 집행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
이자수입 처리	국고 반환		집행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

자료: 박기영(2014), 한국재정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배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보조금의 환수(제33조제1항), 벌칙(제41조)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matching fund)를 확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1.7~24.3조 원

표 1-1-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지방비 부담	233,323	38.2	230,244	35.7	242,729	36.2	217,175	33.3	234,589	33.2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상): 예산 및 기금 운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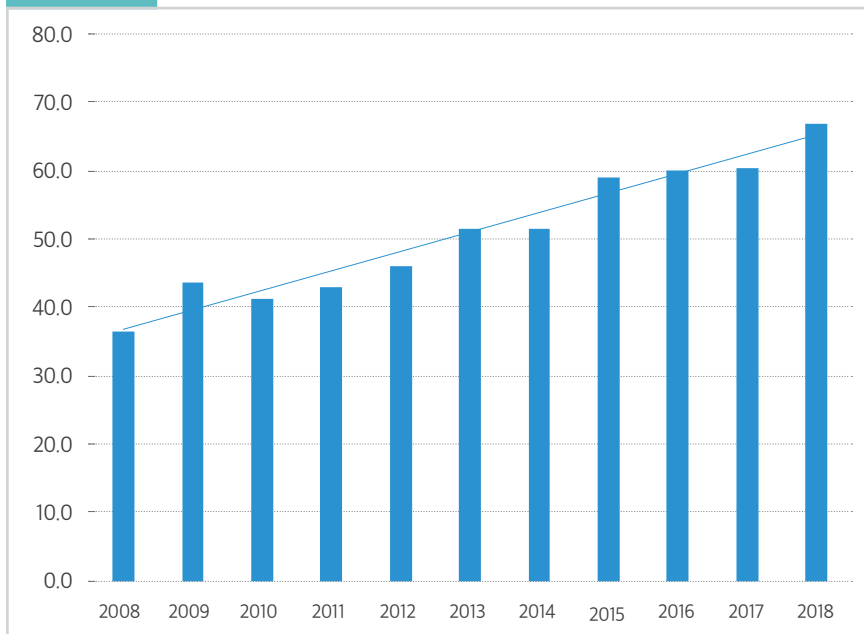
2008부터 2018년도까지 국고보조금은 증가 추세*

*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 2018년 국고보조금은 66.9조 원(본예산)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6.5조 원 증가
- 총 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 내외를 차지(2018년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5.6%)
 -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정부 총 지출 연평균 증가율(4.2%)보다 높음
 -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

그림 1-2-1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조 원,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 원)	36.7	43.7	41.3	42.9	46.0	51.7	51.7	59.1	60.2	60.4	66.9
(%)	(14.4)	(14.9)	(14.6)	(14.2)	(14.3)	(15.3)	(14.9)	(15.9)	(15.6)	(15.0)	(15.6)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 ()는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을 의미
 3: 그림 내의 점선은 추세선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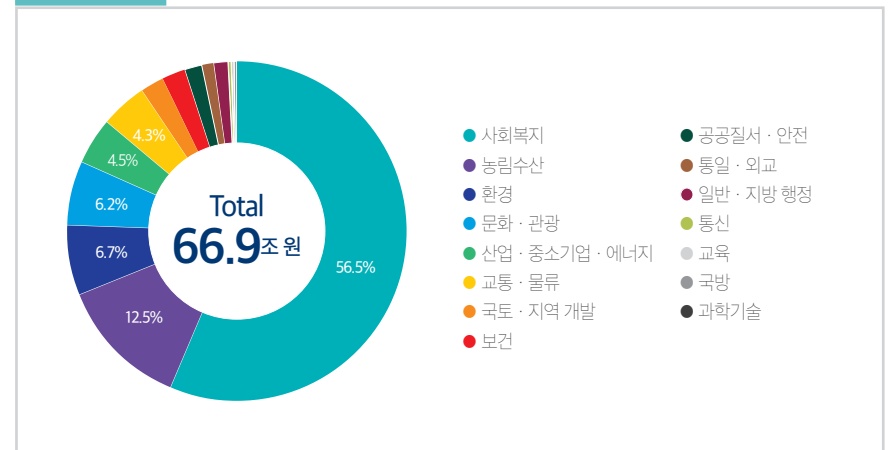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은 해외이전 보조금을 제외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이를 따름

2018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37조 8,307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중 절반 이상(56.5%)을 차지

- 농림수산 분야 8조 3,618억 원(12.5%), 환경 분야 4조 5,102억 원(6.7%), 문화 및 관광 분야 4조 1,330억 원(6.2%) 순으로 규모가 큼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

그림 1-2-2 2018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비중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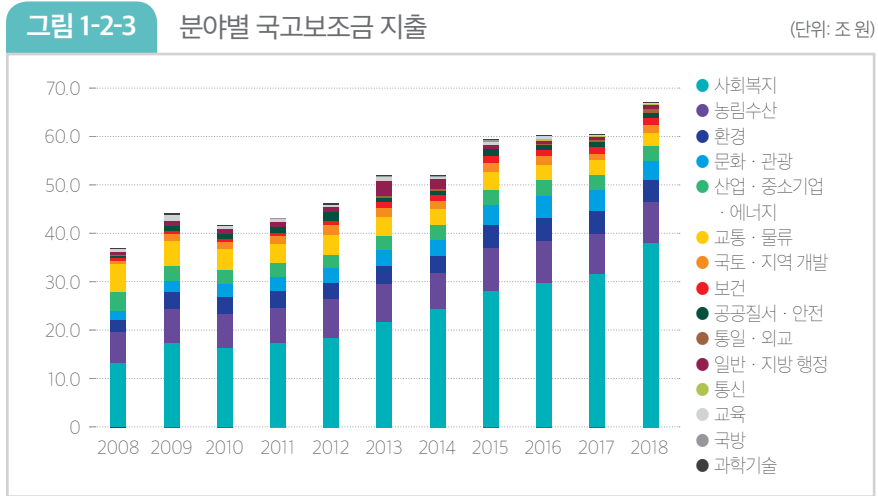
(분야)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국토·지역 개발	보건
(조 원)	37.8	8.4	4.5	4.1	3.0	2.9	1.6	1.5
(%)	(56.5)	(12.5)	(6.7)	(6.2)	(4.5)	(4.3)	(2.3)	(2.3)
(분야)	공공질서·안전	통일·외교	일반·지방 행정	통신	교육	국방	과학기술	합계
(조 원)	1.0	0.9	0.8	0.2	0.1	0.1	0.1	66.9
(%)	(1.5)	(1.3)	(1.2)	(0.3)	(0.2)	(0.2)	(0.1)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17년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사회복지 분야의 총 지출 대비 비중은 2008년 35.7%에서 2018년 56.5%로 20.8%p 증가
 - 두 번째로 지출 규모가 큰 농림수산 분야의 총 지출 대비 비중은 2008년 17.4%에서 2018년 12.5%로 4.9%p 감소하였으나, 지출 규모는 2008년 6.4조 원에서 2018년 8.4조 원으로 증가

표 1-2-1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 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분야												
(조 원)	13.1	17.1	16.1	17.0	18.1	21.5	24.1	27.8	29.5	31.3	37.8	
(%)	(35.7)	(39.0)	(38.9)	(39.5)	(39.5)	(41.6)	(46.5)	(47.0)	(49.1)	(51.9)	(56.5)	
농림수산 분야												
(조 원)	6.4	7.0	7.2	7.3	8.0	7.9	7.5	9.1	8.8	8.3	8.4	
(%)	(17.4)	(16.1)	(17.4)	(17.0)	(17.4)	(15.2)	(14.5)	(15.4)	(14.6)	(13.8)	(12.5)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 ()는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사회복지 분야, 농림수산 분야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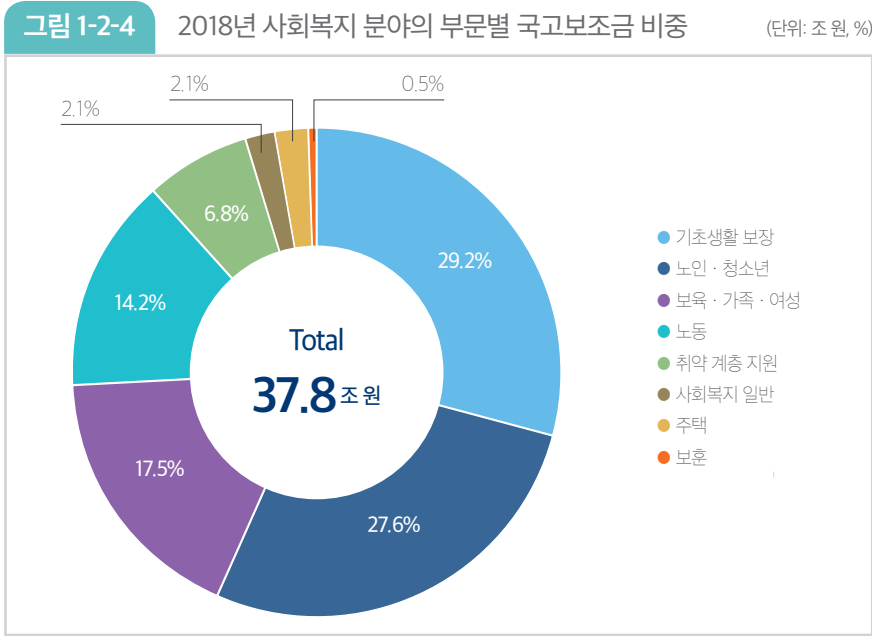


주: 2008년~2017년은 결산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부문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크며, 2018년 기준으로 11조 348억 원(29.2%)을 차지

-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청소년 부문 10조 4,415억 원(27.6%), 보육·가족·여성 부문 6조 6,328억 원(17.5%), 노동 부문 5조 3,682억 원(14.2%) 순으로 큰 지출 규모를 보임
- 기초생활 보장 부문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이 5조 3,460억 원으로 크며, 노인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9조 1,212억 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

• 사회복지 분야는 총 9개 부문으로 구성	
① 기초생활보장	② 노인·청소년
③ 공적연금	④ 보육·가족 및 여성
⑤ 노동	⑥ 취약 계층 지원
⑦ 사회복지 일반	⑧ 주택
⑨ 보훈	-
• 2019년부터 12개 부문으로 재구성	
-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을 아동·보육 부문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을 노인 부문과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나누고, 고용, 고용·노동 일반을 추가함	



(부문)	기초생활 보장	노인·청소년	보육·가족·여성	노동	취약 계층 지원	사회복지 일반	주택	보훈	합계
(조 원)	11.0	10.4	6.6	5.4	2.6	0.8	0.8	0.2	37.8
(%)	(29.2)	(27.6)	(17.5)	(14.2)	(6.8)	(2.1)	(2.1)	(0.5)	(100.0)

주: ()는 전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각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 보장 부문 비중은 2008년 55.2%에서 2018년 29.2%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은 15.6%에서 27.6%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12.5%에서 17.5%로 증가

- 노인·청소년 부문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2008년 대비 2018년 8.4조 원 증가하여 증가액이 가장 큼

표 1-2-2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국고보조금 추이(2008~2018년)		(단위: 조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초생활 보장	7.2	7.6	7.3	7.5	7.8	8.4	8.4	9.1	10.0	10.7	11.0
	(55.2)	(44.4)	(45.4)	(44.3)	(43.0)	(39.2)	(34.8)	(32.8)	(33.8)	(34.0)	(29.2)
취약 계층 지원	0.7	2.3	1.5	1.2	1.1	1.5	1.6	2.2	2.3	2.5	2.6
	(5.7)	(13.6)	(9.1)	(6.8)	(6.2)	(6.8)	(6.6)	(8.0)	(7.8)	(7.8)	(6.8)
보육·가족 및 여성	1.6	2.0	2.3	2.9	3.6	5.2	5.6	5.6	5.7	5.9	6.6
	(12.5)	(11.5)	(14.4)	(17.1)	(19.7)	(24.1)	(23.4)	(20.0)	(19.4)	(18.7)	(17.5)
노인·청소년	2.0	2.9	3.2	3.4	3.6	3.9	5.9	8.2	8.6	9.3	10.4
	(15.6)	(17.1)	(19.8)	(20.0)	(19.7)	(18.2)	(24.6)	(29.7)	(29.0)	(29.8)	(27.6)
노동	0.8	1.1	1.1	1.1	1.1	1.4	1.5	1.7	1.9	1.8	5.4
	(6.0)	(6.2)	(6.6)	(6.4)	(6.3)	(6.3)	(6.1)	(6.0)	(6.4)	(5.8)	(14.2)
보훈	0.2	0.3	0.3	0.3	0.2	0.3	0.2	0.2	0.2	0.2	0.2
	(1.9)	(1.5)	(1.9)	(1.6)	(1.3)	(1.2)	(1.0)	(0.8)	(0.8)	(0.7)	(0.5)
주택	0.3	0.6	0.3	0.4	0.4	0.5	0.5	0.4	0.4	0.5	0.8
	(2.1)	(3.5)	(1.7)	(2.4)	(2.5)	(2.5)	(1.9)	(1.4)	(1.2)	(1.7)	(2.1)
사회복지 일반	0.1	0.4	0.2	0.2	0.3	0.4	0.4	0.4	0.5	0.4	0.8
	(1.1)	(2.1)	(1.1)	(1.3)	(1.4)	(1.7)	(1.7)	(1.4)	(1.5)	(1.4)	(2.1)
합계	13.1	17.1	16.1	17.0	18.1	21.5	24.1	27.8	29.5	31.3	3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 ()는 전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각 부문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3

담당 부처별 현황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가장 큼

- 2018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6.4조 원, 국토교통부 5.9조 원, 고용노동부 5.4조 원, 환경부 4.4조 원, 문화체육관광부 3.4조 원 순으로 소관 국고보조금 규모가 큼
- 분야별 비중(전체 보조금 중에서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소관 부처 비중(전체 보조금 중에서 소관 부처가 담당하는 비중)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1-2-3 소관별 국고보조금 현황(2018년 기준)		(단위: 조 원)	
소관	본예산	소관	본예산
보건복지부	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5
농림축산식품부	6.4	문화재청	0.5
국토교통부	5.9	기획재정부	0.4
고용노동부	5.4	교육부	0.3
환경부	4.4	농촌진흥청	0.2
문화체육관광부	3.4	국가보훈처	0.2
산업통상자원부	2.1	법무부	0.2
행정안전부	1.3	국방부	0.1
해양수산부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1
산림청	1.0	식품의약품안전처	0.1
중소벤처기업부	0.9	외교부	0.1
통일부	0.8	특허청	0.1
여성가족부	0.6	경찰청	0.1
기타(15개 기관)	0.1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4

의무·재량지출 현황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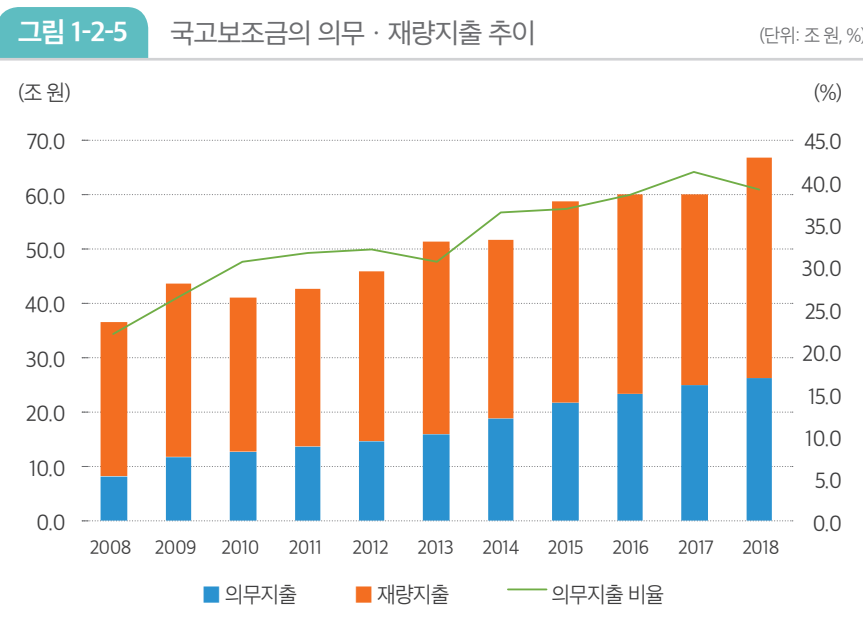
-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
- 재량지출이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시 의무지출의 증가율, 산출 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에 대한 정부의 지출 계획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

- 의무지출 비중은 2008년 8.2조 원(22.3%)에서 2018년 26.2조 원(39.2%)으로 16.9%p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08년 28.5조 원(77.7%)에서 2018년 40.7조 원(60.8%)으로 16.9%p 감소
- 국고보조금의 의무지출 중 대부분은 사회복지지출이 차지
 -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지출(26.2조 원) 중 사회복지지출은 24.3조 원으로 92.6%를 차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무지출 (조 원)	8.2	11.7	12.7	13.7	14.8	15.9	19.0	21.9	23.3	24.9	26.2
재량지출 (조 원)	28.5	32.1	28.6	29.3	31.1	35.8	32.8	37.3	36.9	35.4	40.7
의무지출 비율(%)	22.3	26.7	30.8	31.8	32.3	30.7	36.6	37.0	38.7	41.3	39.2

주: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5

회계·기금별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자금의 조성 방법과 사용처에 따라 구분

- 일반회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사업에 사용
- 특별회계는 목적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정 사업에 사용
 - 특별회계의 유형
 - ① 기타특별회계: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
 - ② 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가 특정한 재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
 -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국가재정법」 제4조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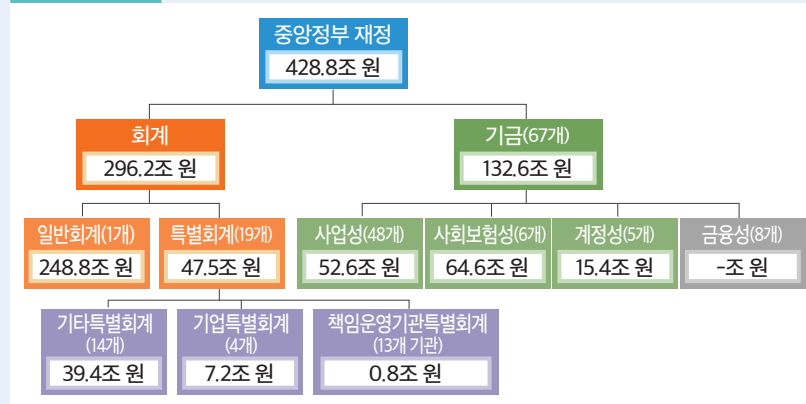
- 기금은 부담금, 기여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재정 사업에 사용

「국가재정법」 제5조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 (후략)

- 기금의 유형
 - ① 사업성 기금: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것
 - ② 금융성 기금: 정부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보증, 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 ③ 사회보험성 기금: 가입자의 기여금, 사용자의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
 - ④ 계정성 기금: 기금 관리 주체와 사업 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 재원을 모아 재정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체계는 2018년 기준으로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9개), 기금(67개)가 운용됨

그림 1-2-6 중앙정부 재정 운용 체계(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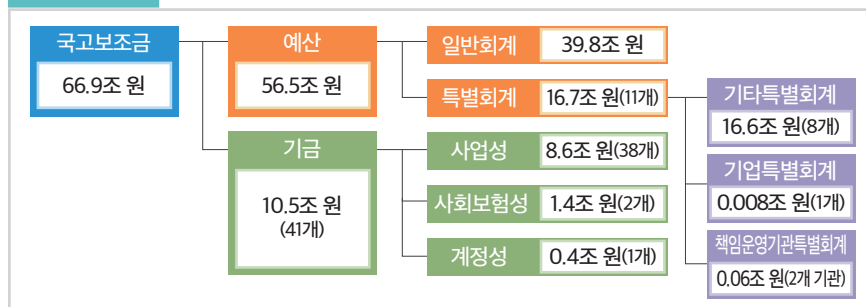


주: 총 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은 2018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56.5조 원)과 기금(10.5조 원)으로 구분

- 2018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56.5조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이 39.8조 원으로 70.4%를 차지
 - 특별회계 16.7조 원 중 기타특별회계가 16.6조 원으로 99.6%를 차지
- 2018년 기금 10.5조 원 중 사업성 기금은 8.6조 원으로 82.4%를 차지하며, 사회보험성 기금은 1.4조 원으로 13.6%를 차지

그림 1-2-7 국고보조금 운용 체계(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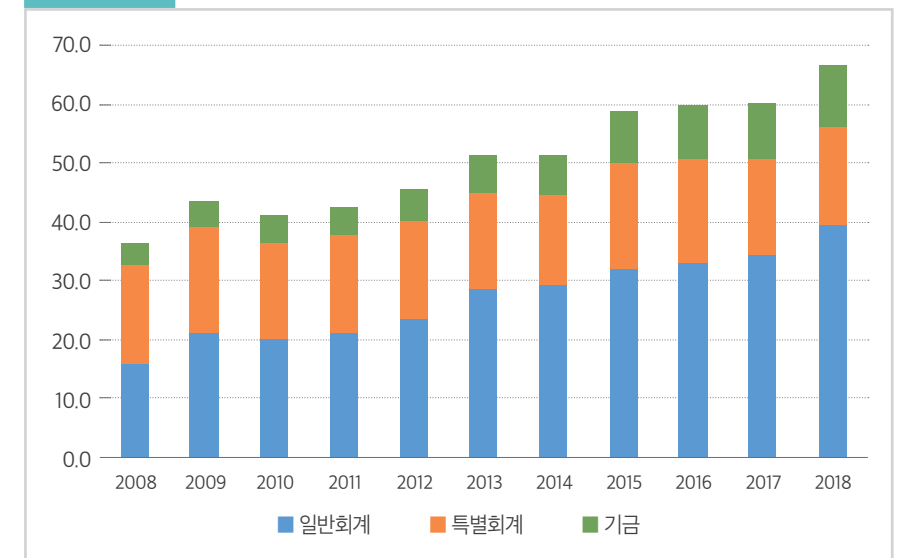
주: 총 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의 일반회계와 기금 규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별회계는 17조 내외를 규모를 유지

- 일반회계 비중은 2008년 16조 원(43.6%)에서 2018년 39.8조 원(59.4%)으로 15.8%p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비중은 2008년 17조 원(46.3%)에서 2018년 16.7조 원(25.0%)으로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21.3%p)
- 기금의 비중은 2008년 3.7조 원(10.1%)에서 2018년 10.5조 원(15.7%)으로 지출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증가(5.6%p)

그림 1-2-8 회계 · 기금별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조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회계	16.0 (43.6)	21.4 (48.9)	20.4 (49.5)	21.5 (50.1)	23.7 (51.6)	28.8 (55.7)	29.7 (57.5)	32.4 (54.9)	33.5 (55.6)	34.6 (57.2)	39.8 (59.4)
특별회계	17.0 (46.3)	18.2 (41.7)	16.4 (39.6)	16.4 (38.3)	16.6 (36.1)	16.5 (31.9)	15.2 (29.4)	17.9 (30.3)	17.5 (29.0)	16.5 (27.3)	16.7 (25.0)
기금	3.7 (10.1)	4.1 (9.5)	4.5 (10.9)	5.0 (11.7)	5.6 (12.2)	6.4 (12.4)	6.8 (13.2)	8.8 (14.9)	9.2 (15.3)	9.3 (15.4)	10.5 (15.7)
합계	36.7 (100)	43.7 (100)	41.3 (100)	42.9 (100)	46.0 (100)	51.7 (100)	51.7 (100)	59.1 (100)	60.2 (100)	60.4 (100)	66.9 (100)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 ()는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재정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원활히 집행되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원활히 집행하고 있는지를 담당 중앙부처가 관리하도록 규정

-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54조에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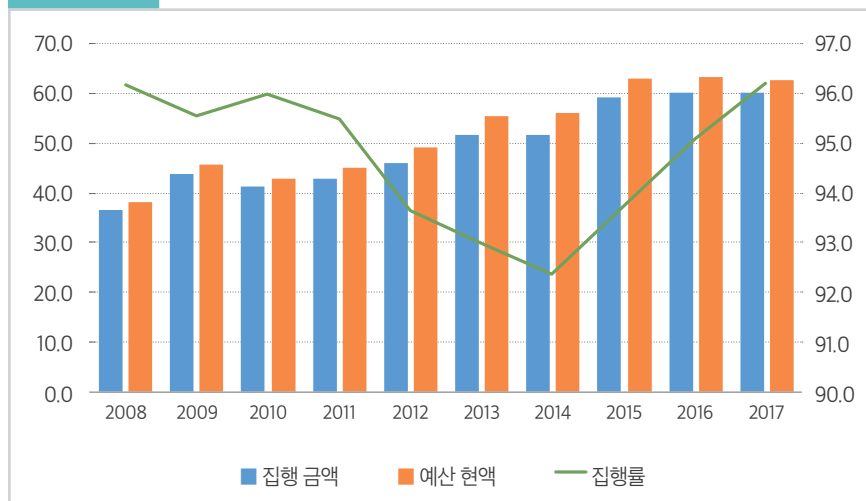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현액 대비 교부액 비중(교부 집행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이후로 교부 집행률이 증가

- 2017년 교부 집행률은 96.2%(결산 기준)

그림 1-2-9 국고보조금의 집행 추이

(단위: 조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현액(조 원) (A)	38.1	45.7	43.0	45.0	49.1	55.6	56.0	63.1	63.3	62.7
교부액(조 원) (B)	36.7	43.7	41.3	42.9	46.0	51.7	51.7	59.1	60.2	60.4
교부 집행률(%) (B/A)	96.2	95.6	96.0	95.5	93.6	93.0	92.3	93.7	95.1	96.2

주: 2008~2017년 집행 금액은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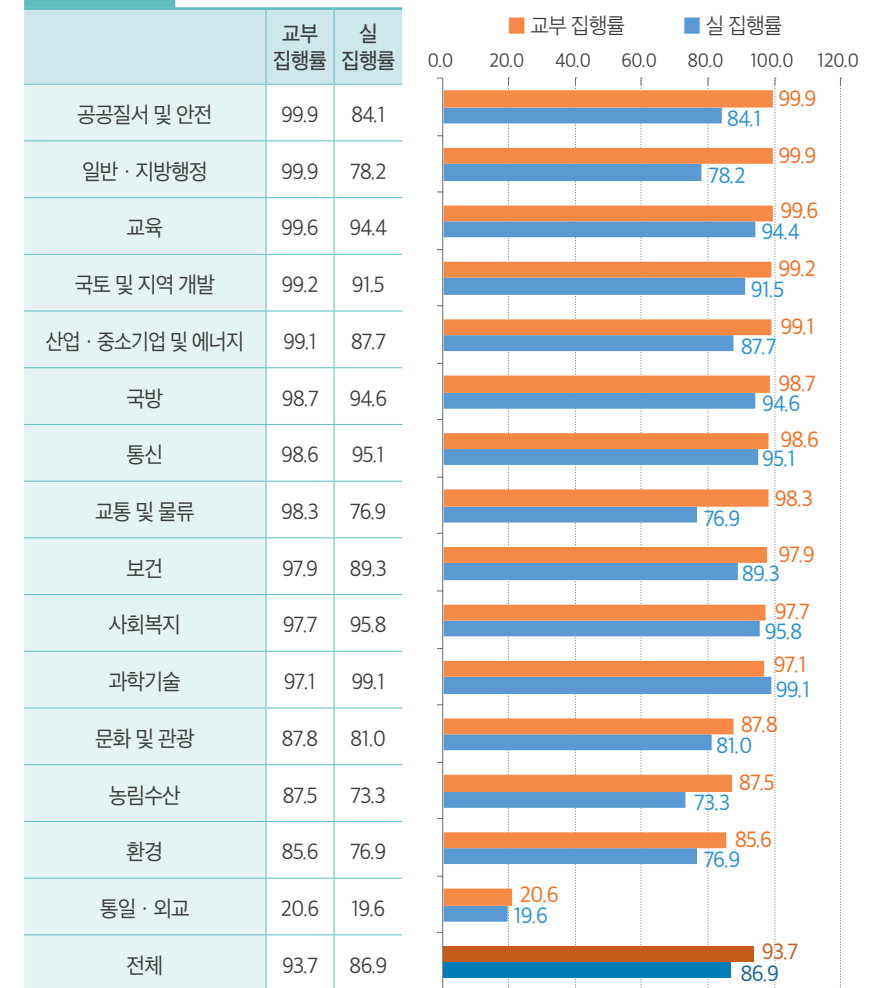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교부 집행률을 통해 중앙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집행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조금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음

- 교부액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국고보조금 이체가 이루어짐
- 실집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전달(이체)된 금액을 의미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집행된 보조금이 최종 보조사업에게 이체되거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직접 집행된 보조금을 통해 실집행률을 구함

그림 1-2-10 교부 집행률과 실집행률 비교(2017년 12월 기준)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

집행률을 측정하는 방식은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로 구분함

-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로 구분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집행한 금액과 국민이 체감하는 집행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
 -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주었다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보유하기만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집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체되었다라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이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음

$$\text{교부 집행률} = \frac{\text{교부액}}{\text{예산 현액}}$$

$$\text{실 집행률} = \frac{\text{실 집행액}}{\text{예산 현액}}$$

- 교부액이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체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 집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이체된 금액을 의미
- 이월액, 이용·전용 증감액을 모두 포함한 동일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예산 현액)을 분모로 하여 교부 집행률과 실 집행률을 구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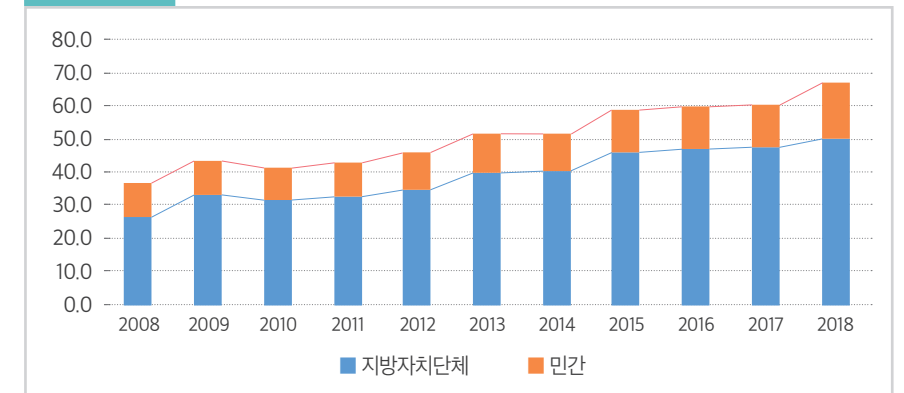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민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분류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72% 이상을 차지

그림 1-3-1 지원 대상별 추이

(단위: 조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자체(조 원) (A)	26.5 (72.2)	33.3 (76.2)	31.8 (77.0)	32.9 (76.7)	34.8 (75.7)	39.8 (77.0)	40.5 (78.3)	45.9 (77.7)	47.3 (78.6)	47.8 (79.1)	50.2 (75.0)
민간(조 원) (B)	10.2 (27.8)	10.4 (23.8)	9.5 (23.0)	10.0 (23.3)	11.2 (24.3)	11.9 (23.0)	11.2 (21.7)	13.2 (22.3)	12.8 (21.3)	12.5 (20.7)	16.8 (25.1)
합계(조 원) (A+B)	36.7 (100)	43.7 (100)	41.3 (100)	42.9 (100)	46.0 (100)	51.7 (100)	51.7 (100)	59.1 (100)	60.2 (100)	60.4 (100)	66.9 (100)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 ()은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이전 보조금의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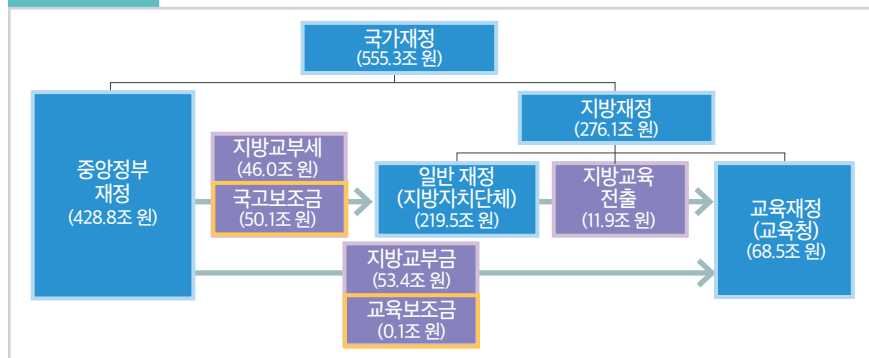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은 약 4: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02

부담 방식:
정액, 정률

그림 1-3-2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2018년도 기준)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18), 2018 주요 재정 통계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과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으로 구분

- 정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
- 정액보조금은 사업의 일정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개별 사무 또는 사업마다 일정액을 지원
- 일부 보조사업(121개)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

표 1-3-1 정액, 정률 보조사업(예시)

	사업	비고
정률	일반 여권 발급	100%
	119 구조 장비 확충	50%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재해 위험 지역 정비	50%
	농어업 기반 정비	80%
	배수 개선	100%
	농기계 임대 사업	50%
정액	유기질 비료 지원	—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공사비만 해당(용지 보상비 제외)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비만 해당(용지 보상비 제외)
	경전철 건설	—
	항만 배후 도로 건설	—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운영	서울특별시 등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03

보조율 기준:
일률보조,
차등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사업은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결정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상 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이 되는 보조율(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률 보조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 수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는 차등보조 방식으로 구분

- 차등보조율은 재정 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지역 발전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 차등보조 방식은 기준보조율에 10%p, 15%p, 20%p를 더한 인상 보조율과 이를 뺀 인하 보조율로 구분
 - 인상 보조율은 재정 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금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표 1-3-2 일률보조와 차등보조(예시)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 관리 나. 지방 관리	100	
		50	
2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3	토양 개량 사업	70	
4	폐기물 처리 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 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 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 시설 및 도서 지역의 매립 시설은 30% 지원
5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10	
	나. 광역시(종인 처리 시설)	50	
	다. 시 지역(읍 이상)	50	
	라. 군 지역(면 이하)	70	
	마. 주한미군 공여 구역, 방폐장 주변 지역	80	
6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7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 단위 통합 관리 센터 (전 지역)	70	
8	청소년 시설 확충	서울: 30 지방: 70~88	지방은 재정 자주도에 따라 차등 지원
9	국가 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지방: 50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1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가. 개량(교체·보수)의 경우 광역시는 20%, 도청소재지는 30%, 시·군은 5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04

지원 내용:
경상보조,
자본보조

성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

- 경상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 지원을 의미하며, 자본보조는 토지 매입, 시설 건축, 자산 취득 등 투자성 경비 지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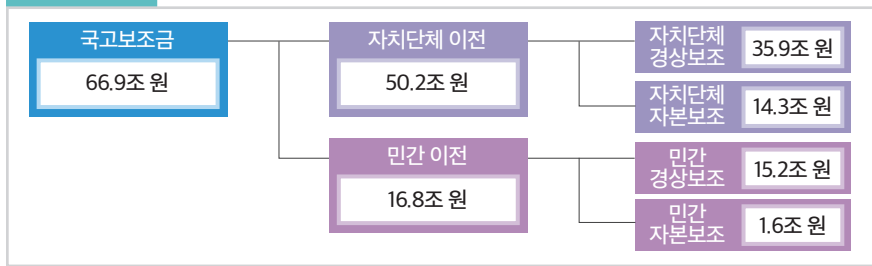
표 1-3-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상·자본보조사업(예시)

구분	보조 사업명	
	경상	자본
지방 자치 단체 이전	기초연금 지급	일반 농산어촌개발
	의료급여 경상보조	하수관로 정비
	생계급여	지방 하천 정비(생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생활)
	주거급여 지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지자체)	도시 재생 사업
	아동수당 지급	문화재 보수 정비(총액사업,보조)
	장애인 활동 지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민간 이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리 시설 개보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농촌용수 개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일반)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구호 지원	수산 자원 조성 사업 지원
	전직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신분당선(용산-강남)
	PSO(철도 공익 서비스) 보상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민자철도 운영 지원	농촌용수 관리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	대규모 농업 기반 시설 치수 능력 확대
	고용 창출 장려금	인천북항
	민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급여성 지출이 많은 경상보조의 비중이 높음

- 경상보조금은 2018년을 기준으로 51.1조 원(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76.3%)이며,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이 35.9조 원(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53.6%)으로 규모가 큼
- 자본보조는 2018년 기준 15.9조 원이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이 14.3조 원으로, 89.9%를 차지

표 1-3-3 지급 대상 · 성질별 지출 구조(2018년 기준)



경상보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6% 증가

-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급여성 복지지출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경상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경상지출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9.4% 증가하였으며, 민간 경상지출은 연평균 7.0% 증가
- 국고보조금 자본지출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0% 증가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하였으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연평균 4.6% 감소

그림 1-3-4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추이 (단위: 조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보조 (A)	22.3 (60.9)	26.0 (59.4)	24.6 (59.6)	25.8 (60.1)	27.9 (60.6)	34.2 (66.2)	36.3 (70.2)	41.3 (69.8)	42.6 (70.7)	43.9 (72.7)	51.1 (76.3)
자치단체 경상보조	14.6 (39.7)	18.2 (41.6)	17.2 (41.8)	18.3 (42.5)	19.3 (42.1)	24.8 (48.0)	26.6 (51.5)	30.4 (51.5)	31.5 (52.3)	33.0 (54.7)	35.9 (53.6)
민간 경상보조	7.7 (21.1)	7.8 (17.8)	7.4 (17.8)	7.5 (17.5)	8.5 (18.5)	9.4 (18.2)	9.7 (18.7)	10.8 (18.3)	11.1 (18.4)	10.8 (18.0)	15.2 (22.7)
자본보조 (B)	14.4 (39.1)	17.8 (40.6)	16.7 (40.4)	17.1 (39.9)	18.1 (39.4)	17.5 (33.8)	15.4 (29.8)	17.9 (30.2)	17.6 (29.3)	16.5 (27.3)	15.9 (23.7)
자치단체 자본보조	11.9 (32.4)	15.2 (34.7)	14.5 (35.2)	14.6 (34.1)	15.4 (33.5)	15.0 (28.9)	13.8 (26.8)	15.5 (26.2)	15.8 (26.3)	14.8 (24.5)	14.3 (21.4)
민간 자본보조	2.5 (6.7)	2.6 (5.9)	2.2 (5.2)	2.5 (5.9)	2.7 (5.9)	2.5 (4.9)	1.6 (3.0)	2.4 (4.0)	1.8 (2.9)	1.7 (2.8)	1.6 (2.3)
총 합계 (A+B)	36.7 (100)	43.7 (100)	41.3 (100)	42.9 (100)	46.0 (100)	51.7 (100)	51.7 (100)	59.1 (100)	60.2 (100)	60.4 (100)	66.9 (100)

주 1: 2008~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 ()은 전체 국고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상·자본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5교부 조건: 특정보조, 포괄보조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이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s)도 존재

- 포괄보조금은 총액과 범위만을 지정하고,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 계정의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보조금 제도로 확대 및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포괄보조금은 2005년 분권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시작
 - * 현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 2014년부터 시·도, 시·군·구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도 포괄적으로 보조금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포괄보조금은 개별 목적보다는 공통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회계에서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01

근거 법령과
지침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으며, 그 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에 대해서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의 5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관리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과 지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침 및 기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02

근거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1963년 12월 「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시행

- 1963년 각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절차를 일원화하고, 보조금 감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법」 제정
- 보조금 지급 시 조건을 붙이고 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제9조)

「보조금관리법」 제9조(용도의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함(제17조)

「보조금관리법」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986년 12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 「보조금 관리법」에는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지자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조금이 시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신청주의 제도를 도입(제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①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제1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출연금 이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중복 지급 받지 않도록 규정(제1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 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경제기획원 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년 5월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유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

- 자체 노력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제31조제4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후략)

-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폐지

2011년 10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시행

- 차등보조율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제1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 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사업 운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 사업 자율 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 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제26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 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급이나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016년 보조금 개혁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 2016년 1월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과보고서, 집행 실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포함하는 내용을 도입(제26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관리 체계의 개선) ①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급이나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2.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보조금 집행 실적
3.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6년 4월 현행 보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수행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제9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 기존 법에서는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 도입 이후에 축소와 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3년의 존속 기간을 설정(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 기간과 연장 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제26조의2, 제36조의2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7년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제26조의2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후략)

- 보조금 관리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도입

* 제26조의6제1항제1호(보조금 관리 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 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표 1-4-1 근거 법령의 변화

연도 (시행일)	제·개정 여부	주요 내용
1963년 (12.02)	제정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지급 절차 일원화 - 지급된 보조금의 감독과 관리 사항 규정
1986년 (12.31)	전부 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규정
2009년 (05.01)	일부 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 시 유사 사업 활용 - 부처 책임 행정 체제 구축
2011년 (10.26)	일부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 - 보조금 운용 평가 제도 도입 - 보조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선정 -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2016년 (01.01)	일부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집행 실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이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포함되도록 함
2016년 (04.29)	일부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 - 보조사업 존속 기간 설정과 연장 여부를 평가 -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2017년 (01.04)	일부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전반을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① 공모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야 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1항에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 방식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 접수 기간을 부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 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 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선정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평가 기준으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 확보 여부를 고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 기준(예시)>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요소						
구분	세부 항목								
	계	100							
정량 평가 (10)	사업 실적 건수	5	• 최근2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재난 안전교육 등)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점	5	4	3	2	1	0
	사업 실적 금액	5	• 최근2년간 유사 용역 사업 1건의 최대 계약 금액						
			구분	0.8억 이상	0.8억 미만 ~ 0.4억 이상	0.4억 미만 ~ 0.2억 이상	0.2억 미만		
			배점	5	3	1	0		
정성 평가 (90)	사업 수행 능력	20	• 사업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사전 준비 및 실행 능력 (적정 인력 확보, 재난·안전 전문가 참여 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포함) • 교육 운영 계획의 구체성 (장소 확보, 교육과정 등)						
	내용의 충실도	15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서 내용 구성의 체계성 및 타당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예산 편성 적정성						
	사업 방법의 적절성	25	• 사업 추진 계획의 타당성 • 사업 내용의 실행 가능성 • 예산 편성 구체성 • 사업 완료 후 활용 방안 제시						

※ 평가 결과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70점 미만 제외)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
 -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예시)>

○○○○○○부 공고 제2018-00XX호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국고보조금 박물관 진흥지원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회의: 2018. X. XX.(화) 14:00~16:00

□ 보조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

사 업 명	선 정 기 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사)한국○○○○협회

2018년 X월 XX일

○○○○○○부장관

③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 계획, 경비와 사용 방법 등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첨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 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 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목적을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한 번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지침에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교부 결정(예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차) 통지서(일반)

수신: ○○○○시장(보조사업자)

1. 「재정비축진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불임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보조사업명: 재정비축진사업지원
- ☐ 보조사업자: ○○○○시장
- ☐ 사 업 개 요
 - 사업 기간: '09 - 계속
 - 사업 규모
 - XX 재정비축진지구: 도로(125,581㎡), 공원(47,418㎡)
 - XX 재정비축진지구: 도로(31,278㎡), 공원(10,000㎡)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소 계	312,462	31,247	14,768	—	266,447
XX지구 재정비축진사업	280,586	28,059	7,600	—	244,927
XX지구 재정비축진사업	31,876	3,188	7,168	—	21,520

- 보조비율: 국고 10%
- 사업 내용
 - 재정비축진지구 내의 정비 기반 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 보조 (후략)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카드 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이 적용되면 예외적으로 재이월하여 사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 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 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중략)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 원을 말한다.

- 감사인(검증 기관)이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의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중략)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6 정보공시

- 감사인(검증 기관)은 정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 부주의, 과실, 경미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3년간 검증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제한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9조(검증 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 기관의 정산 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검증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 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검증 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예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0000부	보조사업명칭	0000터 운영
프로그램명	0000선진화	보조사업자	0000센터
단위사업명	0000항상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0000센터 운영
세부사업명	0000센터 운영	총 사업기간	매년 갱신 사업
검증기관	0000법인	당해연도	2017.1.1 ~ 2017.2.31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보조금(㉔)	지자체부담금(㉕)	자기부담금(㉖)	합 계(㉔+㉕+㉖)	보조금비율(㉔÷㉔+㉕)
5,437,000,000	-	434,040,300	5,871,040,300	93%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당기분집행액 (㉑)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㉑=㉑+㉒)		수익금		
	전기이월액(㉓)	집행액(㉒)			발생액(㉑)	반환액(㉒)	미반환액(㉑-㉒)
5,778,795,528	-	-	5,778,795,528		-	-	-
당기분집행액 (㉑=㉑-㉑)	전기이월잔액 (㉓=㉓-㉒)	진행잔액 (㉑=㉑+㉒)	발생이자 (㉑)	차기이월액 (㉑)	반환대상액 (㉑=㉑+㉒-㉑)	보조금 반환액 (㉑=㉑×100%)	자기부담금반환액 (㉑-㉑)
92,244,772	-	92,244,772	153,745	71,040,300	21,358,217	21,358,217	-

4. 검증결과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이자	검증 후 차기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상환액	수정 후 보조금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반환액
92,244,772	153,745	71,040,300	-	-	21,358,217	21,358,217	-

5. 검증의견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0000센터의 2017 회계연도의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동일 회계연도에서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포함)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의무적으로 정보공시를 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감사 지적 사항,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 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공시를 해야 함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제출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림 1-6-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위 정보공시 내용은 보조사업을 수행한 해당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항입니다.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검증결과

재무제표 ·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 신청자정보

기관명	○○○○공사		
대표자명	○○○○	전화번호	061-○○○-○○○○
소재지	○○○도 ○○시		

○ 사업 정보

사업목적	농식품관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용자지원 및 기술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내용	☐ 농식품사업 해외진출 지원 및 비상시 농업지원 국내도입여건 조성 ☐ 민간기업 진출 관심국에 농업투자환경 및 해외농업계획 조사 지원 ☐ 민간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외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한 민 관협력 방식의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개발 ☐ 중점지역 육성 및 성공모델 구축 ☐ 연해주 농업개발 한-러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한 중점지역 육성 ☐ 용자사업 추진 ☐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조기정착 등을 위한 용자지원 ☐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정책개선 ☐ 민간기업 현장지원 강화 ☐ 영농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 농업기반 설계 시공, 영농, 관개, 배수 분야 등에 대한 기술지원 ☐ 한-러 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기간	2017-01-01 ~ 2017-12-31	사업장소	
사업대상	해외진출기업	대상자수	○○○○공사 국제협력처 3.5명

○ 총보조사업비(예산)

(단위:원)

총보조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1,694,000,000	1,694,000,000	0	0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공시불이행) 거짓으로 공시(허위 공시)한 보조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시불이행이란 공시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
- 허위 공시란 사실과 다른 경영 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를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당 중앙관서의 장은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 범위에서 삭감할 수 있음
-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 1회 시 10% 이내 삭감되며, 2회 20% 이내, 3회 이상 50% 이내에서 삭감됨

02

중요재산
정보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취득하고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이란 부동산과 그 중물, 선박, 항공기 등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의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재산의 현황과 변동 상황을 기록하여 반기별(매년 6월과 12월)로 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 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 재산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함
- 최초 공시일로부터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을 공시 기간으로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그림 1-6-2 중요재산 정보공시

중요재산 상세

부정신고하기

상세정보

재산변동이력

중요재산 위치정보(부동산)

중앙관서명	○○○○부		
보조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금산역초용복합바이오가공산업)		
재산명	가공공장		
중요재산유형	부동산(건물)		
목적(용도)	향토산업육성사업 '바이오 소재' 가공시설		
주소	시·도구분	충청남도	
	소재지	(XXXXX) ○○○도 ○○군 ○○면 ○○로	
면적(㎡)	793		
수량(면적)	1	단위	평방미터(㎡)
취득가액(원)	1,098,382,200	현재가액(원)	1,098,382,200
취득일자	2017-11-14	처분제한기간	2027-11-30
소유자구분	○○○바이오(주)		

※ 2016년 이전 중요재산 정보는 '중요재산공개시스템'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입니다.
 ※ 중요재산 정보공시의 주체는 해당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7 ▶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01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제도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이 타당하게 편성·선정·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과 연장 평가에 대해 규정

-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일몰제 실시
-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13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이 대상이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 기간과 연장 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02

평가 지표와 결과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존속 또는 연장 여부 결정

- 소규모(50억 이하), 중규모(50억~200억 이하), 대규모(200억 초과)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
-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들을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

표 1-7-1 보조사업 평가 기준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
1	보조사업 법적 근거의 명확성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	보조사업의 효과성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필요성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	보조사업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 변경, 정상 추진으로 최종 판정 도출

표 1-7-2 보조사업 최종 판정 결과

구분	내용
즉시 폐지	해당 보조사업의 차년도 폐지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는 아니나, 존속 기간 범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통폐합	유사 사업 및 관련 사업과 통합
감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사업 방식 변경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등
정상 추진	적정 소요 지원

- 정량 평가를 도입하여 보조금 연장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 세부 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 추진으로 간주

2017년도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복권기금 평가 사업 등을 제외한 총 215개의 사업에 대해 평가

- 정상 추진 54개 사업, 즉시 폐지 4개 사업, 단계적 폐지 5개 사업, 통폐합 2개 사업, 감축 86개 사업, 사업 방식 변경 64개 사업으로 최종 판정

표 1-7-3 보조금 연장 평가 결과(2017년도) (단위: 개,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 변경	정상 추진	합계
사업 수(개)	4	5	2	86	64	54	215
비율(%)	1.9	2.3	0.9	40.0	29.8	25.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2017),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7년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56억 원이며,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54억 원임

-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총 215개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약 4조 1,329억 원

표 1-7-4 보조금 연장 평가 결과(2017년도) (단위: 억 원,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 변경	정상 추진	합계
예산(억 원)	56	154	137	16,717	17,155	7,112	41,329
비율(%)	0.1	0.4	0.3	40.5	41.5	17.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2017),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보조사업 연장 평가 평가 기준(2017년도)>

【별표 1】
보조사업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근거조문(제12조, 제13조,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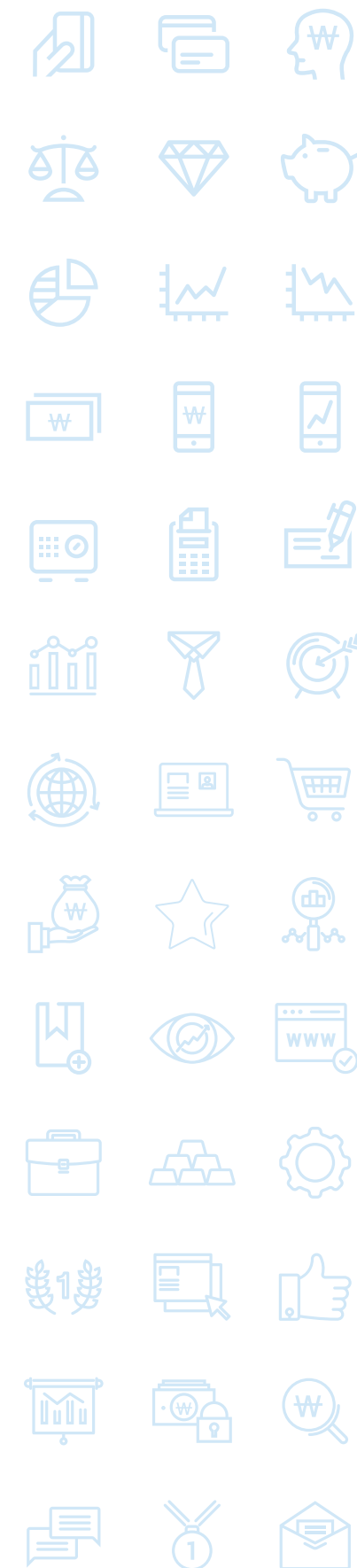
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배점)	평 가 요 소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4)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과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려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6)	①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며 명확한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한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25)	①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고려
	③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고려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5)	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자체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
	②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

평가항목(배점)	평 가 요 소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25)	③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④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고려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	소규모 사업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없는 경우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지를 고려
	대규모 사업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분석

평가항목	평가요소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0)	① 통합관리지침 제14조 공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 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10)	① 보조사업 진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 등을 고려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5)	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
2-4 보조사업 부정수금 관리의 적정성 (5)	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금이 발생한 정도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
	② 적절한 부정수습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제2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이해

-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 2. 구축 효과

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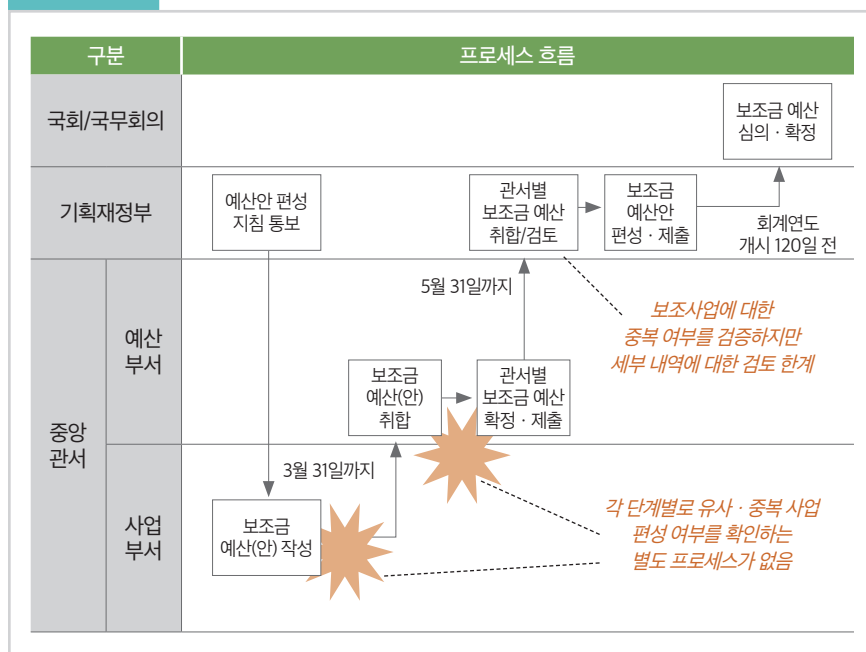
01

도입 배경

2017년 보조금 개혁 이전에는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판단하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주체의 분산과 정보 단절로 담당 부처의 세부적인 내용 검토에 한계가 있었음

- 담당 부처의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예산(안)을 작성하거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안)을 취합할 때 유사·중복 사업 편성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없음
 - 국고보조금 지급 주체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유사·중복 사업 검증이 어려움
 -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여 유사·중복 사업 검증이 어려움
 -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분산적인 보조금 관리와 집행은 국고보조금 중복 수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그림 2-1-1 보조금 개혁 이전의 예산 편성 시 문제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 제2장 [시스템 편]은
기재부 보도 자료 및
e나라도움 운영단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60

국가가 보조사업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교부·이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선지급·후정산)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

- 선지급 · 후정산 방식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괄 지급 이후 다수의 보조사업자를 담당 부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선지급 · 후정산 방식은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맞물려 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됨
- 선지급 · 후정산 방식 하에서 증빙서류 위조, 개인 용도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
 -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 약 2,300억 원 부정수급이 적발(2013년 8월) 되었으며, 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검찰 · 경찰 합동 조사에서도 약 3,200 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2014년 1월)
 -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와 중복수급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2017년 보조금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을 도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급이나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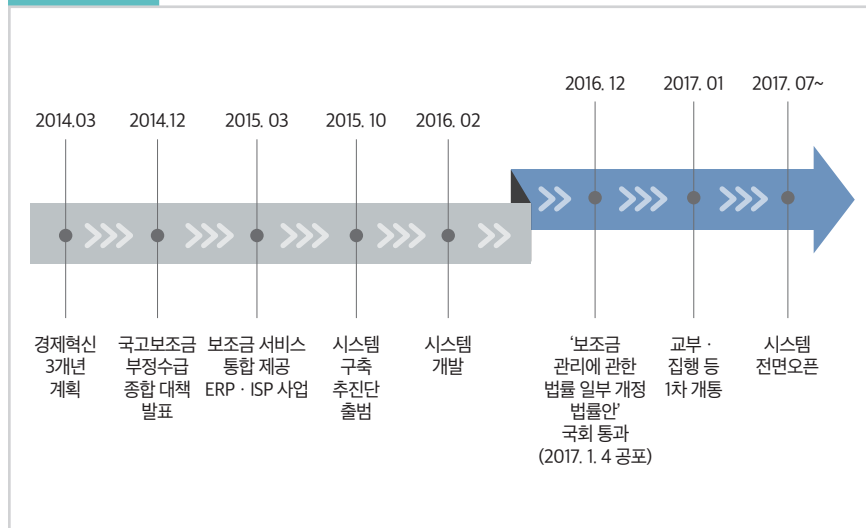
- 정부는 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 개혁 및 시스템 구축을 결정

제2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이해[시스템]

2017년 1월 사업 관리,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 일부 기능을 개통하였으며, 2017년 7월 통계, 정보 공개 등 시스템을 전면 오픈함

- 2014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e나라도움 구축을 논의
-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출범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스템이 개발

그림 2-1-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정



자료: 기획재정부(2017), e나라도움 교육 교재

- 2017년 1월 1차 개통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의 기본 기능인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를 개통
 - 그 이외에도 보조금 포털과 집행 정산 중 교부 관리, 집행 관리, 카드·계좌 관리 등 시스템 운영의 핵심 기능을 오픈
- 2017년 7월 2차 개통에서는 집행정산 중 정산 관리, 반납 관리 기능과 중복·부정수급 관리, 통계 분석, 총괄 조건, 정보 공개 기능을 포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등 유관 기관의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

표 2-1-1 e나라도움 개통 시기별 업무

개통	업무	주요기능
1차 개통 (2017. 1)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	• 사업 기준 정보 관리, 내역 사업 편성 및 배정, 공모 관리, 보조사업 교부 관리, 지출관리 • 교부신청, 보조금신청, 계약관리
	보조금 포털	• 사용자 포털 및 업무 포털 관리, 사용자 로그인
	집행 정산	• 교부 관리, 집행 관리, 카드·계좌 관리 • 정산 관리, 반납 관리
전면 개통 (2017. 7)	중복·부정 수급 관리	• 수급자 통합 관리, 자격 검증 항목 관리, 부정 징후 모니터링, 부정수급 패턴 분석
	통계 분석	•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별 통계 관리, 집행 실적 통계
	총괄 조정	• 회의 관리, 평가 관리, 집행 모니터링
	정보 공개	• 공모 사업 조회, 보조금 맞춤형 정보 공개

주: 각 업무별 자세한 설명은 3) 주요 기능에서 후술함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나라도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예약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약금을 관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한다.
1. 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관리 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 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위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위탁 방법, 위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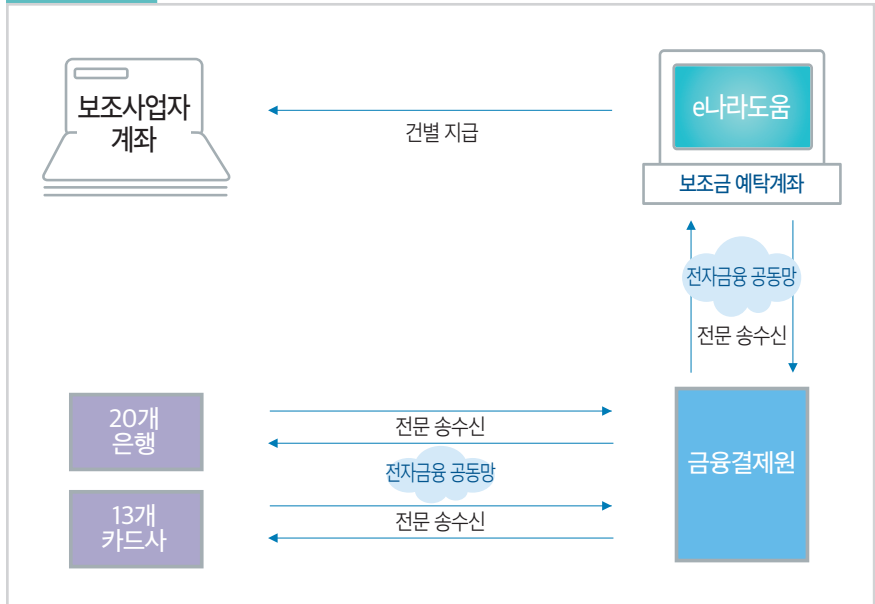
- 20개은행*(2018년 기준)에 보조금예약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예치하고 13개카드사** (2018년 기준)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산림조합중앙회

** 광주카드(광주은행), 농협카드(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카드(수협은행), 우리카드, 제주카드 (제주은행), 전북카드(전북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검증하고, e나라도움의 보조금 예탁계좌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건별로 지급

그림 2-1-3 보조금 예탁계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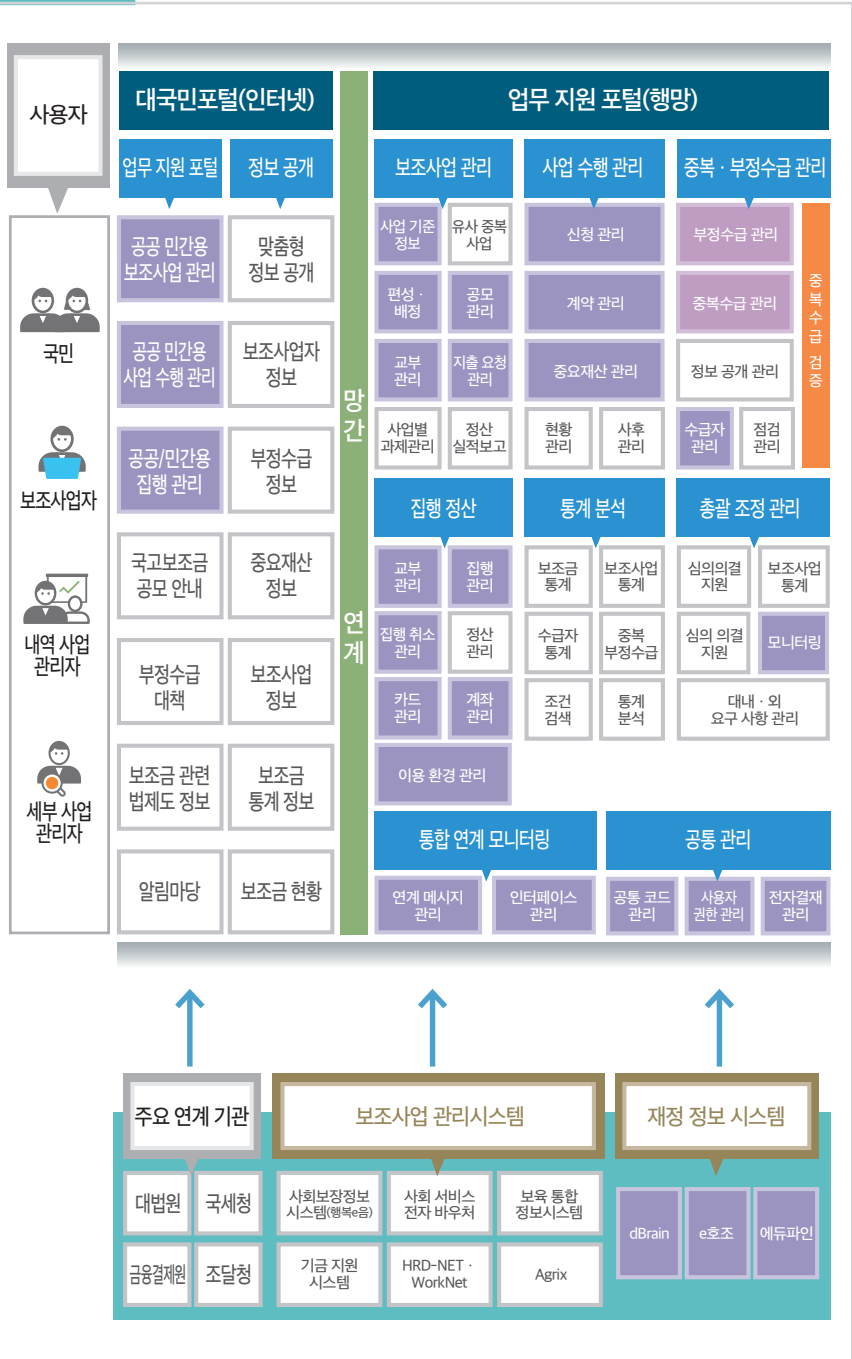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e나라도움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국고보조금 포털과 행망으로 연결되는 업무 지원 포털로 구성

- 업무 지원 포털은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 집행·정산, 중복·부정수급 관리, 통계분석, 총괄 조정 관리, 통합 연계 모니터링, 공통 관리 기능으로 구성
- 대국민포털은 업무 지원 포털과 정보 공개 세션으로 구성
 - 업무 지원 포털은 공공 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 집행 관리, 공모 안내, 부정수급 대책, 보조금 관련 법제도 정보 등의 기능으로 구성
 - 정보 공개 세션은 맞춤형 정보 공개, 보조사업자 정보, 중요재산 정보, 보조사업 정보, 보조금 통계 정보, 보조금 현황으로 구성
- 자격검증을 위해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과 연계하고, 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 파인)과 연계
 - 그 이외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등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과 연계

그림 2-1-4 e나라도움 전체 구성도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e나라도움 구축으로 보조금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실시간 집행과 온라인 정산으로 안전하게 보조금을 관리
- 총괄 조정 기능으로 실시간 집행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
- 대국민 정보 공개로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계를 연·월 단위로 공개하여 정책방향성을 제고

그림 2-1-5 전체 보조금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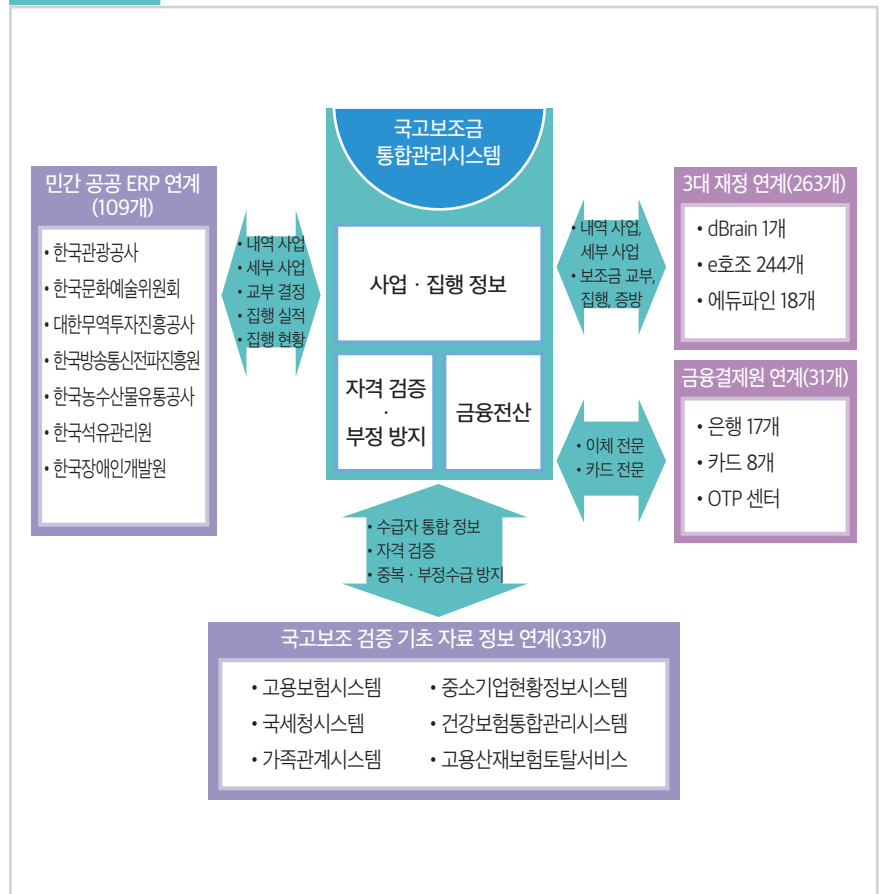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e나라도움과 연계된 시스템은 총 440여 개(2017년 기준)

- 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정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격 검증과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33개 시스템, 국고보조금을 이용하는 민간-공공 기관 109개의 시스템 등과 연계
- 3대 재정 관리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과 연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사업, 집행 정보를 얻음
-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이체 등의 내역 정보를 얻음
- 공공 기관의 ERP와 연계하여 공공 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의 예산 요구, 교부, 지출, 정산 등 정보를 얻음
- 고용보험시스템, 국세청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수급자 통합 관리 및 자격 검증, 중복·부정수급 방지에 활용
- e나라도움과 연계된 기관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그림 2-1-6 e나라도움과 연계된 시스템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① 보조사업 관리 및 사업 수행 관리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사후 정산 등 보조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보조사업과 사업 수행을 관리

-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및 하위 보조사업자가 모두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도록 세부 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세분화
 - 기획재정부와 담당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가 내역 사업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역 사업을 코드화하여 등록
- 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표 2-1-2 보조사업 관리와 사업 수행 관리 주요 내용

구분	수행 내용	주체
내역 사업 관리	• 세부 사업별 내역 사업 등록 • 속성 정보, 관리자 정보 신규 등록 • 내역 사업 분류 및 등록 관리 • 내역 사업별 공모하지 않은 사업의 수행 기관 등록 • 내역 사업별 관리자 및 보조관리자 지정 관리	보조사업자 중앙관서, 지자체 담당자
보조사업 및 과제 관리	• 세부 사업, 내역 사업별 유사 중복 검증 기준 관리 • 검색엔진을 활용한 유사 중복 검색, 유사 중복 결정 관리 • 보조사업 공모 등록, 신청 접수 관리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록 • 조달청 연계를 통한 G2B 계약 체결, 변경 관리 • 중요재산 기준 설정, 중요재산 등록, 현황 관리 • 수급자 정보 및 자격 검증 관련 대상 기관 연계	보조사업자 중앙관서, 지자체 담당자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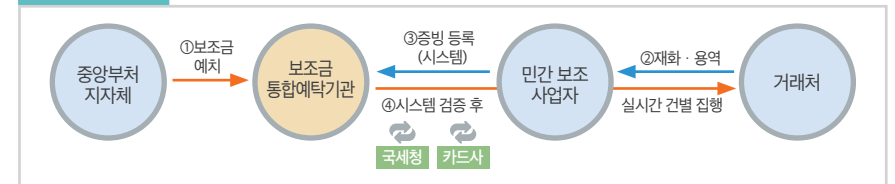
② 집행 관리

보조금을 예탁 기관에 예치하고 보조사업자의 지출 증빙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전용 카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검증한 이후 통합예탁기관의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 지급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의 계좌에 예치하고, 자부담금은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예치
 -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13개 카드사의 보조금 전용카드 신고 및 승인 내역을 시스템과 연계
 - 20개 은행(2018년 기준)과 연계하여 보조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예탁기관의 계좌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금의 입출과 출금이 가능하도록 전용 계좌로 운영
 - 검증된 거래처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건별로 지급

그림 2-1-7 실시간 집행 관리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 지출 내역을 허위 증빙하거나 중복 등록을 하는 경우, 거래처가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등 실시간 집행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차단

③ 집행 정산 및 반납 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 집행 정산 및 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조금을 사업별·자원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과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산보고서가 생성
 - 실적보고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나라도움 구축 이전에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한 반면, 현재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반납 업무를 수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⑤ 예탁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 정산보고서 작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

표 2-1-3 집행 정산 및 반납 관리의 주요 내용

구분	수행 내용	주체
정산 업무	• (상시 점검 · 실시간 보완) 하위 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 실시간 확인 및 증빙 점검 · 보완이 가능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제고 • (온라인 검증 가능) 검증 담당자는 보조사업의 집행 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시스템으로 조회하고, 검증보고서 작성 및 의견 제시 가능 • (이월 사업 관리) 사업 종료 기간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으로 보조금 이월 신청 및 승인	보조사업자 중앙관서, 지자체 담당자
반납 업무	• (반납 업무 대행) 예약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이 반납	한국 재정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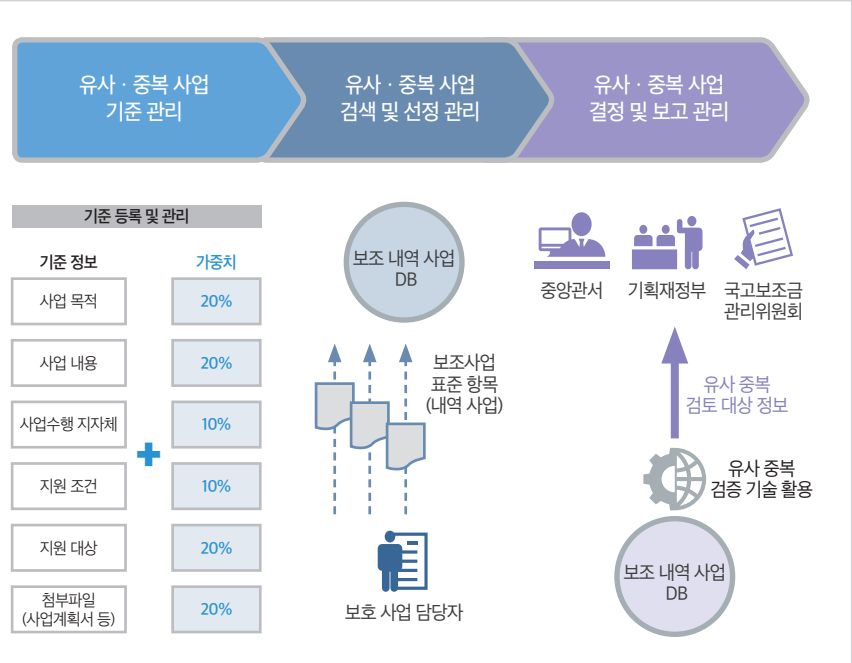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④ 중복 · 부정수급 관리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 등 각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수급 방지

- 선정 단계에서 내역 사업 단위로 각 사업의 특성에 관한 정보(속성 정보)를 부여하여 유사 사업과 중복 사업을 찾아내는 데 활용
 -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수행 지자체, 지원 조건 및 대상, 사업계획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각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정 보조사업이 다른 보조사업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유사도 도출
 -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담당자는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의 유사도와 중복 여부를 검증
 - e나라도움을 통해 유사 · 중복 사업 검토 대상 정보를 제공

그림 2-1-8 유사 · 중복 사업 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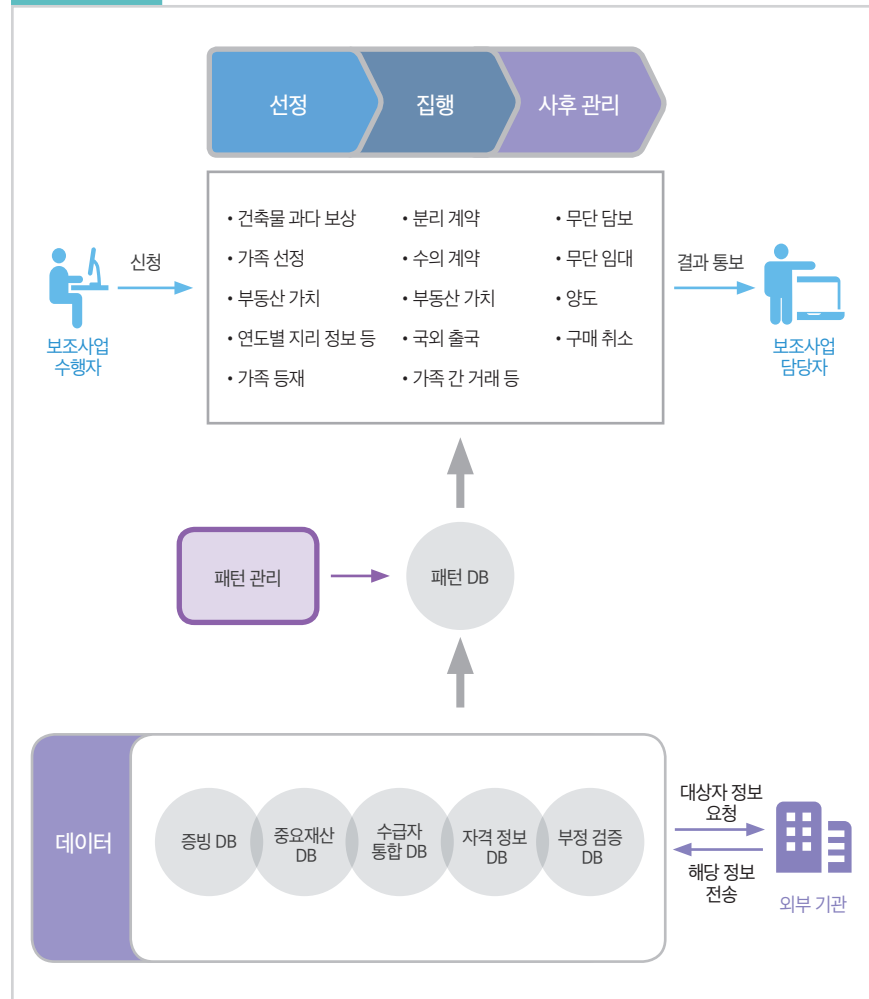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선정, 집행, 사후 관리 등 각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수급 방지

- 선정 단계에서 상위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및 연계 시스템의 자료를 통해 하위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가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한
- 집행 단계에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보조금 전용 카드 등의 승인 내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행을 검증
- 사후적으로 과거 보조사업 수행 이력, 보조사업 평가 결과, 보조사업자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집행, 과거 부정수급 사례 등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목록을 도출
 - 가족 선정, 건축물 과다 보상, 가족 등재 및 가족 간 거래, 구매 취소 등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화하여 패턴을 관리

그림 2-1-9 부정수급 관리의 주요 내용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5 정보 공개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민간 등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공개
-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결산 정보 공개
 - 분야·부문, 중앙부처 등 국고보조금 예산 정보를 연 단위로 제공
 - 월별 예산 집행 금액과 연도별 집행 현황을 월 단위, 연 단위로 제공
 - 예산 금액, 교부 금액, 집행 잔액 현황을 연 단위로 제공

-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 보조사업의 수행 단계별 정보를 월 단위, 연 단위로 제공
 - 계약 금액, 거래처 등 계약 현황과 보조금 평가 추진 계획 및 결과를 월 단위, 연 단위로 공개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
 - 분야, 부문, 중앙부처별로 중요재산에 대해 연 단위로 정보 제공

그림 2-1-10 정보 공개 주요 내용

e나라도움 소개	맞춤형보조금찾기	공모사업찾기	정보공시	통계센터	참여와 소통
e나라도움 근거법령 e나라도움 주요기능 국고보조금 관련법령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	보조금 TOP10 실시간 검색 TOP10 주제별 인기 TOP10 맞춤형 검색 나의보조금찾기 조건검색 통합검색 이용방법 안내	공모사업 TOP10 실시간 검색 TOP10 주제별 인기 TOP10 공모사업 검색 공모사업 찾기 이용방법 안내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개요 정보공시 조회 중요재산 정보공시 개요 정보공시 조회 중요재산 공시 현황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집행 현황 비교 검색 연도별 추이 보조사업 보조사업 현황 수행단계별 현황 평가 현황 서비스 유형별 현황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현황 유형별 비교통계 연도별 추이	국민의 소리 정책제안 설문조사 부정수급신고 자주묻는질문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웹툰 홈페이지 이용 안내

자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 정산 등 전체 프로세스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향상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
 - 수급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와 신청 방법 확인

주기적으로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 연도별 추이, 보조사업의 수행 단계별 평가, 서비스 유형별 현황, 보조 사업자 현황 등의 통계 자료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게시

표 2-1-4 국고보조금 통계 정보 제공 목록

구분		내용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 총괄	- 분야 · 부문별
		- 분야별 비교 현황	- 중앙부처별
		- 중앙부처별 비교 현황	- 비목(목 · 세목)별
	집행 현황	- 총괄	- 분야 · 부문별
		- 분야별 비교 현황	- 중앙부처별
		- 중앙부처별 비교 현황	- 비목(목 · 세목)별
		- 내역 사업별 집행 순위	- 보조사업자별 집행 순위
	비교 검색	- 분야 · 부문별	- 중앙부처별
	연도별	- 총괄	- 분야별
		- 중앙부처별	—
보조사업	보조사업 현황	- 내역 사업별	- 보조사업별
	수행 단계별 현황	- 세부 사업 목록	- 내역 사업 목록
		- 보조사업자 정보	—
	평가 현황	- 보조사업 평가 목록	—
	서비스 유형별 현황	- 생애주기별	- 대상별
		- 주제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현황	- 보조사업별	- 보조사업자별
		- 분야 · 부문별	- 중앙부처별
	유형별 비교 통계	- 유형별	- 분야 · 부문별
		- 중앙부처별	—
	연도별 추이	- 분야 · 부문별	- 중앙부처별

자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 보조사업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입 ·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 사항, 감사보고서, 정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시해야 함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
 - 감사보고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만 공시

그림 2-1-11 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정보공시 조회

회계연도 2017

보조사업

중앙부처 전체

보조사업자

수행기관

구분 일반보조사업

검색

정보공시 대상 목록

(단위:천원)

회계연도	공시일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중앙관서
2017	2018-04-26	○○○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66,800	산림청
2017	2018-04-26	○○○	2017 환경친화형 배합자료 지원(시범지역) 사업	10,488	해양수산부
2017	2018-04-26	○○○	ScholarArtist-in-Residence at Mills College Cente...	12,000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04-26	○○○	버클리실포니오케스트라 유럽투어공연	6,000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04-26	○○○	쌀귀리 춘파재배 현장실증 시범	10,000	농촌진흥청
2017	2018-04-26	○○○	클로렐라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1,000	농촌진흥청
2017	2018-04-26	○○○아트	알록달록 예술정원	11,000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04-26	○○○	독일 베를린 해외 레지던스 참가	18,380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04-26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0,000	농촌진흥청

자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보조사업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중요재산 현황 및 변동 상황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취득한 이후 15일 이내에 보고
-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공시

그림 2-1-12 중요재산의 공시

개요 정보공시 조회 중요재산 공시 현황

정보공시 조회

취득연도 2017

지역별 전체

중요재산유형 전체

중요재산 전체

중량부처 전체

검색

중요재산 목록

(단위:원) ☒ 엑셀 ☐ CSV ☐ TXT 다운로드

취득연도	중요재산명	중요재산유형	주소(시도)	소관명	취득가액	현재가액
2017	배전반	기타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94,000,000	94,000,
2017	열펌프	기타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8,213,000	8,213,
2017	지게차	기타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29,216,000	29,216,
2017	습식바닥청소기	기타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23,332,420	23,332,
2017	지게차	기타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13,310,000	13,310,
2017	선과기	기타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	933,680,000	933,680,
2017	가공공장	부동산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1,098,382,200	1,098,382,
2017	분무건조기	기타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179,651,800	179,651,
2017	천연물추출농축장치	기타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153,569,000	153,569,

자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01

실시간
(real-time)
보조금
업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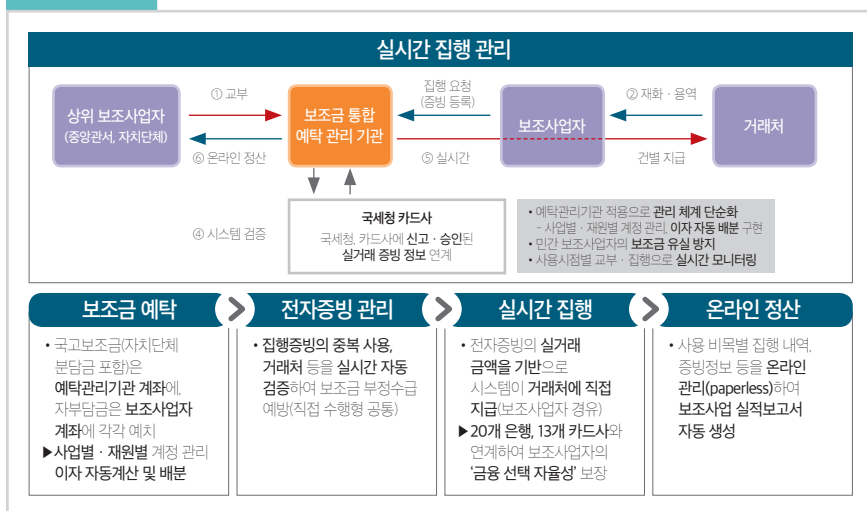
일 단위로 건별 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배정, 교부, 이체 금액을 일 단위로 집계
- e나라도움 도입 이후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건별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검증과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가능
 -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지출 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 중복 · 부정수급을 방지
 - 보조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였는지를 e나라도움을 통해 검증

선지급 · 후정산 방식에서 선시행 · 후지급 방식으로 변화

- 사업 시행 전에 보조금을 받고 연말에 한꺼번에 증빙(영수증 첨부)하는 방식에서 탈피
 -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 거래처에서 재화 · 용역을 구입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공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통합예탁관리기관에 증빙 등록을 통해 보조금 이체를 요청하면, 국세청, 카드사 등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 이후 실시간으로 건별 지급
-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
- 보조사업 종료 이후 온라인으로 정산을 수행하여 실적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2-1 e나라도움의 실시간 집행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02

중복 ·
부정수급
방지 체계
구축

보조금 통합관리를 통해 유사 · 중복 사업을 관리하고, 수급 자격 검증, 지출 증빙 검토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

- 누군가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신호발송(signalling)만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언론 보도, 감사원 e감사시스템을 분석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패턴'을 도출
 - 부정수급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 허위 신청 ② 증빙서류 위조 ③ 개인 용도의 사용이 있음
- 2017년 보조금 개혁으로 부정수급의 벌칙이 강화됨(<표 2-2-1> 참고)

표 2-2-1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로 인한 불이익

불이익	상세 사항
보조금의 반환	- 교부 결정이 취소된 부분(전부 or 일부)의 보조금 전액 반환 및 이자 반환 - 기집행된 보조사업비도 반환 대상임
동종 교부금 정지 등	- 기집행된 보조사업비도 교부하여야 할 동종 보조금이 있는 경우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동종 보조금과 미반환 보조금 상계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미납 시 5%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징수
강제 징수	- 미반환 보조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에 대해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른 강제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명단 공표	-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 및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 명단 공표
벌금	- 거짓 신청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용도 외 사용 또는 중요재산 미승인 활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 기획재정부(2017),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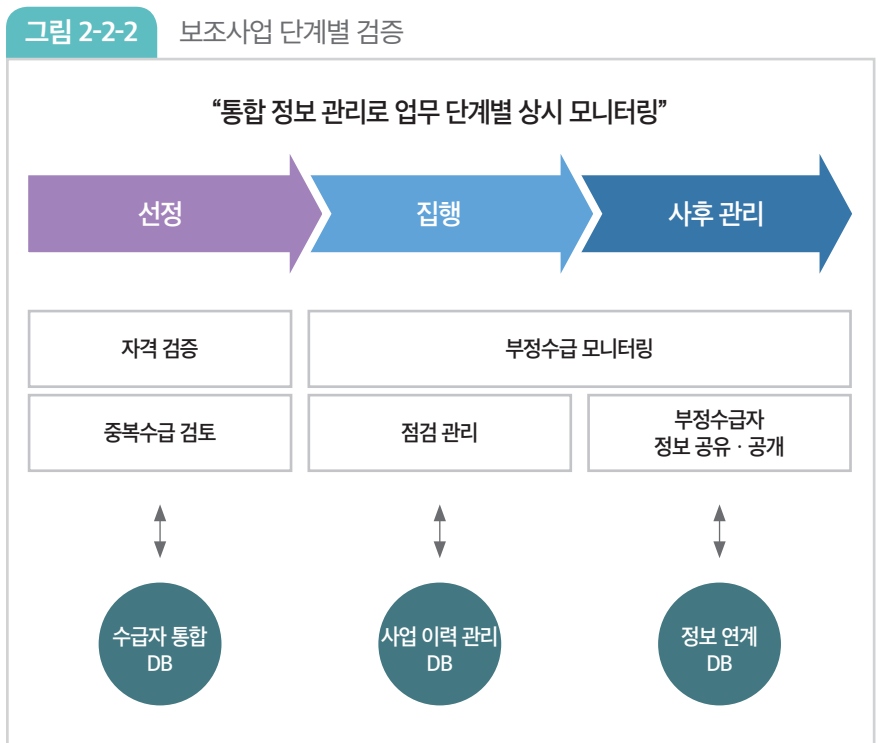
신청, 집행, 사후 정산 등 국고보조금 전 과정에서 중복 · 부정수급 방지 체계 구축

- 신청 단계에서 보조사업의 특성에 대한 정보(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 중복 사업 여부 검토
 -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자격검증을 시행
- 집행 단계에서 온라인 지출 증빙으로 실시간 검증을 수행하여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 · 중복 지급을 방지
 - 보조금 집행 증빙 시 증빙서류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등록되지 않게 방지(재입력 요구)

- 국세청 정보로 보조금을 받은 거래처의 휴업과 폐업 여부를 확인
-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의 정보와도 연계하여 사업자 번호와 예금주 실명 번호가 일치하는지도 검증
- 사후 정산 및 집행 반환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한 경우, 대법원, 국세청과 연계하여 지원 목적에 벗어난 재산 활용을 방지

표 2-2-2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	
단계	내용
신청 단계	보조사업별로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중복 사업 검증 무자격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 검증
집행 단계	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 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보조사업자가 2개 이상 신청하거나 수급하는 경우 이를 점검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 징후 모니터링 국세청·금융 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 거래 증빙을 검증
사후 단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18),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교재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03

사업 구조 세분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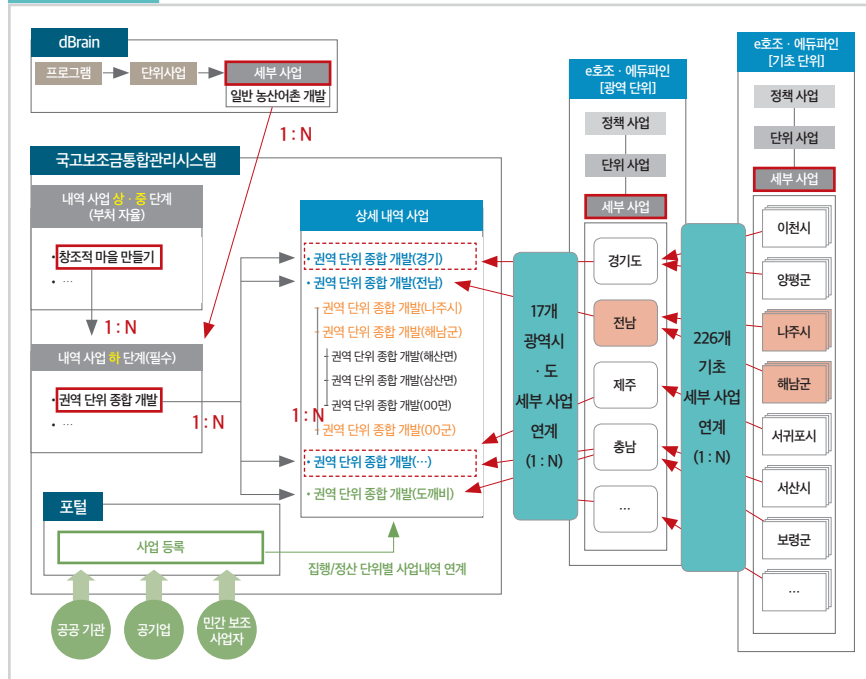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화하여 ‘부정수급 패턴’을 적용

- 연관 분석, 행동 분석, 신용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담당 기관이 부정수급에 대해 모니터링
 - 연관 분석이란 가족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발생한 부정사례에 근거하여 검토
 - 행동 분석이란 보조금 집행 취소 3회 이상 등 보조 사업 수행 과정 중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상행동에 대해 검토
 - 신용 분석이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의 환경 요인을 분석
 - 경험 분석이란 과거 보조사업 수행이력,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분석
- 신청, 집행, 사후 정산 업무 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보조사업자(수급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예산 사업 구조를 세부 사업에서 내역 사업으로 세분화

- 세부 사업은 금액이 크고 다양한 내역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 노인, 차상위 계층 등 각 수급자별 맞춤형 보조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계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내역 사업을 공통 집행 관리 단위로 설정
- e나라도움의 내역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사업과 매핑(mapping)하여 최종 보조 사업자까지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설계
 - 내역 사업은 여러 개의 상세 내역 사업을 포함하는데, 이 상세 내역 사업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세부 사업과 매핑(mapping)하여 연계

그림 2-2-3 내역 사업 매핑(mapping)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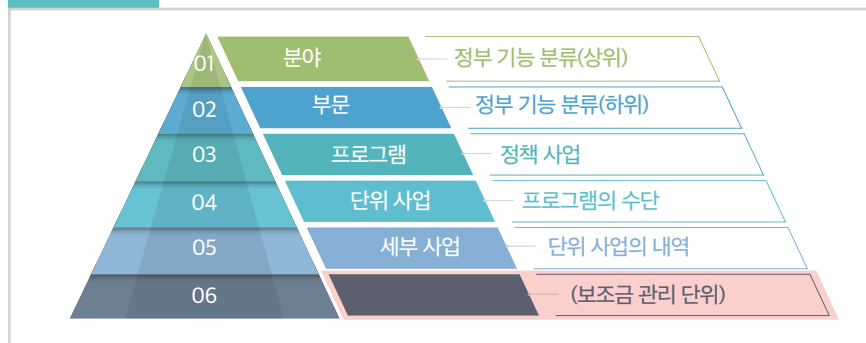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내역 사업

세부 사업의 하위 단위로서 보조금법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

- 예산 편성은 세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보조금 관리나 예비 타당성 제도는 내역 사업 단위로 운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세부 사업 단위로 관리

그림 2-2-4 예산 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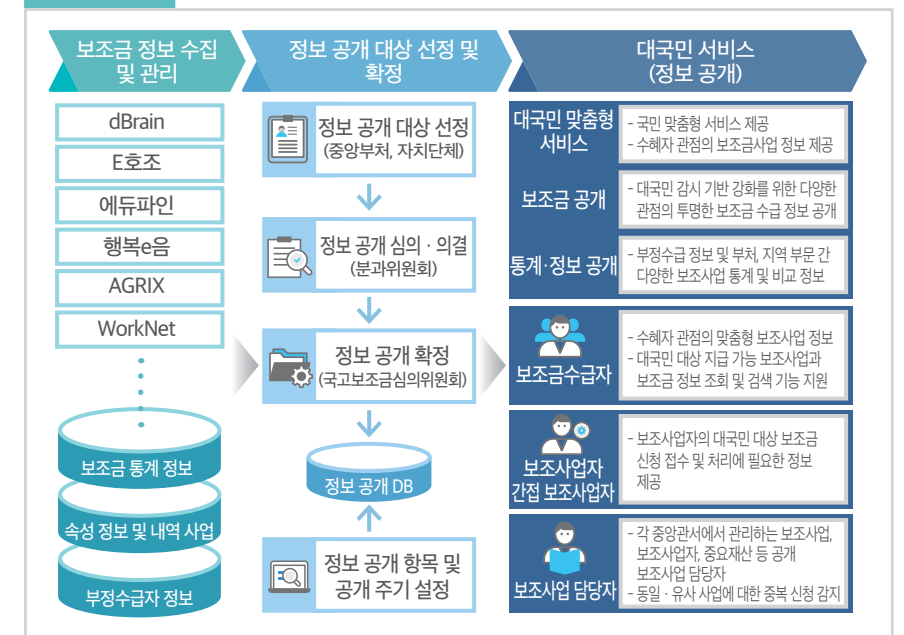
04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임

- e나라도움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e나라도움과 연계된 시스템의 보조금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선정하여 확정
 - 정보 공개 대상을 선정, 심의, 의결 과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통계, 보조사업자 정보 등 공개
- 정보 공개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2-2-5 대국민 정보 공개 프로세스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보조금 찾기' 기능 제공

- 나이, 성별, 지역, 주제(사회복지 향상, 보건·의료, 주거 안정, 교육보장 등)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목록이 검색됨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65세 이상, 전체, 전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검색하여 기초연금 등 수급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을 찾을 수 있음

- 사업명, 주관 부처, 사업 연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당해 연도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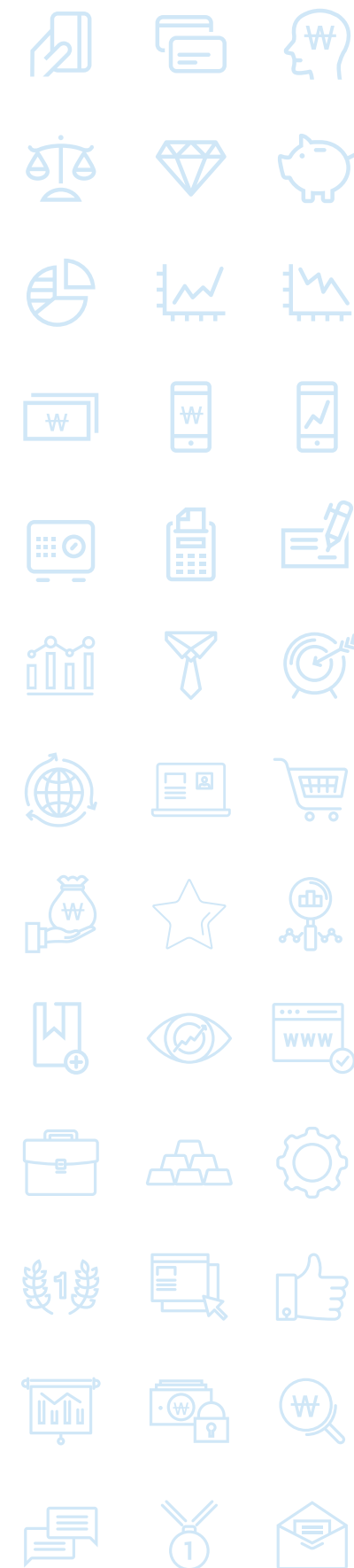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맞춤형 보조금 검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보조사업 수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속성정보)가 필요

- 속성 정보란 보조사업의 특성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꼬리표’라고도 불림
- 보조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이 아닌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e나라도움에서는 보조사업의 서비스 유형, 수급자의 특성(국내 지역, 해외 지역, 성, 생애 주기, 소득기준, 경제활동, 교육 단위, 기업 규모, 개인가구 구성 유형) 총 10개로 속성 정보를 분류

표 2-2-3 보조사업의 속성 정보 분류				
서비스 유형	행정 · 통일 · 외교	안전보장	교육보장	문화활동
	관광 · 휴양활동	종교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 안정	주거 안정	보건 · 의료
	1차산업 지원	산업 · 에너지 지원	국토개발 지원	교통 · 물류 진흥
	방송 · 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국내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역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성별	남성	여성		
생애주기	영 · 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소득 기준	소득 무관(보편적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소득 하위 50% 이하	소득 하위 70% 이하	긴급지원 대상자	기타 취약 계층
경제활동	사회 초년생	근로자 · 직장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취업모(워킹맘)	실직자 · 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육 단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가구 구성 유형	다문화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 · 출산	소년 · 소녀가장	조손가정



▶ 제3장 주요 국고보조사업 소개

1. 생애주기별	86
2. 경제활동별	103
3. 소득 기준별	113
4. 기업 규모별	128
5. 기타	132

*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사업 개요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728(천 명) - (예산 규모) 3,257,470(백만 원)
사업 경과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9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시작 - 2005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시작 - 2006년: 민간 보육 시설 이용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도입 - 2011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소득 하위 50% → 70%) - 2012년: 만 0~2세 및 만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 2013년: 만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소득수준 무관) - 2016년: 만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부모,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이용)
시행 방법 및 주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조율(%)	서울 25~45%, 지방 55~75%

지원 기준 및 대상

-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원

구분	내용
어린이집 (0~2세) 종일	-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 대상: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 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이용 시간: 07:30 ~ 19:30(일 12시간)
어린이집 (0~2세) 맞춤	-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 대상: 종일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이용 시간: 09:00 ~ 15:00(일 6시간) + 긴급보육 바우처* 월 15시간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 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만 3~5세 보육료	-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 담당 부처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원 내용 및 금액 등은
모두 2018년 기준임

지원 내용 및 금액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 지원

(단위: 원)

연령		종일반		맞춤반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긴급보육 바우처
만 0세	종일	441,000	437,000	344,000	437,000	60,000
	24시간	661,500	-	-	-	-
만 1세	종일	388,000	238,000	302,000	238,000	60,000
	24시간	582,000	-	-	-	-
만 2세	종일	321,000	161,000	250,000	161,000	60,000
	24시간	481,500	-	-	-	-

* 부모 보육료는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아이행복카드)

* 기본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급

(단위: 원)

연령	지원 단가		
	종일	야간	24시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신청 지원(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대상자)

사업 개요

목적	-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존중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860(천 명) - (예산 규모) 1,089,137(백만 원)
사업 경과	- 2009년 7월: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11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2013년: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시행 방법 및 주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보조율(%)	서울 25~45%, 지방 55~75%

지원 기준 및 대상

- 만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원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
장애 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6세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
-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월 10만~20만 원 지원

(단위: 원)

구분	지원 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 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000	월 200,000	월 200,000
24개월 미만	월 150,000	월 177,000	
36개월 미만	월 100,000	월 156,000	
48개월 미만	월 100,000	월 129,000	월 100,000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0,000	월 100,000	

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 계좌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자 신분 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의 가출증명서 또는 위임장 등(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업 개요

목적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2,380(천 명) - (예산 규모) 국비 기준 700,000(백만 원) [지방비 포함 950,000(백만 원)]
사업 경과	- 2017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 2018년 9월부터 사업 시작
시행 방법 및 주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인구 아동정책실인구 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지원 기준 및 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의 모든 가정에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영·유아/
아동/노년)

사업 개요

목적	-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을 향상을 통해 감염병 퇴치 기반 강화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19,340(천 명)(2016년 기준) - (예산 규모) 342,068(백만 원)
사업 경과	- 1996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보건(지)소를 통해 실시 - 2008년: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가 부담 사업(국정과제) - 2013년: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본인 부담 폐지(무료 접종) 및 항목 확대 -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위탁 의료 기관까지 확대 - 2017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생후 6~59개월까지 무료 접종 확대 시행,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질병관리본부), 지자체보조(시·도, 시·군·구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지원 기준 및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고위험군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및 금액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미 접종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 사춘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 Virus, 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
- B형 간염 주산기(일반적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을 의미) 감염 예방 사업
 -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B형 간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국가가 면역글로 불린 투여, B형 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전액 지원
-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
 -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민간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영·유아/
아동)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 65세 이상 국민에게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접종
 - 그 이외에도 예방접종 등록 사업, 필수 예방접종 사전 알림 안내 등이 있음

신청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서 지정 의료 기관 찾기 등 각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사업 개요

목적	-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영아 종일제 돌봄 5,450가구, 시간제 돌봄 40,390가구 - (예산 규모) 1,089,137(백만 원)
사업 경과	- 2007년: 시간제 아이 돌봄 및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신규 실시 - 2008년~2009년: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확대 - 2010년: 0세 정기 돌보미 서비스 제공 신규 실시 - 2011~2012년: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010년) 소득 하위 50% → (2011년) 70% → (2012년) 전 소득계층 -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 2013년: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 확대 *시간제 지원 가구: 3만 → 4.7만 가구, 방과후 아동 지원 시간: 연 480 → 연 720시간 *종일제 지원: 2,444가구 → 4,244가구 - 2014년: 영아 종일제 지원 연령을 24개월 이하로 확대 - 2017년: 영아 종일제 지원 연령을 36개월 이하로 확대
시행 방법 및 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 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보조율(%)	서울 30%, 지방 70%

지원 기준 및 대상

-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및 금액

①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기관 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종류		이용 대상	서비스 안내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 지원(중위 소득 120% 이하)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14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적용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정부 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주: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
자료: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②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종류		이용 대상	서비스 안내
종일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 ~36개월 이하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 교사형 돌봄 서비스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71만 6천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주: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
자료: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③ 기관 파견 돌봄

-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으로 아동 돌봄 보조 서비스 제공(이용 요금: 시간당 12,600원)

④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을 가정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

06

청년내일채움
공제(청년)

- 질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함
- 이용 단가: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 4,680원, 부모 부담 4,680원)

*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 지원 시간(연 60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 · 휴일 시간당 4,680원 추가(정부 지원 50%, 부모 부담 50%)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 이후 신청서를 작성
 - 정부 지원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 가능

사업 개요

목적	- 취업하지 않은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고용을 지원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신규 50(천 명) - (예산 규모) 184,820(백만 원)
사업 경과	-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7월 시범사업 시행 - 2017년: 청년내일공제 본격 시행 * 정부의 취업 지원금 2년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 유지 지원금을 700만 원으로 상향 * 2017년 총 지원 인원 5.5만명 (취업 인턴 3.3만 + 취업 성공 패키지 1.85만 + 일학습 병행제 0.35만)
시행 방법 및 주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보조율(%)	정액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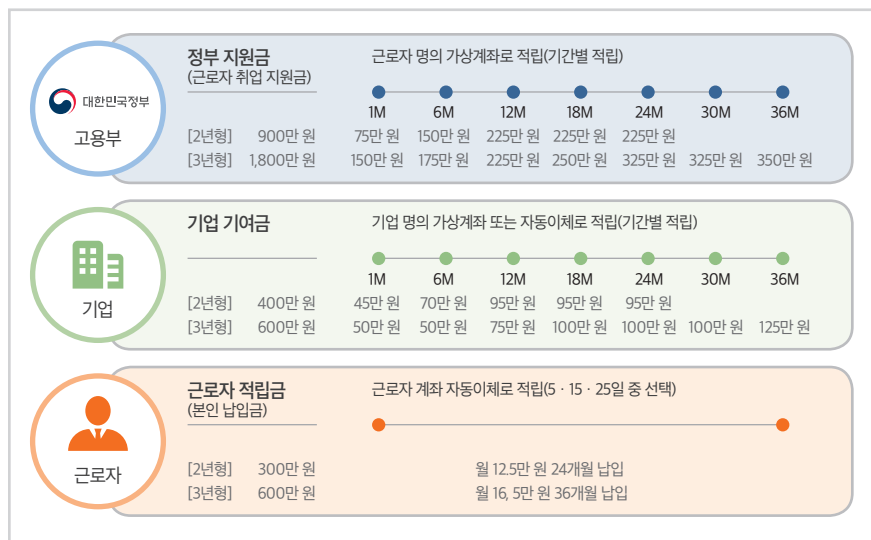
지원 기준 및 대상

- (청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기업) 고용보험에 등록한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금액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은 2년간 근속한 경우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음
 - 청년은 매월 12.5만 원 적립하여 2년간 300만 원 적립
 - 정부는 청년에게 취업 지원금으로 2년간 900만 원 지원
 - 기업은 채용 유지 지원금으로 2년간 500만 원을 지원받아, 그중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2년간 400만 원 적립

청년	2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3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의 목돈 마련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500만 원 지원 (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 3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750만 원 지원 (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 가입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sbcp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07

중·장년층 취업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년/장년)

사업 개요

목적	- 다음 일자리로의 전직 지원, 생애설계 지원,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사업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고령자인재은행: 210(천 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0(천 명), 생애설계 서비스: 25(천 명) - (예산 규모) 25,086(백만 원)
사업경과	- 2007~2011년: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 2006~201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자인재은행 확대, 경력 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 등 고령자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 포함) - 2013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 2015년: 생애설계 서비스 사업 시행(준비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장년을 대상으로 제2인생 경력설계를 지원)
시행 방법 및 주체	노사발전재단 등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국
보조율(%)	국고보조율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

지원내용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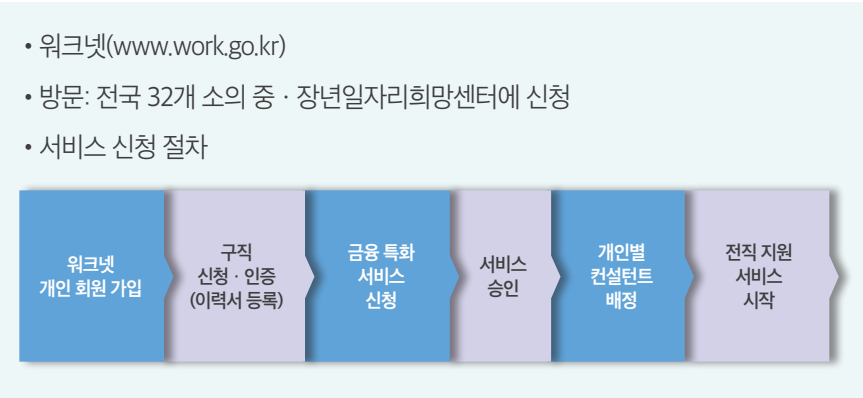
- 1:1 맞춤 전직 지원(재취업) 컨설팅 제공
 - 전담 취업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용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구직 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코칭 → 구직 전략 수립 → 면접 전략 → 구직 알선 → 취업 → 사후 관리
- 적합 인재 알선 서비스 제공
 - 구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에 적합한 인재 추천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
 - 단기 교육 프로그램: 변화 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중·장년기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 재도약 프로그램: 퇴직 이후 경력 목표에 따라 목표 설정 · 취업 스킬 · 건강 관리 등의 교육을 20시간 운영(수료 후 취업 동아리 연계)

- 구직활동 공간 및 휴게 공간 지원
 -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무 기기(PC,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무료 제공
 - 운영센터: 노사발전재단 서울, 서울서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충청, 강원, 제주
-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
 - 서비스 이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서울, 서울서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전북, 강원, 제주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senior>)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 방문: 전국 32개 소의 중 · 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신청
- 서비스 신청 절차

08
기초연금 지급
(노년)

사업 개요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인원) 5,167(천 명)(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 - (예산규모) 9,122,866(백만 원)
사업 경과	- 2012년: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과제 47번(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2013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 2014년: 「기초연금법」 시행 및 기초연금 지급 -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42번(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국정과제 43번(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시행 방법 및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보조율(%)	국고 보조율 76.6%(지자체보조(40~90%), 국민연금공단(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매년 1월에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발표

	선정 기준액(2018년)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 소득 ·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국내 거주 노인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지원 내용 및 금액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250,000원(2018. 09 ~ 2019. 03)으로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75,00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참고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③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를 지참
 - ④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 i) 신청서 ii)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iii) 소득·재산신고서 iv)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 *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0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노년)

사업 개요

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514(천 명) - (예산 규모) 634,932(백만 원)
사업 경과	-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 '고령자 인력관리센터 설립'과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 개 창출(인수위) - 2004년: 노인인력운영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설치 - 2005년: 「노인복지법」 개정(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설치 근거 마련) - 2008년: '노인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국정과제 선정 - 2017년: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국정과제 선정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 지자체 보조, 민간 보조 /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보조율(%)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 보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시장형·인력 파견형: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중 사업단 참여자의 선발 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 공익활동·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참여 신청자의 선발 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유형		선발 공통 기준
공익활동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 건강 상태: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 형태: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직업이 없는 노인
재능나눔활동		
시장형(취창업)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내용 및 금액

-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 계층 지원 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재능나눔활동) 노인의 전문 자격 · 경력을 활용한 취약 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권익증진활동 참여
- (시장형) 인력 파견형, 시니어 인턴십, 시장형 사업단, 고령자 친화 기업
 - 인력 파견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 인턴십: 인턴 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 급여의 50%를 기업에 지원(참여 노인당 최대 270만 원) 등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지원
 -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 단계에서 시설비 등 2억 원 이내 지원, 운영 단계에서 회계, 노무, 법률, 홍보 등 지원

신청 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 기관(모집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 수행 기관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 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 확인 후 참여자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 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10

노인 돌봄
서비스
(노년)

사업 개요

목적	- 거동불편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거동불편 노인 41(천 명) - (예산 규모) 98,736(백만 원)
사업 결과	- 2007년: 노인돌봄미바우처 사업 시행,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시행 - 2008년: 노인돌봄미바우처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통합 방안 마련 - 2009년: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통합 시행 - 2010년: 가사 간병 서비스(노인), 취약 농가 가사도우미(노인),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사업 통합 시행 - 2017년: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례 관리 지원 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 민간 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지원 기준 및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단위: 천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 소득 160%	2,675	4,555	5,893	7,231	8,568	9,906	11,244	12,581

2 ▶ 경제활동별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 노인
-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지원 내용 및 금액

- 방문 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 관리, 신체 기능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 * 목욕 보조 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 보호 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 기능 회복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송영 서비스 등
-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연 6일)
 - 단기 보호 서비스
 -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 보호 서비스 추가 제공
- 단기 가사 지원서비스(월 24시간)
 - 취사, 생활 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 동행 등

신청 방법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매월 1일~말일(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구비 서류: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 증명 자료 필요
- * 구비 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01 직장 어린이집 지원 (근로자· 직장인)

사업 개요

목적	-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육아 부담의 경감을 유도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대상) 153개 소 - (예산규모) 145,125(백만 원)
사업 경과	- 1994년: 여성 고용 확대 및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영·유아 보육(탁아) 사업 확충 대책 수립·시행 - 1996년: 직장 어린이집 확충 대책(1996. 11월)을 수립 - 1997년: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 2005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 2011~2017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확대, 직장 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전부 개정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 / 근로복지공단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보조율(%)	국고 보조율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와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유지할 예정
- 공공 직장 어린이집·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지원

① 시설 설치비와 교재 · 교육비 지원

- 시설 설치비는 시설 전환 소요 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 기업(단독형(3억), 공동형(4억))
 - 우선 지원 대상 기업(단독형(4억), 공동(8억), 컨소시엄형(10억))
- 교재 · 교구비: 소요 비용의 60~90%
 - 신규(대규모 기업(5천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7천만 원))
 - 교체비(3천만 원)

②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 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 원(중소기업 월 120만 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③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만~520만 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④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 고용 친화 시설 용자

- 시설 건립비, 매입비 등 최고 7억 원(공동 9억 원) 한도로 연 2.0% 이율로 용자(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연 1.0%),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방식)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연락처 02-2670-0411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wellinfo>)

02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농업인)

사업 개요

목적	-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대상) 816천ha(2017년 기준) - (예산 규모) 809,000(백만 원)
사업 경과	- 2005년: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2009년: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 2013년: 쌀 고정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국정과제 추진(2013~) * 평균 지급 단가: (2006~2012) 700천 원/ha → (2013) 800천 원/ha (2014) 900천 원/ha → (2015) 1,000천 원/ha - 2014년: 쌀 목표 가격 확정 및 후속 조치 - 2015년: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시행 방법 및 주체	보조 / 시장, 군수, 구청장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보조율(%)	국고 보조율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금액

- 고정직불금은 1998~2000년 기간에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재배 품목 및 쌀값과 관계 없이 농지 형상을 유지하면,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
-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 제도란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direct payment)을 의미
 - 농업 분야 보조 방식 중 하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 ① 고정직불금: 재배 및 가격과는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
 - ②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지급
 -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연계시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는 고정 직불금 보전을 감안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보전
- 2005년부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사업 시행하여 현재의 지급 금액은 100만 원/ha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농가가 2~4월에 지자체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5~8월에 적합 여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
 - 고정직불금은 농지 형상 유지 등의 요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가에 지급
 - 변동직불금은 농가가 신청한 필지에서 벼 재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확기 쌀값을 조사(10월~익년 1월)해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 후 2~3월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통해 일괄 지급

사업 개요

목적	-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험 제도로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대상) 2017년 75개(농작물 53, 가축 16, 수입보험 6) - (예산규모) 252,148(백만 원)
사업 경과	- 최초 사업 시작 연도: 2001년(가축 1997년, 수입보장보험 2015년, 가축질병치료보험 2018년 시작) -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사과·배 시범 사업 실시) - 2005년: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국가재보험 도입 및 기금 설치) - 2009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 사업(농작물 53개, 가축 16개, 수입보험 6개) - 2013~2014년: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 확정 발표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시행 방법 및 주체	농작물·수입(NH농협손해보험), 가축(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가축질병치료보험(NH농협손해보험, 농협중앙회)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보조율(%)	국고 보조율 40~60%

지원 기준 및 대상

- 사업 대상 지역에서 보험 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농작물재해보험 원에 시설 상품은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온실보험과 중복 가입 불가

지원내용 및 금액

-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시설복구와 생계비 대책에 보험원리를 도입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서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보험	지원금액
농작물재해보험	- 보험료 40~60%
가축재해보험	- 영업보험료 50%
수입보장보험	- 보험료 50% - 운영비 100%
가축질병치료보험	- 보험료 50%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대상품목에 따라 상이(보험판매 보험사에 문의)
- 절차/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 농협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구비서류
 -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NH농협손해보험 / 연락처 02-3786-7644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 연락처 1644-9000

사업 개요

목적	-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사업규모 (2018년 예산)	- (지원규모) 밭고정 293천ha 1,469억원, 논이모작 92천ha 462억 - (예산규모) 193,738(백만 원)
사업경과	- 2011년: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여·야 합의 - 2012년: 발농업직불제 도입·시행 - 2014년~2015년: 논이모작직불제(2014), 밭고정직불제(2015) - 2016년: 품목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를 밭고정직불제로 통합 * 밭고정 직불금 단가 인상: (2016) 40만 원/ha → (2017) 45만 원/ha → (2018) 50만 원/ha
시행방법 및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보조율(%)	국고보조금 100%

지원기준 및 대상

- 대상농지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연속하여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논이모작) 쌀고정직불금 대상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발농업에 이용된 논
- * 세부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uni.agrix.go.kr) 내 사업시행지침 참고
- 대상품목
 - (밭고정) 품목제한 없음(단, 논벼·연근·미나리·왕골 제외)
 - (논이모작) 식량 및 사료작물

지원내용 및 금액

- 2018년 밭고정 직불금 지원금액을 45만 원/ha에서 50만 원/ha으로 인상
- 현재 직불금 단가는 밭고정 50만 원/ha, 논이모작 50만 원/ha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
- * 농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농업 직불제 제도 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 지원 콜센터	1644-8778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시스템 상담 지원 콜센터	1588-68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사업 개요

목적	-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 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예산 규모) 10,193(백만 원)
사업 경과	- 2012년: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 사항에 반영되어 도입 * 수산 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업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 - 2014년: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 실시 *(2012)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 (2013) 30km이상 떨어진 섬 → (2014) 8km이상 떨어진 섬(8km미만은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 운항하는 섬) - 2015년: 「수산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시행 방법 및 주체	자치단체 보조 / 지자체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보조율(%)	80%

지원 기준 및 대상

- 사업 대상(조건 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 분야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와 중복 불가

지원 내용 및 금액

-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 지역 어업인에게 어가당 연간 60만 원 직접지불금을 지급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5만 원씩 직불금을 인상하여 2020년까지 70만 원 지급할 예정
 - 60만 원의 직접지불금 중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 활성화 사업을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마을어촌계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일: 신청인 부적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이후(매년 12월경)
 - 지급 방법: 신청인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
-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① 어업인확인서
 - ②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ex> 수협 수산물 위판 실적, 어촌계 사매매 장부,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③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ex> 입출항 신고서, 어장 관리 실태, 어촌계 조업일지 등)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접수 기관: 읍·면·동 수산 분야 직불금 담당 부서

06

정책숲가꾸기 (임업인)

사업 개요

목적	-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재해 방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 창출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규모) 209천ha(국유림39천ha, 170천ha) - (예산 규모) 209,030(백만 원)
사업 경과	- 1973년: 제1차 산림녹화기부터 육림 사업 추진 - 1982년: 민유림 육림 사업 실행 시 국고 보조 시작 - 1998년: 제4차 산림 기본 계획에 의한 육림 사업 확대 추진 - 2003년: 숲가꾸기 5개년 추진 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100만ha에 대해 사업 추진 - 2008년: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125만ha 산림에 사업 추진 - 2013년: 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 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현장과 기술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139만ha) 추진 - 2017년: 새정부의 실천 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시행 방법 및 주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 부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보조율(%)	5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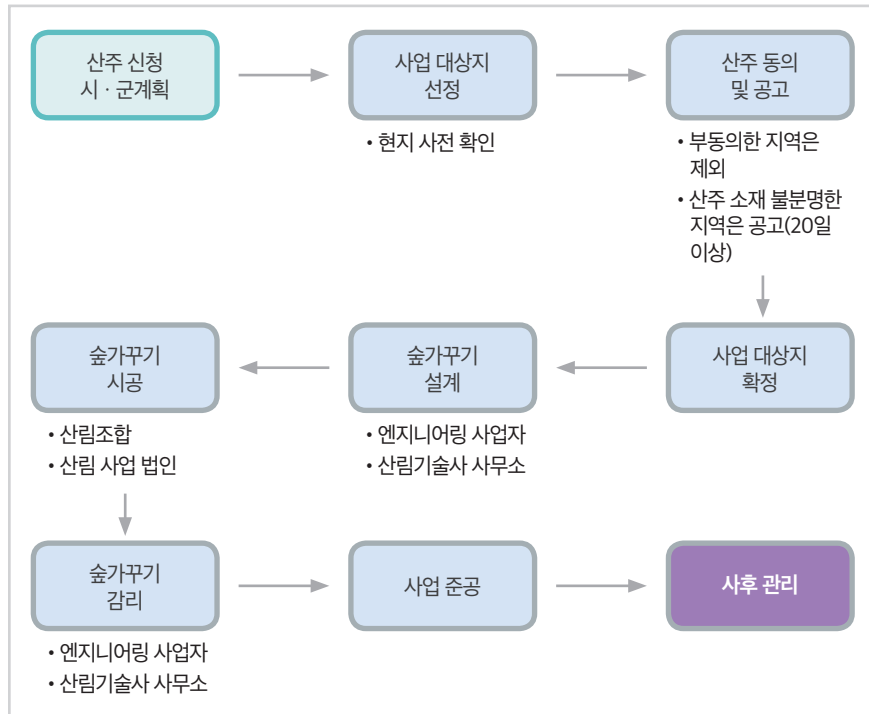
지원 기준 및 대상

- 일반 국민, 산주, 임업 기능인, 취약 계층
-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산림 소유자

지원 내용 및 금액

- 숲의 생육 단계에 필요한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의 사업을 통해 우량 목재를 육성 하고, 재해 방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
 - 정책숲가꾸기: 숲의 생육 단계에 필요한 숲가꾸기
 -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
 - 공공산림가꾸기: 농·산촌 유휴 인력 및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 절차



신청 방법

- 산림 소유자가 산림 소재지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숲가꾸기 신청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를 통해 숲가꾸기 신청
-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 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 담당 부서에 제출(사업 전년도 2월 말까지)
- 기타 세부적인 사업 신청 및 사업 실행 절차 등 안내는 사업을 주관하는 산림 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 담당 부서에 문의

3 소득 기준별

01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 개요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보건 여건 향상
사업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1,500(천 명) - (예산 규모) 5,346,603(백만 원)
사업 경과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1976년: 생활보호자를 주로 국공립 의료 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 - 1977년: 「의료보호법」(1977.12.31, 법률 제3076호) 제정 - 2005년: 등록된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율 경감(15% → 10%) - 2009년: 의료급여 차상위 2종(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전환 - 2011년: 보장 기관을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확대 - 2015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시행 방법 및 주체	지자체 및 민간 보조 /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른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 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 대상의 본인 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 본인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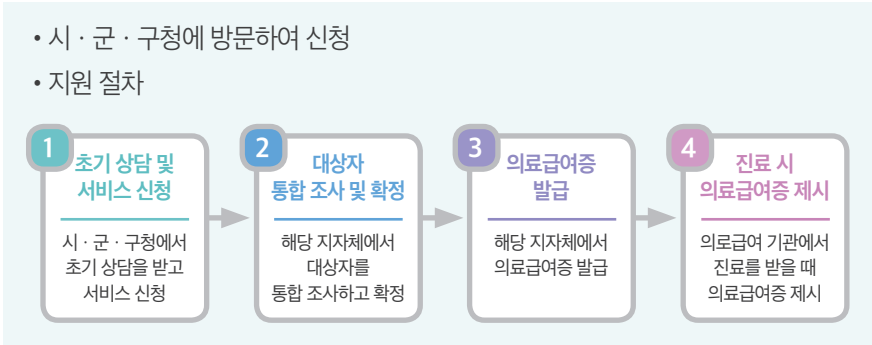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본인 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함. * 본인 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 방법



02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 개요

목적	-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1,270(천 명), 81.4만 가구 - (예산 규모) 3,721,567(백만 원)
사업 경과	- 1961~2000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2003년: 재산의 소득 환산제 시행(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 인정액으로 일원화) - 2005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20% → 130%)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 보조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보조율(%)	서울 40~60%, 지방 70~90%

지원 기준 및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50만 1,632원, 2인 가구: 85만 4,129원, 3인 가구: 110만 4,945원, 4인 가구: 135만 5,761원, 5인 가구: 160만 6,576원
 - 부양의무자(수급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참고
- 향후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정 급여를 관리할 예정

지원 내용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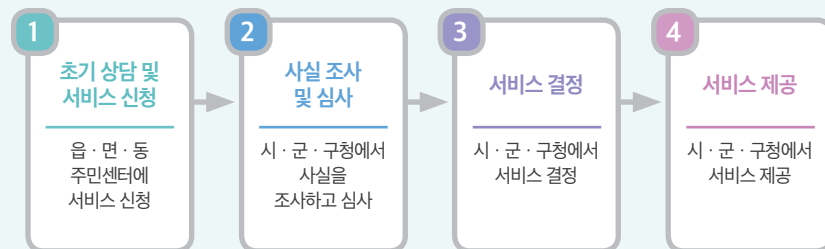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50만 1,632원에서 소득 인정액 15만 원을 제외하여 35만 1,632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절차



03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 개요

목적	-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 보장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378(천 명)(중위 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예산 규모) 131,244(백만 원)
사업 경과	- 2013년: 총리 주재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제도 개편 기본 방향 마련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 - 2015년: 맞춤형 급여 체제 개편으로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시행 방법 및 주체	지자체 보조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담당 부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보조율(%)	서울 40~60%, 지방 70~90%

지원 기준 및 대상

- 초·중·고 재학 중인 중위 소득 50% 이하 학생(교육급여 대상자)
- 중위 소득 50% 이하 충족 시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 아래의 지원과는 중복 불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법에 따른 교육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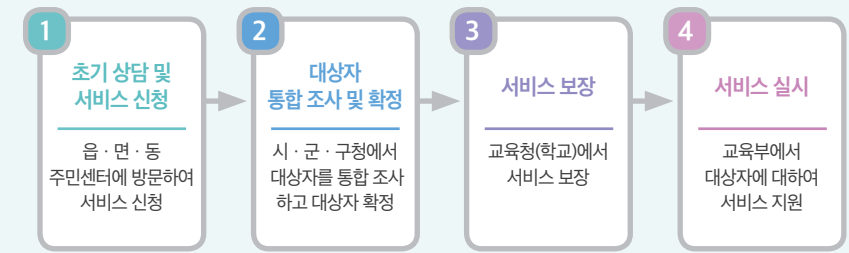
-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지원 금액
초등학생	- 부교재비: 1인당 66,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0,000원(학기당 25,000원씩 연 2회)
중학생	- 부교재비: 1인당 105,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7,000원(학기당 28,500원씩 연 2회)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전체 금액 - 부교재비: 1인당 105,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7,000원(학기당 28,500원씩 연 2회)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급여 콜센터 ☎ 1544-9654
- 지원 절차



04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 개요

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임차료를 보조, 주택 개·보수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136.9만 가구 - (예산 규모) 1,125,210(백만 원)
사업 경과	-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관계 부처 합동),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안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발전(국토부) - 2014년: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안건, 주거급여 자가 가구 지원 방안 의결·확정 - 2015년: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안건, 중위 소득 및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등 최저보장 수준 결정, 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
시행 방법 및 주체	보조 / 국가·지자체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보조율(%)	서울 40~60%, 지방 70~90%,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 소득의 43% 이하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 내용 및 금액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
-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 임대료

(단위: 만 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21.3	18.7	15.3	14.0
2인 가구	24.5	21.0	16.6	15.2
3인 가구	29.0	25.4	19.8	18.4
4인 가구	33.5	29.7	23.1	20.8
5인 가구	34.6	30.8	24.2	21.8
6인 가구	40.3	36.4	27.6	25.2

•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단위: 만 원)

수선 한도(주기)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3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43% 이하
경보수	378만 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 원(5년)				
대보수	1,026만 원(7년)				

신청 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05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업 개요

목적	-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 촉진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희망키움 145(천 가구), 희망키움 289(천 가구), 내일키움(22천 가구), 청년희망키움(5천 명) - (예산 규모) 82,883(백만 원)
사업 경과	- 2004년: 참여정부 국정과제 회의에서 빈곤 탈출을 유인하는 지원 체계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시범 사업 추진 결정 -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 시행 - 2013년: 차상위 계층까지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희망키움통장 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 - 2014년: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II> 시행 - 2016년: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신규 지원
시행 방법 및 주체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보조율(%)	서울 40~60%, 지방 70~90%

지원 기준 및 대상

- 일반 노동 시장 및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고

지원내용 및 금액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자립의 여건을 조성
-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비교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15~34세)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 이상)	일반 노동 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수급 가구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월 본인 저축액	-	5만 원 or 10만 원 (선택)	10만 원	5만 원 or 10만 원 (선택)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소득 81만 원 기준 평균 30만 원) *장려율: 63%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 원 기준) ① 월 저축 10만 원 기준 → 월 평균 36만 원 ② 월 5만 원 저축 기준 → 월 평균 18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 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	① 내일키움장려금: (시장 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 서비스형 비수익형 제외) 본인 저축액의 1:0.5 ②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차등 지급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 용도 증빙)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 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 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 노동 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 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월 소득 81만 원 기준 평균 1,440만 원	(3년, 3인 가구 기준) ① 월 저축 10만 원 기준 → 평균 약 1,700만 원(최대 2,200만 원) 적립 ② 월 5만 원 저축 기준 → 평균 약 830만 원(최대 약 1,100만 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 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 원 (최대 1,620만 원) 적립

* 단,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
 자료: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http://www.hopegrowing.com>)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06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 개요

목적	-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 사용을 보조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저소득층 65만 가구 내외 - (예산 규모) 83,170(백만 원)
사업 경과	- 2013년: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 2015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 2017년: 국정과제 포함
시행 방법 및 주체	민간 경상보조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 기관(한국에너지공단)
담당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지원정책과
보조율(%)	국고 보조율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중위 소득 40% 이하)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
-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2018년 기준)

구분	내용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3.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3.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20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및 금액

- 중위 소득 40% 이하의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제공
- 향후 중증희귀 질환자 및 국가상이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10% 높이는 등의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 금액	86,000	120,000	145,000

※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2018년 10월 17일 부터 ~ 2019년 1월 31일 까지(총 4개월)
- 사용 기간: 2018년 11월 08일 부터 ~ 2019년 5월 31일 까지(총 7개월)
- 문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자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사업 개요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최저생활을 보장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38(천 명) * 해산급여: 2,475명, 장제급여: 38,853구 - (예산 규모) 25,042(백만 원)
사업 경과	- 1969년~2000년: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제보호 지원 - 1997년~2000년: 「생활보호법」에 의한 해산보호 지원 - 2000년~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장제급여 지원
시행 방법 및 주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보조율(%)	서울 40~60%, 지방 70~90%

지원 기준 및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금액

①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600,000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000원 지급)

② 장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1구당 750,000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 급여 신청
 - ① 해산급여
 - 복지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통장 번호를 확인해 해산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해 7일 이내에 지급
 - ② 장제급여
 - 복지 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업 개요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극한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222,982건(2016년 기준) - (예산 규모) 111,304(백만 원)
사업 경과	-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및 공포(2006년 시행) - 2009년: 총 재산 기준(대도시 95 → 135, 중소 도시 77 → 85) 완화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120 → 300만 원 이하) - 2017년: 긴급복지 위기 상황 인정 사유 확대
시행 방법 및 주체	지자체 보조 /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지원 기준 및 대상

-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1인 기준 1,254,079원, 4인 기준 3,389,402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3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 내용 및 금액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실질적인 위기 지원 제도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先 지원 後 조사 원칙)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료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170.4천원(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643.2천 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 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50.5천 원 이내 (4인 기준)	6회
금전 · 현물 지원	부가 급여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 원, 중 352.7천 원, 고 432.2천 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4회)
		그 밖의 지원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96천 원 / 월 - 해산비(60만 원) · 장제비(75만 원) · 전기 요금(50만 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관 기관 · 단체 연계 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 · 군 · 구청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
-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 필히 시 · 군 · 구청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 129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4 ▶ 기업규모별

01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소기업 ·
소상공인)

사업 개요

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2,998(천 명) - (예산 규모) 2,970,769(백만 원)
사업 경과	-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 및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2017년 8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운영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방법 및 주체	민간 경상보조 / 고용노동부(참여 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보조율(%)	국고 보조율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 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및 금액

-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 지원

- 단기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위: 원)

소정 근로시간(주 단위)	지급 기준(평균 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5시간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5시간	90,000
10시간 미만	5시간	60,000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단위: 원)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22일	130,000
19일 이상 ~ 21일 이하	20일	120,000
15일 이상 ~ 18일 이하	16.5일	100,000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EDI(www.ei.go.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국민연금(edi.nps.or.kr)
 - 국민건강보험(edi.nhis.or.kr)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co.kr)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자료: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사업 개요

목적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예산 규모) 167,121(백만 원)
사업 경과	- 2000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지시 -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10.22) -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005.3.1) - 2006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 2017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선정
시행 방법 및 주체	민간 경상보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시장상권과
보조율(%)	30~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 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지원 내용 및 금액

- 점포 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장 자생력을 제고하고 정책사업 신청 전후 컨설팅을 통한 사업성과 향상을 지원

- 시장 자문: 시설현대화 또는 경영 혁신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전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 컨설팅 지원(시장당 3회)
- 종합 현장 진단: 2018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시장을 대상으로 각 시·도에서 컨설팅기관(전문 인력 등) 등을 통해 종합 현장 진단 실시
- 점포지도: 점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상품 개발 및 진열, 경영 기법 전수 등 현장지도
-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비용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실시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 ①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시장 마케팅을 지원
 - ② 상인 교육 및 시장 인프라 지원
 - ③ 온누리상품권 발행
 - ④ 임차 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사업비 등 상권 활성화
 - ⑤ 글로벌 명품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
 - ⑥ 장 보기 및 배송 서비스 등 전통시장 ICT 기반 구축
 - ⑦ 청년몰 조성 및 창업지원
 - ⑧ 전통시장 대학 협력
 - ⑨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화재공제 지원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 042-363-7631

사업 개요

목적	-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
사업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중증장애인(1~3급) 71(천 명) - (예산 규모) 690,674(백만 원)
사업 경과	- 2008년: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제도 도입 추진 - 2011년:「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3년: 신청 자격 2급까지 확대 - 2015년: 신청 자격 3급까지 확대하고, 2016년 4월 가산급여 제도 도입
시행 방법 및 주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보조율(%)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국민연금공단(100%)

지원 기준 및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2·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활동 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및 금액

-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
- 2018년 지원 대상자를 71,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시간당 9,240원에서 10,760원으로 인상함(월 평균 급여량: 109.8시간)

급여 종류	내용	수가	제공 인력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10,760원 / 1시간 기준	활동 보조인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주차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방문간호사

※ 긴급 활동 지원: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 자격 결정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 활동 지원 등급

- 인정 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 등급별로 산정되는 기본급여와 사회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로 구성
-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활동지원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 가능
 -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함

자료: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사업 개요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355(천 명) - (예산 규모) 600,877(백만 원)
사업 경과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할 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결의 -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및 시행 -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공약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도입 즉시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99,100원)의 2배 지급”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 지자체 보조 / 보건복지부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지원 기준 및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 장애인
- 2018년도 선정 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월 1,21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월 1,936,000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mypension.jsp>)에서 연금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및 금액

-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70% 수준까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 지급

①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9,960원(2018. 4월~2018. 8월), 250,000원 (2018. 9월~2019. 3월)을 지급

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 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 원(65세 이상은 33만 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7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 원(65세 이상은 4만 원)을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 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본인 신청 시: 중증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 대리 신청 시: 중증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 회사 계좌 통장 사본
 - ※ 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 서류(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사업 개요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지원 인원) 435(천 명)(2017년 기준) - (예산 규모) 199,262(백만 원)
사업 경과	- 1991년: 장려금 제도 신설 - 2002년: 장려금 지급을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조함 - 2003년: 지급 금액을 월 30만~60만 원으로 조정 - 2010년: 의무 고용률을 단계별로 높임 *(2010) 2.3%, (2012) 2.5%, (2014) 2.7% - 2010년: 지급 금액을 월 15만~50만 원으로 경증 장애인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함 - 2015년: 의무 고용률을 단계별로 높임 *(207) 2.9%, (2019) 3.1% - 2016년: 지급 금액을 월 15만~60만 원으로 중증 여성 장애인 지원금을 월 10만 원 인상
시행 방법 및 주체	민간 경상보조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장애인고용과
보조율(%)	국고 보조율 100%

지원 기준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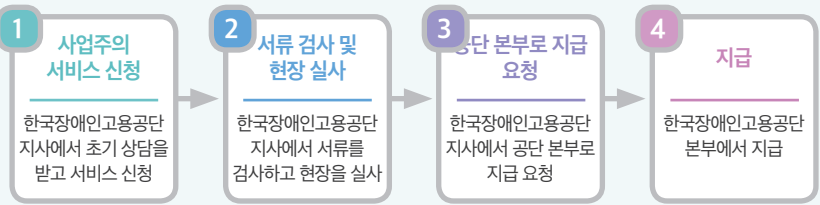
- 월별 상시 근로자의 2.9%(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업 3.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2018년 발생분부터)
 - 지원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월별 상시 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 사업주 2.9%,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업 3.2%)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
 - 경증 남성: 30만 원, 경증 여성: 40만 원
 - 중증 남성: 50만 원, 중증 여성: 60만 원
 - * 6급 장애인은 한시 지원 폐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 절차



사업 개요

목적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축, 전기 자동차 산업 육성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2020년까지 전기 승용차와 전기 버스 25만 대를 공급하고 3000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예산규모) 352,279(백만 원)
사업 경과	- 2009년: 전기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 2015년: 제3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 2011년 최초 사업 추진 이후 2016년까지 총 11,767대를 보급하였으며, 매년 전기차 보급 실적 증가 추세
시행 방법 및 주체	직접 수행 및 지자체 보조/ 환경부(지자체)
담당 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청정대기기획과
보조율(%)	정액 보조 - 전기차: 1,200만 원(정액, 민간 보조 500대 포함) - 전기 버스: 1억 원(정액)

지원 기준 및 대상

- 중앙 행정 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 조건 부여 가능
 - 행정 · 공공 기관, 일반 국민, 산업체(자동차 제작사 등)

-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지원 내용 및 금액

- 전기 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을 감축하고 전기 자동차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보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완속충전기를 지원
 -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급속 충전기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 승용 및 초소형 전기 자동차

구분	제조/판매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만 원)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1,200
		코나(경제형)	1,200
		아이오닉(18, HP)	1,126
		아이오닉(18, PTC)	1,119
		아이오닉 EV(17) N, Q트림	1,127
		아이오닉 EV(17) I트림	1,119
	기아	니로EV(경제형)	1,200
		니로EV(HP)	1,200
		니로EV(PTC)	1,200
		SOUL EV(18, PTC)	1,027
		SOUL EV(18)	1,044
		RAY EV	706
	르노삼성	SM3 Z.E(18)	1,017
		SM3 Z.E(17)	839
	BMW	i3 94ah(18)	1,091
		i3(17)	807
	닛산	LEAF	849
	GM	볼트 EV	1,200
	테슬라	모델S P100D	1,200

구분	제조/판매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만 원)
승용	테슬라	모델S 75D	1,200
		모델S 90D	1,200
		모델S 100D	1,2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50
	대창모터스	DANIGO	450
	세미시스코	D2	450

- 국고보조금: 전기 화물차 및 전기 승합차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만 원)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0.5톤)	1,100
버스	중형	(주)조이롱코리아	E6	6,000
		BYD Auto Industry	BYD eBUS-7	6,000
	대형	현대	일렉시티(256kWh)	10,000
			일렉시티(128kWh)	10,000
		에디슨모터스(주)	이-화이버드(배터리 교환형)	10,000
			이-화이버드(플러그인)	10,000
		(주)우진산전	우진산전 저장 전기 버스	10,000
			아폴로 전기 버스	10,000
		(주)에빅오토 모티브코리아	엔비온	10,000
		대양기술	그린어스	10,000
		피라인	HYPERS	10,000
		자일대우	BS110CN(배터리 교환형)	10,000
		한신자동차	매그넘	10,000
			매그넘9	10,000
			매그넘150	10,000
			ADEONA	10,000
		BYD Auto Industry	BYD eBUS-12	10,000

신청 방법

-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고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자료: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https://www.ev.or.kr>)

사업 개요

목적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석유 절감, 하이브리드 시장 가격 경쟁력 강화
사업 규모 (2018년 예산)	- 2020년까지 124만 대 보급(누적) - (예산 규모) 32,490(백만 원)
사업 경과	- 2009년: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을 결정 -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로 규정
시행 방법 및 주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대행)
담당 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청정대기기획과
보조율(%)	정액보조

지원 기준 및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한 구매자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된 신규 차량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형(1600cc 이상 2000cc 미만), 소형(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g/km 이하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30k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제조사	차종
기아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K5 2.0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엠대우	CHEVROLET VOLT 플러그인
토요타	렉서스 CT200h
	프리우스(PRIUS)
	프리우스(PRIUS V)
	프리우스(PRIUS C)
	프리우스 프라임(PRIUS PRIM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조사	차종
현대	쏘나타 2.0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SONATA PLUG-IN HYBRI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현대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혼다	혼다 ACCORD HYBRID
포드	Lincoln MKZ Hybrid Select / Select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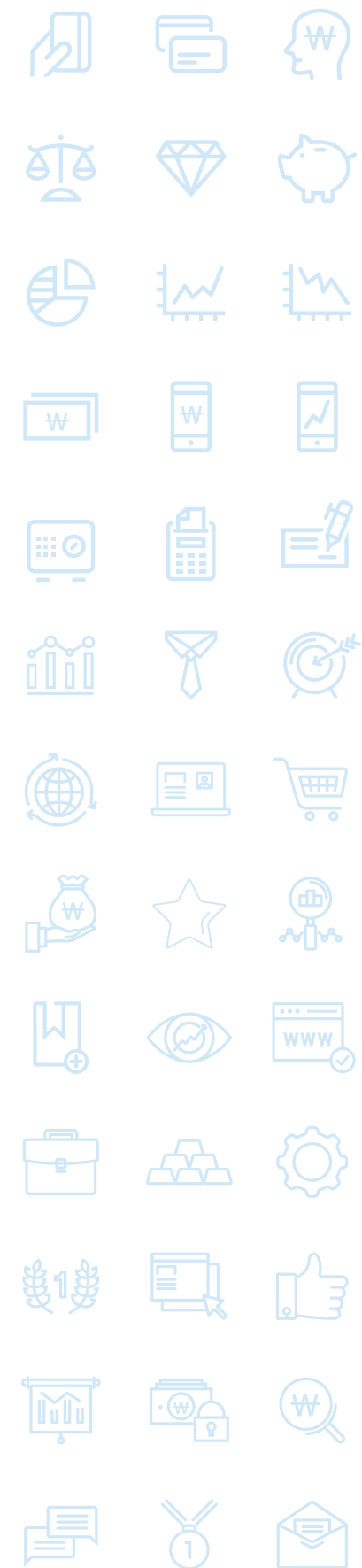
지원 내용 및 금액

- CO₂ 배출량 97g/km, 2,000cc 이하의 하이브리드차는 1대당 50만 원 지원
- CO₂ 배출량 50g/km 이하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30km 이상, 2,000cc 이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대당 5백만 원 지원
- 2019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을 중단
-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시장 경쟁력을 강화
 -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124만 대(누적) 보급을 목표로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18. 12. 27
- 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http://hybridbonus.or.kr>)에서 신청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에 우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매자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종합정보안내센터(1661-0970)로 문의

자료: 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http://hybridbonus.or.kr>)



부록

부록 1: 보조사업 공고	144
부록 2: 보조사업 매뉴얼(예시)	154
부록 3: 보조사업 목록	160

부록 1 ▸ 보조사업 공고

01

보조사업 공모
(예시)

○○○○부 공고 제2018-00XX호

장애인 안전교육 민간보조사업 공모 공고

장애인 안전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체계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교육 민간보조사업」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XX월 XX일
○○○○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3.2배 더 큰 피해를 입음
-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위한 장애유형별 교재 개발 필요

나. 사업의 목적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교재 및 강사지침서 개발
- 교육 교재 및 강사지침서 검증을 위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대상 교육과정 시범 운영

2. 사업개요 및 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인 안전교육
- 사업예산: 100백만 원(민간경상보조)
- 사업기간: 교부결정통보일 ~ 2018. 12. 31.
- 사업세부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e나라도움 및 우편접수	(4월)
↓		
심의·평가 및 선정	▶ 평가심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월 말)
↓		
교부결정	▶ 선정된 사업자에게 교부 결정 통보	(5월)
↓		
교재개발	▶ 현황조사, 강사 지침서 및 교재 개발 등	(5~10월)
↓		
교육운영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모집,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지침서 및 교재 보완 수정 등	(10~11월)
↓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 교재개발 및 교육 운영 실적 제출	(12월)
↓		
실적 평가	▶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12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및 정산	▶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	(12월)
↓		
완료보고서 평가	▶ 보고서 평가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	(12월)

* 사업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내용

- 국내·외 장애인 안전교육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장애인 안전교육 가이드 라인 개발 및 개선 방안 도출
 - 2대 안전분야에 대한 장애 유형별 교육 교재 및 지침서 개발
 - (안전분야)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 (교육대상) 장애인 강사 및 장애인·보호자(가족, 활동보조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시행규칙 별표3의 교육과정 이수자

- (강사 지침서) 교육 지도방법, 교육 과정, 평가방법 등
- (교육 교재) 학습목표, 내용 등 정의
- (개발방법) 장애인, 보호자 및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 등
- 장애인 안전교육과정 시범운영
 - (교육분야)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KASEM 기반 세부영역 선택
 - (교육대상) 지체·시각·청각장애인 및 보호자(가족, 활동보조인)
 - (교육인원) 240여명(총 8회, 과정당 30명 이내)
 - (교육시간) 3시간 내외(과정당)
 - (교육결과 조치) 만족도 조사 설문(사전 및 사후조사), 강사 지침서 및 교육 교재 보완 등

3.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 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제외대상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4. 선정계획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 심의·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사업선정 평가기준 붙임 참조
- 결과발표: 개별통보

5. 신청방법

- 제출기한: 2018년 XX월 XX일(목요일), XX시 기준
 - * 2개 기관미만 신청 시 재공고(10일)
- 제출서류
 - 장애인 안전교육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5부
 -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부(자유서식: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제출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우편) (전자파일 제출: XXXX@korea.kr)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수(www.gosims.go.kr)
 - 우편접수: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XXXX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장애인 안전교육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기재 착오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제안자 책임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담당자: ○○○○부 ○○○○과 XXX 주무관
- 연락처: 044-XXX-XXXX, 전자우편(XXXX@korea.kr)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일반)

수신: ○○○○시장(보조사업자)

1. 「재정비촉진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입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재정비촉진사업지원

□ 보조사업자: ○○○○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09 - 계속

○ 사업규모

- XX 재정비촉진지구: 도로(125,581㎡), 공원(47,418㎡)

- XX 재정비촉진지구: 도로(31,278㎡), 공원(10,0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소 계	312,462	31,247	14,768	-	266,447
XX지구 재정비촉진사업	280,586	28,059	7,600	-	244,927
XX지구 재정비촉진사업	31,876	3,188	7,168	-	21,520

○ 보조비율: 국고 10%

○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 보조

□ 교 부 목 적: 재정비촉진지구내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도로, 공원, 주차장)를 촉진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예산과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8	1000	1036	303	330-03
사회복지	주택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주거환경 개선지원	재정비촉진 사업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 부액	교부잔액	비고
소 계	10,852	-	10,852	5,692	5,160	
상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10,319	-	10,319	5,159	5,160	
중화지구 재정비촉진사업	533	-	533	533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입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XX년 XX월 XX 일

○○○○○장관

보조금 교부조건(공통사항)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재정비축진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0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업명:

- 주 최:

- 주 관:

◎ 사업기간/장소:

◎ 사업내용:

◎ 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 자비 , 기타)

제출일자: 년 월 일

단체명:

직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대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명	종교 문화 지원
단위사업명	종교 문화 활동 및 보존 지원
세부사업명	종교 문화 활동 지원
보조사업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㉓)	지자체부담금(㉔)	자기부담금(㉕)	합 계 (㉓+㉔+㉕)	보조금비율 (㉓=㉓÷㉓)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㉑)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㉑=㉑+㉑)	수익금		
	전기 이월액(㉒)	집행액 (㉑)		발생액 (㉑)	반환액 (㉑)	미반환액 (㉑=㉑-㉑)

당기분집행 잔액 (㉑=㉑-㉑)	전기 이월잔액 (㉑=㉑-㉑)	집행잔액 (㉑=㉑+㉑)	발생이자 (㉑)	차기 이월액(㉑)	반환대상액 (㉑= ㉑+㉑+㉑-㉑)	보조금 반환액 (㉑=㉑×㉑)	자기부담금 반환액 (㉑=㉑-㉑)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홍길동	1,000,000	20x1.2월분 급여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소계			xxx,xxx	
.....					
합 계				x,xxx,xxx	

※ 정산서 첨부물

-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 ② 실적보고서 1부
-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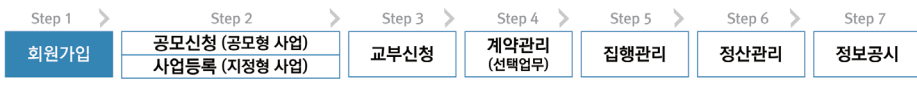
부록 2 ▶ 보조사업 매뉴얼(예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보조사업 매뉴얼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의 사용자 매뉴얼 항목을 참고

- 회원관리, 사업수행관리, 교부신청, 계약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등 여러 매뉴얼 중 부록 2에서는 회원가입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예시로 설명
- 그 외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자 교육 교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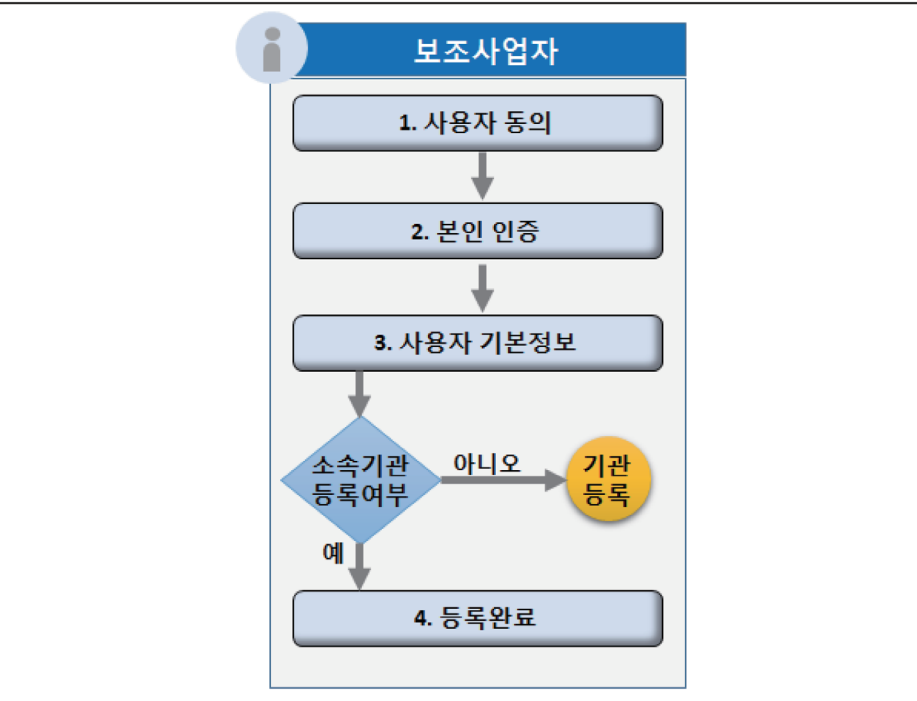
I 회원가입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 회원가입 업무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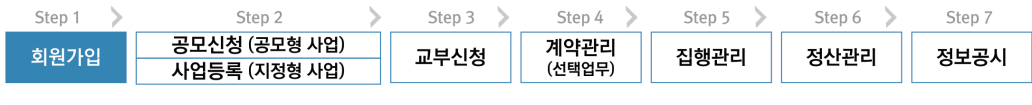
이전업무 e나라도움 포털(www.gosims.go.kr) 접속



다음업무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I 회원가입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1. 사용자 등록

화면경로 e나라도움 포털(www.gosims.go.kr)



기능 설명

- 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한다
- ② 사용자는 [통합설치프로그램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보안', '키보드 보안', '문서보안' 등 3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반복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표시가 되면 보안프로그램을 삭제 후 개별 설치한다.

I 회원가입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Step 7
회원가입	공모신청 (공모형 사업) 사업등록 (지정형 사업)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1. 사용자 등록

화면경로 e나라도움 접속》사용자동의

○ 이용자등록(회원가입) [▶ 매뉴얼 다운로드](#)

STEP 1 이용자 동의	STEP 2 본인 인증	STEP 3 기본 정보	STEP 4 등록 완료
------------------	-----------------	-----------------	-----------------

이용약관에 관한 동의

e나라도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 e나라도움은 사용자 및 보조사업자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원차 및 사용자 관리](#), [자격검증](#), [및 부청수급발지](#)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요

개인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전자문서유통센터](#)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요

※ 만 14세 미만 고객은 회원(이용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의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

다음

기능 설명

- ① '이용약관에 관한 동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에 모두 동의한다.
 ②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탭으로 이동한다.

TIP

I 회원가입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회원가입	공모신청 (공모형 사업) 사업등록 (지정형 사업)	교부신청	계약관리 (선택업무)	집행관리	정산관리	정보공시

1. 사용자 등록

화면경로 e나라도움 접속》사용자동의》본인인증

● 이용자등록(회원가입) [+ 매뉴얼 다운로드](#)

STEP 1 이용자 동의	STEP 2 본인 인증	STEP 3 기본 정보	STEP 4 등록 완료
------------------	------------------------	-----------------	-----------------

인증 방법 선택

☒ 휴대폰 인증
 ☐ 공공 아이핀 인증

※ 공공아이핀 및 행정안전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 (www.gpin.go.kr)에서 발급된 민간아이핀도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이름

- 본인 인증 과정 중 주민 등록 번호를 요하는 과정이며, 입력된 주민 등록 번호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 수집되지 않습니다.
주민 등록법에 따라 타인의 주민 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 등록법 제 37조(벌칙)

본인 인증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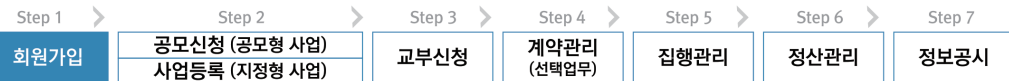
기능 설명

- ① 사용자는 '휴대폰 인증', '공공아이핀 인증' 중에 하나의 인증방법을 선택한다.
- ② 인증방법을 선택한 후 '이름'을 입력한다.
- ③ [본인 인증] 버튼을 클릭한다
- ④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이용자 기본정보] 탭으로 이동한다.

TIP

I 회원가입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1. 사용자 등록

화면경로 e나라도움 접속> 사용자동의> 기본정보

○ 사용자등록(회원가입) [소매뉴얼 다운로드](#)

STEP 1 사용자 동의 | STEP 2 본인 인증 | **STEP 3 기본 정보** | STEP 4 등록 완료

사용자(회원) 정보등록

• 유형	☐ 민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공공 기관 및 단체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금융 관련 기관	1
• 소속기관	* 소속 기관에 없는 경우 해당 가입 후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에서 소속 기관 등록 절차에 따라서 소속 기관 등록 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부서(기관코드)	* 행정 표준 코드가 없는 경우 "민간 기관(00000000)"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	○○○	2
• 사용자 아이디	중복 확인 > 영문, 숫자 조합으로 6 ~ 20자 이내여 합니다.	
• 비밀번호	영문, 숫자, 특수 문자 조합으로 9 ~ 12자 이내여 합니다.	
•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위해 재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기관 팩스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보안문자 입력		
보안문자		
보안문자 입력		

3

다음 초기화

기능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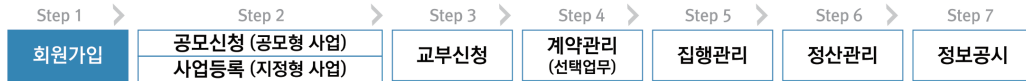
- ① ② 사용자 정보등록 항목의 '사용조직 구분'을 사용자의 기관유형에 맞게 선택한다.
- ② '소속기관' 및 '소속부서(기관코드)'를 선택하고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 필수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한다.
- ③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다만, 소속기관 정보를 생략한 경우 회원가입 완료 후 소속기관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한다.

TIP

✓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한 경우 휴대폰전화번호는 본인인증 한 휴대전화번호로 자동 등록된다.

I 회원가입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1. 사용자 등록

화면경로 e나라도움 접속> 사용자동의> 기본정보> 등록완료

○ 사용자등록(회원가입) [소매뉴얼 다운로드](#)

STEP 1 사용자 동의 | STEP 2 본인 인증 | STEP 2 기본 정보 | **STEP 4 등록 완료**

회원(사용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 조직 및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 후 "조직 및 부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화면경로)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에서 조직탭

1

로그인

기능 설명

- ①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TIP

✓ 소속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 조직 탭에서 등록한다.

보조사업 목록(중앙관서 세부 사업 기준)*

중앙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보조사업명과 지원 규모를 게시

• 국가가 어떤 보조사업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단위: 억 원)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국회	103.8
헌정회 지원	70.3
의회 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	19.7
입법 정책 네트워크 단체 지원	13.3
의원 외교 활동	0.5
대법원	301.2
가족관계등록 사무	205.0
사법 행정의 효율성 증진	55.6
법률 구조 단체 사업 지원	32.6
재판 일반 경비 지원	4.9
사실심 충실화	1.5
법관 등 연수 및 국제 협력	1.2
조정 제도 지원	0.5
헌법재판소	1.0
재판 활동 운영 지원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70.7
정당 보조금	891.7
한국 선거 제도 해외 전파(ODA)	79.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2
국회 ·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5.0
공공 기관 갈등 관리	1.2
법무부	1611.7
법률구조	502.6
갱생 보호 활동	281.1
성폭력 피해자 지원	268.7

* 보조사업의 담당 부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의 관리 코드
순으로 정렬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92.6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106.5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61.1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법제 선진화	36.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3.4
소년원 생수용	32.7
검찰청 시설 운영	19.8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6.4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	14.2
외국인 사회 통합 지원	12.2
교도소 행정 지원	12.1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	11.8
진술 조력인 양성 및 배치	5.2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4.2
연수원 시설 관리 및 교육 시설 장비 현대화	0.3
국방부	1024.3
BTL 정부 지급금	617.3
국방광대역통합방(BcN) 정부 지급금(정보화)(민자)	109.6
일반 지원 시설	104.8
전쟁기념사업회	93.0
취업 활동 지원	73.2
자기 계발 교육	25.6
복지 시설 운영	0.8
고용노동부	53682.3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29293.7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일반)	3779.6
전직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3368.1
청년내일채움공제	3316.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2841.5
고용 창출 장려금	2638.1
장애인 고용 장려금	1992.6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081.8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생활)	726.1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673.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666.4
직장 어린이집 지원	498.3
고용 안정 장려금	386.0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277.4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268.3
중·장년층 취업 지원	248.0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41.4
사회적기업 육성	212.8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114.3
기능 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	94.7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90.0
노사발전재단 지원	88.9
사회 공헌 활동 지원	78.1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73.8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지원금	71.0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BTL 정부 지급금)	65.1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	64.4
고용보험 적용 징수 위탁 사무 대행 지원	63.1
합리적 노사 관계 지원	53.8
근로 복지 기금 지원	46.5
해외 취업 지원	44.5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35.1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28.1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17.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6.3
제주고용센터 업무 지원	16.1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지특)	14.4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 분야 선도 고졸 인력 양성 사업	12.8
제주노동위원회 지원	1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 지원(BTL 정부 지급금)	9.3
직업 안정 기관 운영	9.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 개발 지원	8.7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8.5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세종)	8.1
고용 평등 환경 개선 지원	7.6
고용 유지 지원금	6.3
취약 계층 취업 촉진	5.8
건설 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	4.5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2.9
자치단체 직업 능력 개발 지원(제주)	2.2
실업급여 운영 기타 경비	0.8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운영	0.1
고용 안정 사업 운영	0.0
통일부	7633.5
구호 지원	3524.4
경험 기반(무상)	2464.8
민생 협력 지원	1075.0
개성공단 기반 조성	160.2
사회 문화 교류 지원	129.4
이산가족 교류 지원	119.4
북한 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	95.9
학교 통일교육 강화	23.1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22.0
북한 이탈주민 교육훈련	8.3
국내 통일 기반 조성	7.6
남북 피해자 문제 해결 지원	1.5
남북피해기념관 운영	1.0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	1.0
국가보훈처	1679.0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277.2
보훈 대상자 교육비 지원(수업료 면제)	273.9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217.2
보훈 단체 운영	179.0
인천보훈병원 건립	122.9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교통 시설 이용 지원	106.3
재향군인회 지원	93.1
기념관 관리 운영	58.0
참전 단체 지원	54.2
지방 보훈회관 건립	41.3
현충 시설 관리	30.9
보훈 단체 선양 활동 등	30.1
고엽제 단체 등 지원	25.6
현충 시설 건립	21.1
종합 재활 체육 시설 관리 · 운영	19.2
제주 보훈 업무 지원	19.0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	16.6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6.5
중상이자 편의 시설 공급	12.8
제대 군인 사회 복귀 지원	12.6
국가유공자 등 노후 복지 지원	8.8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	8.4
보훈 기념행사	7.5
참전 유공자 지원	7.1
의료 장비 현대화	5.4
보훈 정신 계승발전	4.0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3.0
국제 보훈 교류 협력 사업	2.2
학술 회의 지원	2.2
호국보훈의 달 행사	2.2
독립 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홍보	0.4
국가유공자 등 위로 · 격려	0.4
산림청	10431.2
산림 휴양 녹색 공간 조성(생활)	1678.4
숲 가꾸기	1440.9
사방 사업	1337.8
산림 병해충 방제	917.8
조림	904.6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임도 시설(국유림 제외, 생활)	829.9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594.0
산림 재해 일자리	518.0
산림 재해 대책비	282.5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29.2
산림 복지 활성화 사업	216.0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208.9
산림 경영 지도	186.1
산림 경영 자원 육성(생활)	167.6
목재 이용 및 산업 육성	132.7
산림 복원	122.8
산림 서비스 도우미	115.8
산불 방지 대책	86.1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74.9
임산물 수출 촉진	66.8
지진 및 해일 대응	44.8
임업 기능인 양성	42.6
산림바이오휴양밸리 조성(충북)	37.0
산림 휴양 녹색 공간 조성(제주)	35.4
사회 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	21.8
생활림 조성 관리	20.5
산림 교육 치유 활성화	17.7
산림 정책 개발	14.6
묘목 생산	13.4
국제 산림 협력	12.4
목재 생산 · 품질 관리	9.9
산림 탄소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8.5
임도 시설(국유림 제외, 제주)	7.0
산림 경영 자원 육성(제주)	6.4
산림 공간 정보 기반 조성	6.3
임도 시설(국유림 제외, 세종)	6.2
산림 휴양 등산 증진	6.0
국제 산림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5.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산림 경영 계획 작성	3.7
산림 휴양 녹색 공간 조성(세종)	1.4
농촌진흥청	1791.5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보조, 생활)	576.2
신기술 보급 사업(보조)	384.9
지역 농업 연구 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R&D, 보조, 경제)	194.1
농업 전문 인력 양성(보조)	128.2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 보급(보조, 경제)	109.8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보조)	79.0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보조)	57.9
농가 경영 개선 지원(보조)	56.3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보조, 경제)	40.5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보조, 제주)	40.4
농업 기계 안전교육 사업(보조)	27.6
농작업 재해 예방(보조)	21.3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보조)	17.9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보조)	14.4
지역 농업 연구 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R&D, 보조, 제주)	12.2
청사 확보 및 시설 개선	9.4
지역 농업 기술 정보화 지원(정보화, 보조)	8.1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보조, 제주)	8.0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보조, 세종)	4.5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 보급(보조, 제주)	1.1
특허청	612.2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166.2
지식재산 창출 지원	131.3
발명교육 활성화	88.9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60.9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55.9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47.0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46.9
여성 발명 진흥	15.2
환경부	44188.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하수관로 정비	6878.3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생활)	3768.7
하수처리장 확충	3361.9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3320.4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972.6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942.7
대기 개선 추진 대책	1968.0
환경 기초 시설 운영	1539.8
도시 침수 대응	1446.3
생태 하천 복원 사업(생활)	1435.6
환경 기초 시설 설치	1296.1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1249.8
노후 상수도 정비(생활)	993.9
관리청별 주민 지원	909.7
환경 기초 시설 운영	826.9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783.4
공공 폐수 처리 시설	766.1
환경 기초 시설 설치	710.4
비점오염 저감 사업	574.4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생활)	547.4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541.9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61.5
관리청별 주민 지원	380.9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	352.5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	341.0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315.0
하수도 용자 원리금 상환	202.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93.0
하수관로 정비(세종)	188.4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	185.9
친환경 청정 사업 지원	172.4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	168.8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149.1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오염 총량 관리 사업	133.5
국토 생태 네트워크 구축	129.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107.0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세종)	94.7
생태 하천 복원 사업	93.8
노후 상수도 정비(제주)	90.0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84.3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84.3
재활용 시설 설치	70.1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66.8
생태 휴식 공간 확대	64.1
생물자원 보전 종합 대책	63.1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61.4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 기반 구축 지원	55.4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54.0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53.4
상·하류 협력 지원 사업	52.4
오염 총량 관리	52.3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51.5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51.4
환경 보건 기반 강화 협력	39.4
농촌 폐비닐 처리 사업	39.1
수질 보전 활동 지원	38.6
비점오염 저감 사업	38.0
생태 관광자원 이용 기반	35.5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세종)	31.9
습지 보전 관리	30.5
환경교육 강화	30.4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제주)	27.5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7.0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 사업	26.7
환경 기초 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26.3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25.7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정수 비용 지원	23.7
자원 순환 촉진 지원	22.5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22.2
생태 하천 복원 사업	21.9
위해 우려 매립 시설 오염 확산 방지 및 안정화	19.3
지하수 수질 보전 대책	16.8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사업(R&D)	15.0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5.0
분리배출 취약 지역 배출 환경 개선 사업	14.3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4.3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구축	10.7
퇴적물 준설	10.4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9.2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 조사	8.4
친환경 제품 보급 촉진 및 환경 표지 제도 운영	8.0
석면 건강 영향 조사	6.9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6.6
수질 보전 활동 지원	6.3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6.2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운영 지원	5.7
낙동강 발원지 물길 복원 사업	5.7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관리	5.6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5.3
민간자원 순환 활동 촉진	5.2
공공 구역 녹조 발생 대응	5.0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및 특정 도서 관리	4.9
생활공해 관리	4.8
자연 보전 단체	4.0
운영 경비	2.3
제주 환경 업무 지원(제주)	1.7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1.6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	1.5
생태 하천 복원 사업(세종)	1.5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환경오염 감시 제도 운영	0.8
수질 자동 측정 감시 장치 설치	0.8
경찰청	598.9
아동안전지킴이	421.0
경찰 복지 증진	133.0
제주자치 경찰 인력 지원	40.3
경찰관서 직장 보육 시설 운영(민자)	4.6
공정거래위원회	12.6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1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4
지역 협의회 활동 추진	65.3
자문위원 역량 강화	14.2
문화재청	4574.1
문화재 보수·정비(총액 사업, 보조)	2950.6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272.0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보조)	235.5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보조)	213.5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	177.4
문화유산 활용 진흥	121.7
문화재 돌봄 사업	121.1
무형문화재 보호	69.3
국외 문화 재환수 및 활용	50.0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40.6
한국문화재재단 지원	38.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34.0
불교문화재 연구 시설 건립	33.0
무형유산원 운영	29.8
소규모·긴급 매장 문화재 조사 지원	29.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28.3
고도 보존 및 육성	25.2
일반 문화재 조사·연구	21.1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 활성화	17.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5.3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 재조사	14.0
유형문화재 관리	10.5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 단체 지원	10.2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5.0
조선 왕릉 보존·관리	4.4
국유문화재 관리	2.1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1.5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1.0
문화재 예방 관리 강화	0.8
궁능유적 관리 수입 대체 경비	0.8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 단체 공동 협력	2.0
방위사업청	69.2
방위 산업 수출 지원	42.9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지원	22.3
방산 기술 보호	3.1
국제 방산 협력 지원	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2.0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00.0
자족 기능 유지 지원	12.0
기획재정부	4168.2
지방자치단체 지원	1086.0
제주도 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원	954.5
산림 환경 기능 증진 자금 지원	46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392.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356.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89.0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91.3
입양 아동 가족 지원	188.0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108.1
아동 복지 시설 기능 보강	65.2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28.3
국제금융센터 보조	20.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아동 복지 시설 아동 치료, 재활 지원 사업	10.3
소비자물가 관리	9.2
통상 연계형 경험 사업	6.0
문화체육관광부	33709.7
관광자원 개발(생활)	2547.9
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1691.1
주최 단체 지원	1274.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43.8
체육 진흥 시설 지원(생활)	1236.4
3대 문화권 생태 관광 기반 조성(경제발전)	1197.3
소외 계층 문화 역량 강화	1158.3
우수 선수 양성 지원	847.3
문화예술 단체 운영 지원	770.3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753.3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684.1
한국관광공사 운영 지원	665.3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647.0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637.5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86.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57.7
게임 산업 육성	553.8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506.1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434.2
종교 문화 시설 건립	404.3
전통문화 체험 지원	353.9
전국(소년)체전 지원	344.0
국제 대회 국내 개최 지원	335.1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334.8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334.1
회원 종목 단체 및 지회 지원	310.7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 지원	306.3
출판 산업 육성	292.3
예술 창작 지원	276.5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274.6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273.7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69.7
전통 종교 문화유산 보존	269.3
스포츠 산업 활성화지원	264.8
한국 관광 해외 광고	257.4
한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250.0
기업 도시 진입 도로 지원(경제 발전)	250.0
MICE 산업 육성 지원	249.8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244.1
핵심 관광지 육성	239.5
올림픽공원 운영 지원	239.4
생활 체육 정보 제공 및 종목 보급	239.3
문화 콘텐츠 국제 협력 및 수출 기반 조성	229.3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227.1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20.6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210.7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96.0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183.3
저작권 보호 활동 활성화	180.8
국민 문화 활동 지원	175.4
지역 문화 행사 지원(생활)	174.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174.3
태권도 진흥	173.9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164.3
지역 문화 진흥	157.1
기초 생활 체육 저변 확산 지원	153.0
한국 관광 콘텐츠 활성화	150.0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146.6
페랑 지역 관광 상품 개발	138.6
종교 문화 활동 지원	127.3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21.0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118.9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118.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7.3
관광 레저 기반 구축	117.3
예술 인력 육성	115.8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4.2
공연 예술 진흥 기반 조성	113.7
장애인 체육 단체 운영 지원	113.7
인문 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09.8
한국 동계 스포츠 육성	106.1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104.8
영화 제작 지원	104.7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경제 발전)	101.3
지역 콘텐츠 산업 균형 발전 지원	1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 지원	100.3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98.0
도핑 방지활동 지원	97.7
국민 체력 인증	97.3
지방 문화 산업 기반 조성(생활)	97.0
국제 체육 교류 지원	95.4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94.4
중부 내륙권 관광 개발(경제 발전)	93.6
예술의전당 지원	90.0
영화 유통 지원	89.4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88.8
관광자원 개발(제주)	88.0
한국형 생태 녹색 관광 육성	87.1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경제 발전)	86.0
공공 디자인 및 공간 문화 진흥	81.4
전통 스토리 계승 및 활용	77.6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74.4
스마트 관광 활성화	74.1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	73.6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73.2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	73.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R&D)	72.9
지역 문화예술 지원	72.3
저작권 문화 기반 조성	70.6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 자원화	68.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자체, 사회 서비스)	67.4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66.6
함께누리 지원	65.3
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63.6
미술 진흥 기반 구축	63.4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62.0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61.8
박물관 진흥 지원	59.8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ODA)	57.8
문화관광축제 지원(보조)	57.4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보조)	55.7
한스타일 육성 지원	53.5
스포츠 산업 기술 기반 조성(R&D)	52.8
언론 공익 사업	51.4
관광 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50.8
전통문화 진흥	49.1
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48.9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46.6
공예 관광 산업 육성	45.1
도시 관광 및 산업 관광 활성화	44.9
지역 신문 발전 지원	43.9
국학 진흥 정책 기반 조성	43.8
스포츠 과학 지원	40.5
산업 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생활)	39.0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37.9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36.3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33.9
예술 창작 활동 지원	32.6
뉴스 유통 구조 개선	32.6
문화 여가 정책 개발 및 진흥	31.4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문화예술 해외 교류	31.2
예술의 산업화 추진	30.4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29.6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8.6
첨단 영화 기술 육성	26.1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6.1
융복합 관광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2.1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1.9
국제 문화 정책 지원	21.1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0.5
미디어 산업 기반 구축	19.8
체육 진흥 시설 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19.8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 지원	19.5
체육인 복지 사업	17.4
영화 정책 지원	17.1
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	16.5
문화 산업 정책 개발 및 평가	15.9
국가 이미지 홍보	15.2
체육 인재 육성	15.0
정책 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14.4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4.4
저개발국 관광 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연수(ODA)	14.3
문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	13.3
문화 정보 다부처 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정보화)	13.2
광고 산업 활성화	12.6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 구축(정보화)	12.4
제주 관광 진흥 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0.9
지방 문화 산업 기반 조성(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0
뉴스 미디어 진흥	9.9
저작권 정보 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9.3
개도국 문화 자원 역량 강화(ODA)	9.2
산업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세종)	8.7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국가 도서관 지식 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	8.1
아시아 문화 역량 강화 지원 사업(ODA)	6.9
국립도서관 운영	6.5
문화 정보 자원 안전 관리 체계 구축(정보화)	6.4
장애 체육인 복지 사업	6.0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ODA)	5.7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5.1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경제 발전)	3.0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0
문화예술 ODA	2.0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2.0
관광 자원 개발(세종)	1.5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0.9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0.2
보건복지부	308221.8
기초연금 지급	91211.8
의료급여 경상 보조	53459.9
생계급여	37197.7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574.7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10891.4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9877.4
아동수당 지급	7078.4
장애인 활동 지원	6901.7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6348.1
장애인연금	6005.0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4708.1
자활 사업	3753.6
국가 예방접종 실시	3361.1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2292.9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보조)(생활)	2270.0
지역아동센터 지원	1585.1
치매 관리 체계 구축	1453.6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1176.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사회 복무 제도 지원	1121.2
긴급 복지	1111.6
노인 돌봄 서비스	985.7
장애인 일자리 지원	957.2
장애 아동 가족 지원	880.3
노인 요양 시설 확충	859.0
양곡 할인	833.5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27.4
정신 요양 시설 운영 지원	788.7
장애수당(기초)	749.9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698.0
어린이집 확충	683.3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635.7
공공형 어린이집	609.9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	597.8
중증 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	595.9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593.8
장애수당(차상위 등)	547.8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경제)	423.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422.8
노인 단체 지원	419.8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388.2
노숙인 등 복지 지원	360.0
양로 시설 운영 지원	344.8
국가 암 관리	335.3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농특)	333.0
희귀 질환자 지원	306.3
응급 의료 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281.3
국가 결핵 예방	271.9
장애 등급 심사 제도 운영	268.6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정보화)	268.3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256.9
해산장제급여	250.4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장애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236.8
장애인 의료비 지원	230.7
암 환자 지원 사업	228.0
119 구급대 지원	215.1
장사 시설 설치	206.6
한의학 산업 육성	204.4
아동 발달 지원 계좌(보조)	195.7
노인 건강 관리	193.6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189.4
만성 질환 예방 관리	186.0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 분유 지원	177.2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157.2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운영 지원	153.7
모자 보건 사업	127.6
영 · 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124.5
근로 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22.3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122.1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지원	117.6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110.5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09.8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04.2
시간제 보육 지원	97.2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97.1
해외 환자 유치 지원	95.2
독거노인 ·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93.8
장기 · 조직기증원 운영	93.5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89.3
민간 사회 복지 자원 육성 지원	84.8
발달장애인 지원	84.2
제약 산업 육성 지원	84.2
어린이집 평가 인증 운영	8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82.0
재활병원 건립	80.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76.2
의료 기관 안전 및 질 관리	76.0
노인 보호 전문 기관	76.0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보조)(제주)	75.3
국가 건강검진 사업 운영	73.2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72.8
한약진흥재단 운영 지원	72.5
장애인 단체	71.1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69.4
보건복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정보화)	61.1
감염병 예방 관리	59.2
의료 시스템 수출 지원	59.0
어린이집 기능 보강	58.0
국내 · 외 재난 의료 지원	55.7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3.9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정보화)	51.0
원폭 피해자 진료비 · 장제비등 지원	49.7
보건의료 생물 자원 종합 관리(R&D)	47.9
의료 기관 진료 정보 교류 기반 구축	44.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3.7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42.3
골수 기증 희망자 검사 지원	41.9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41.3
생명윤리 및 안전 관리	40.9
중앙 입양원 및 입양 단체 등 사후 관리 지원	40.0
혈액 안전 관리	36.8
공공 조직 은행 운영	36.8
정신보건시설확충	34.8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32.5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31.4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28.8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28.4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	28.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7.9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27.3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27.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4.6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지원	24.2
통합 의료 연구 지원 사업(R&D)	24.0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3.2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2.7
복지 소외 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원	22.4
신종 감염병 입원 치료 병상 확충 유지	21.6
고령 친화 산업 육성	21.3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설치(BTL 정부지급금)	21.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1.0
제대혈 공공 관리	19.7
의료 관련 감염 관리	19.7
질병 조사 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	18.0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17.6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보조)(세종)	15.8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14.3
응급의료 이송 체계 지원	14.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 · 운영	13.8
의료 정보 기반 구축 및 융합 지원	13.2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3.0
마산병원 병원 관리 · 운영(자본)	12.9
가정위탁 지원 · 운영	12.9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	11.9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1.3
사회복지 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10.6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10.2
국가 손상 · 중독 감시 체계 구축	10.1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10.0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	9.9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정신 의료 기관 평가	9.8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인구교육 추진 지원	9.7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9.4
음주 폐해 예방관리	9.4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	9.3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관리	8.6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8.5
국가보건의료 표준화	8.4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	8.3
다 함께 돌봄 사업	8.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8.0
사회복지사 관리	7.7
공공 보건의료 기관 병문안 문화 개선 지원	7.7
나눔 문화 확산	6.7
장애인 지원관리	6.7
생물 테러 대비 · 대응 역량 강화	6.5
권역 재활병원 공공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6.2
지방 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5.7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운영(정보화)	5.4
지역 복지 사업 평가	5.2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5.0
구강 건강 관리	5.0
혁신형 건강 플랫폼 구축 지원	4.3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및 일자리 운영	4.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4.1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	4.0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3.9
국가 진단의학 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3.6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3.6
아동 정책 조정 및 인권 증진	3.5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지원	3.2
아동 안전사고 예방 사업	3.1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2.9
보건교육 및 지역 보건 사업 관리	2.8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보건의료 정책 개발 지원 등	2.0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관리 활동	1.9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	0.8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비 지원	0.7
검역 관리	0.1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0.0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0.0
076 여성가족부	6376.3
아이 돌봄 지원	1083.8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917.3
청소년 시설 확충(생활)	801.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669.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530.3
청소년 사회 안전망구축	514.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	312.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26.8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196.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8.5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5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76.7
청소년 시설 확충(세종)	56.8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 재활	53.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53.2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지원	52.1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	46.7
취약 · 위기가족 지원	45.6
청소년 활동 지원	40.4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사업	37.3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35.6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	32.0
청소년 건강 지원	30.5
아동 · 여성 안전교육 문화 사업	26.9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26.7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23.3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22.3
청소년 시설 확충(제주)	21.3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20.7
청소년 참여 지원	20.5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19.2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지원	14.3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12.8
미래 여성 인재 양성	9.6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청소년 성 보호 활동 지원	9.0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7.4
양성평등 문화 확산	6.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6.0
여성사전시관	4.0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기반 구축	2.8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1.1
가족 사업 관리 및 연구	1.1
방송통신위원회	177.2
한국방송공사 대외 방송 송출 지원(민간)	87.9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 인프라 개선(민간)	33.3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23.2
방송통신 시장 조사 분석	18.0
방송 재난 관리	11.1
공익 채널 운영 실적 점검 평가(민간)	2.2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정보화, 출연)	1.5
금융위원회	19.9
전문 금융인 양성 과정 설립	10.0
서민 금융 지원 홍보	5.0
금융 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4.9
국민권익위원회	1.7
국제 교류 및 민간 협력	1.7
교육부	2690.8
교육급여	1306.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559.4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6.3
대학 구조 개혁 지원	89.5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구축	80.3
재외 동포 교육 운영 지원	66.8
글로벌 교육 교류 사업(비ODA)	58.7
이러닝 세계화(ODA)	51.1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ODA)	50.2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42.8
고전 문헌 국역 지원(R&D)	37.1
학술 단체 지원(R&D)	36.9
국립대 병원 지원	31.2
특수 외국어교육 진흥 사업	30.2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22.6
미래교육 환경 대비 교육 콘텐츠 진흥 육성	20.1
대학 평가 및 운영	19.6
고등교육 및 대학 재정 정보 분석 시스템 운영	19.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1.3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9.4
전문대학 자율 역량 기반 조성	8.9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8.0
대입 전형 자율화 지원	5.8
인적 자원 개발 정책 추진 활성화	4.1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3.6
법학 전문 대학원 교육 역량 강화	2.0
외교부	827.3
인도적 지원(ODA)	748.0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수입 대체 경비)	56.1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9.3
정책 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8.0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4.0
공공 외교 역량 강화	2.0
농림축산식품부	64478.5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일반 농산어촌 개발	8563.6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지자체)	8090.0
수리 시설 개 · 보수	4600.0
농촌용수 개발	3812.9
배수 개선	2778.0
농업재해보험	2521.5
친환경 농자재 지원	2032.1
발농업 직불제	1931.0
수리 시설 유지 관리	1622.3
농업 기반 정비	1566.8
논타작물 재배 지원(생산 조정제)	1360.0
시도 가축 방역	1298.5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1257.4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 사업	1236.0
폐업 지원	1027.2
피해 보전 직불	1004.8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803.4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713.6
농지 은행 사업 관리비	673.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5.3
축산물 수급 관리	575.3
과수 생산 유통 지원	565.2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509.6
조건 불리 지역 직불	504.0
경영 이양 직불	496.6
유통 개선 사업 운영	491.1
축사 시설 현대화	490.4
가축 위생 방역 지원	480.0
수출 인프라 강화	479.0
농촌용수 관리	472.6
친환경 농업 직불	435.5
가축 개량 지원	423.6
국가 지방 관리 방조제 개 · 보수	408.9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원에 시설 현대화	400.3
살처분보상금	400.0
축산물 품질 관리	397.6
대규모 농업 기반 시설 치수 능력 확대	390.0
농업 · 농촌교육 훈련 지원	380.4
가축 분뇨 처리 지원	369.1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	323.3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314.7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자체)	303.0
말 산업 육성 지원	294.3
농기계 임대	294.0
재해 대책비	270.0
축산 자조금	260.0
비축 지원	240.2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226.7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생활)	209.0
도축 검사 운영	185.1
일반 농산어촌 개발(제주)	181.0
농협 사업 구조 개편 지원	169.6
농산물 생산 유통 조절 지원	168.2
농업 기반 정비(제주)	160.8
국제 농업 협력(ODA)	155.7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47.1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143.7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133.3
식품 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132.3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130.9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	129.2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	128.1
한식 진흥 및 음식 관광 활성화	121.1
한발 대비 용수 개발	121.0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	120.4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119.4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18.6
들녘 경영체 육성	112.2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105.0
발작물 산업 육성	102.0
경관 보전 직불	92.2
종자 산업 기반 구축	91.8
국가 인증 농식품 지원	89.3
취약 농가 인력 지원	85.9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84.2
농산물 마케팅 지원	82.5
농지 개량시설 장기채 상환	81.5
사업 관리비	77.3
자조금 지원	76.3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74.4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	73.6
초등 돌봄교실 과일 · 간식 지원 시범 사업	72.0
전통 발효식품 육성	70.3
농업 정책보험금응원 기관 운영비 지원	65.8
쌀 소비 활성화	64.0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지자체)	62.1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58.8
농업 정보 이용 활성화(정보화)	58.3
원원종 및 원종 생산	56.9
대단위 농업 개발(농지)	56.8
중소 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	55.4
농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49.7
일반 농산어촌 개발(세종)	48.9
농지 이용 관리 지원	43.2
농촌형 교통 모델(생활)	41.0
품종 심사 및 재배 시험	38.8
축산물 유통 정보 실용화	36.5
농산물 유통 소비 정보 조사	34.4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33.6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제주)	33.4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0.0
검역 해소 품목 및 대중국 전략 품목 육성 지원	3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	29.5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	29.0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세종)	28.0
동식물 자원 산업화 지원	27.4
과원 규모화 사업 관리비	27.4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	26.4
국가 산채 클러스터 조성	25.9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제주)	25.8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정보화)	24.8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24.0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24.0
농촌 고용 인력 지원	24.0
조성 토지 관리 처분비	23.2
농식품 유통 교육훈련	22.9
농지 종합 정보화(정보화)	22.1
토양 개량제 사업(제주)	20.0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0.0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18.0
스마트 농정 통계 체계 구축	18.0
축산물 HACCP 지원	16.5
할랄 식품 산업 육성	16.3
농식품 ICT 융 · 복합 촉진(정보화)	16.3
농촌 기반 기술 연구(R&D)	15.3
푸드 서비스 선진화	14.5
행정 정보화(정보화)	13.6
농산물 안전성 조사	12.6
정부 양곡 관리비	11.6
노지 채소 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11.0
지역 단위 푸드 플랜 구축 지원	10.5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10.4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농산물 원산지 관리	10.3
토양 복원 기술 적용 기반 구축	10.0
농업 기반 정비(세종)	10.0
도매 유통 활성화 지원	9.9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9.7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9.2
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제고	8.6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8.6
기후변화 실태 조사	8.3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	7.4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7.2
농업 협상 대응	7.2
국제기구 분담금	5.9
수입 양곡대	4.0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3.8
농촌 개발 시험 연구(R&D)	3.5
농업 자금 이차 보전	3.4
농지 은행 인적 역량 강화 사업	3.3
A팜쇼	3.0
바이오 양잠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2.5
축산식품 안전 관리	2.0
한국농수산대학 교육·운영(책임 운영)	2.0
농지 제도 개선 홍보	1.8
관세 할당 물량 수입 관리비	1.7
사료 산업 종합 지원(용자)	1.6
산업통상자원부	21179.9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380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02.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900.0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	1230.5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1198.1
일반용 전기 설비 안전 점검	974.5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906.5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831.7
특별 지원 사업(발전소 주변 지역)	786.0
지역 투자 촉진	765.0
수출 지원 기반 활용	645.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638.7
전력효율 향상	460.4
주요 기반 시설 지원	356.4
폐광 대책비	296.0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286.6
기타 기반 시설 지원	254.7
섬유 패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252.7
로봇랜드 조성 사업	213.4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197.6
지역 에너지 절약	191.7
지역 투자 촉진(세종)	180.0
산업통상 협력 개발 지원(ODA)	136.7
투자 유치 기반 조성	134.5
에너지 산업 협력 개발 지원 사업(ODA)	130.2
석유 품질 관리 사업 지원	122.1
일반 광업 육성 지원	117.7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115.0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 지원	97.0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96.7
중견기업 수출 지원 기반 활용	78.0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77.8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운영	73.0
양자 산업 협력	70.9
대구 국가 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 구축	62.0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57.0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기반 구축	55.1
기후변화 협약 대응	52.2
전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41.1
유통 물류 기반 조성	40.8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0.3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40.0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	37.8
구역청 투자 유치 지원	36.0
석유 유통 구조 개선	35.9
국제 표준 활동 지원	35.9
기타 지원(발전소 주변 지역)	35.1
에너지 인력 양성(에텍)(R&D)	33.0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2
지역 생활권 발전 협의체 지원	28.8
생활 산업 경쟁력 강화	28.7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28.6
지역 전문가 양성 및 공급	26.3
해외 자원 개발 조사	25.7
안전 제도 기반 조성	22.5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21.7
전력 산업 홍보	21.0
국가 산업단지 관리 위탁 보조	20.7
신기술 제품 인증	19.5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	18.8
제조 기반 설계 기술 고도화	17.0
사업 운영비	15.5
사업 재편 지원 기반 구축	14.2
전기 시설 안전 관리	14.0
국가 생산성 혁신 기반 구축	13.5
개도국 표준 체계 보급 지원(ODA)	12.8
에너지 진단 보조	12.7
해외 진출 기반 구축	12.6
산업 기술 보안 기반 구축	12.2
광산물 비축 자산 관리 보조	11.2
세계엑스포 참가 지원	11.1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10.0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9.8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국가 인증 제도 혁신 기반 구축	8.8
제품 시장 감시 역량 강화	8.8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8.4
무연탄 발전 지원	8.0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생태계 조성	7.5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7.2
법정 계량 선진화 기반 구축	6.6
대중소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6.0
산업 통계 및 동향 분석 기반 사업	5.6
공장 설립 정보화 기반 구축(정보화)	5.3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5.0
국제 적합성 평가 기반 구축	4.4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제주)	3.4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	3.3
세계 일류 상품 육성	3.0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세종)	2.0
지식 서비스 기반 구축	1.0
무역 구제 지원 사업	0.8
국가기술표준원 기관 운영	0.7
국토교통부	58667.9
주거 급여 지원	11234.1
지방 하천 정비(생활)	5516.2
PSO 보상	3238.3
민자 철도 운영 지원	3078.5
도시 재생 사업	3032.4
민자 유치 활성화 지원	2583.0
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2550.8
행복주택 출자	2300.7
성장 촉진 지역 개발	2091.0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1571.4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1467.1
국민 임대 출자	1236.8
대중교통 지원	1092.3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별내선 복선 전철	960.0
개발 제한구역 관리	852.4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700.0
전세 임대 경상 보조	678.9
지역 거점 조성 지원	605.0
주차 환경 개선 지원	601.2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595.0
영구 임대 출자	595.0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 지원	570.0
국가 하천 유지 보수	527.5
신분당선(용산-강남)	440.0
도시철도 내진 보강 지원	378.0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372.4
제주 구국도 유지 관리	292.6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240.0
산성터널(금정 측) 도로 건설	235.7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214.5
주택 공시가격 조사	213.5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0.0
울릉도 일주 도로(2) 국지도 건설	200.0
양산도시철도 건설	200.0
안심-하양 복선 전철	180.0
울릉도 일주 국지도 건설	176.6
교통사고 예방 지원	176.3
다사-왜관 광역 도로	175.0
첨단 도로 교통 체계	170.0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167.0
신림선 경전철 건설	162.2
왜관-가산 국지도 건설	155.2
단산-부석사 국지도 건설	152.0
한림-생림 국지도 건설	144.8
일로-몽탄 국지도 건설	143.0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138.4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지적 재조사	137.6
쌍백-봉수 국지도 건설	130.0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123.6
재정비 촉진 사업 지원	121.4
하남선 복선 전철	120.9
지방 하천 정비(제주)	120.6
오남-수동 국가 지원 지방도	119.3
지가 조사	112.1
문동-송정IC 국지도 건설	110.0
광역 BRT 구축	106.4
청도-운문터널 국지도 건설	105.0
덕천동-아시아드	105.0
고덕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102.5
남평-화순 국지도 건설	100.0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100.0
동김해-식만JCT 광역 도로 건설	100.0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100.0
을숙도-장림 혼잡 도로	95.0
공항 소음 대책	92.6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90.8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86.4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 지원	82.8
포항-안동 국지도 건설	80.0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80.0
칠북-북면 국지도 건설	80.0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77.8
천왕-광명 광역 도로	75.4
광주송정-나주시계 광역 도로 건설	74.2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지원	72.7
옥동-농소 도로건 설 1공구	71.7
도계-석정 국가 지원 지방도	70.0
중군-진상 국지도 건설	70.0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69.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동읍-한림 국지도 건설	68.0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	68.0
나진-소라 국지도 건설	64.7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64.2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	61.0
가남-상수 국지도 건설	60.0
법성-홍농 국지도 건설	60.0
월전동-무진로 혼잡 도로	60.0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	60.0
지하 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57.0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56.0
감일-초이 광역 도로 건설	55.3
산성터널(화명 측) 접속 도로 건설	55.2
지방 하천 정비(세종)	54.2
도봉산-옥정 복선 전철	53.0
상원-청하 국지도 건설	50.0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50.0
광주 북부 순환 도로	50.0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50.0
상무지구-첨단 산단 혼잡 도로	50.0
도계-장성 국지도 건설	50.0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50.0
선장-염치 국지도 건설	49.3
효자-상원 국지도 건설	48.0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	47.0
산성터널 민간투자 사업	46.8
북하-도계 국지도 건설	45.0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45.0
실상-만선 국지도 건설	45.0
택시 산업 지원	42.8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40.0
주차 환경 개선 지원(제주)	40.0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40.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아라-회천 구국도 건설	39.0
초정-화명 광역 도로 건설	38.0
공공형 택시 지원(생활)	37.5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37.1
축산항-도곡 국지도 건설	35.0
제주공항 시설 개선	35.0
상개-매암 혼잡 도로	35.0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제주)	34.3
항공 전문 인력 양성	33.6
혁신도시 건설 지원	33.0
울산신답교-경주시계 광역 도로	32.8
전환 교통 지원 사업	32.0
지하철 개통	30.8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시설 지원(선도프로젝트)	30.0
동부간선 광역 도로 건설	30.0
문전교차로 혼잡 도로	30.0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
도청 신도시 진입 도로 건설 지원	29.3
화명동-양산 광역 도로 건설	28.0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 활성화	26.1
광역 BIS 지원(보조)	25.2
매리-양산 국지도 건설	25.0
서대전IC-두계3 광역 도로	24.0
대동-매리 국지도 건설	20.0
용두-담양 혼잡 도로	20.0
포진-문막 국지도 건설	20.0
생림-상동 국지도 건설	20.0
동읍-봉강 국지도 건설	20.0
길상-선원 국지도 건설	20.0
물류 산업 지원	19.7
친환경 물류 지원	18.6
우아-신설 경전철 건설	18.2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SWC 구축 시범 사업	17.6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17.1
태릉-구리 광역 도로 건설	15.0
철도 핵심 인력 양성	13.8
대곡-반곡 국지도 건설	13.0
국토 공간 정보 인력 양성	11.2
재건축 초과이익자본 이전	10.3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 도로 건설	10.0
삼화맨션-과정교차로 혼잡 도로	10.0
환승센터 구축 지원	10.0
수 자원 정책 알리기 및 국제 협력	10.0
식만-사상 혼잡 도로	10.0
주차 환경 개선 지원(세종)	10.0
봉강-무안 국지도 건설	10.0
대전산성-구례 광역 도로 건설	10.0
제주 구국도 건설 지원	9.7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관리비	7.4
인천 서구 거점도-경기 김포 약암리 광역 도로	7.0
지적 관리	6.6
원당-태리 광역 도로	5.0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3.1
고령-성주 국지도 건설	2.0
건설기계임대료채납신고센터 운영	2.0
낙안-상사 국지도 건설	2.0
도계-영월 국지도 건설	2.0
공공형 택시 지원(제주)	1.0
건축 문화 진흥	0.8
임고-조교 국지도 건설	0.7
공공형 택시 지원(세종)	0.5
제주 구국도 공무원 부담금	0.1
해양수산부	10558.4
어업 기반 정비	1205.0
수산 자원 조성 사업 지원	734.7
해양 및 수자원 관리	715.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409.2
인천북항	359.0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309.1
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307.9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272.4
국가 어항(제주)	270.0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예특)	251.9
어업 기반 정비(제주)	238.5
수산 어업 행정 지원	228.7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 관리	211.4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207.8
연근해 어선 감척(지자체)	191.3
제주 일반항 건설	181.7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175.7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생활)	174.8
울산신항	170.0
어업 정보 통신 지원	168.8
낙도 보조 항로 결손 보상금	146.9
화순항	136.9
수산 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133.4
수협 지도 경제 사업 활성화	130.0
부산 공동 어시장 현대화	127.0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지자체)	120.5
해양 사고 예방 활동 지원	108.4
유류 피해 지역 지원	105.0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지자체)	101.9
일반항	101.3
해양 관광 육성	99.7
친환경 어구 보급	94.0
수산물 위생 관리	86.3
목포신항	80.0
항만 시설 유지 보수(제주)	78.8
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제주)	72.7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자율 관리 어업 육성	70.8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68.7
환경 친화형 배합 사료 지원	67.4
국가 필수 선대 제도 운영	61.0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59.4
포항영일만신항	57.9
내수면 자원 조성	57.7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57.4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57.2
수산물 안전 검사 체계 구축(생활)	56.0
천일염 산업 육성	55.3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55.1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54.5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52.7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50.8
재해 대책비	50.0
귀어귀촌 활성화	44.2
수산물 자조금 지원	43.4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42.6
독도 지속 가능 이용 및 관리	40.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유치 지원	39.8
물류 기업 유치 지원	39.6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 지원단지 조성	39.2
수산 산업 창업 투자 지원	37.5
특행 기관 지방 이전 운영 지원	37.3
원양어업 활성화	36.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36.0
해양 보호구역 관리	32.4
전환 교통 지원	30.0
피해 보전 직불금	30.0
평택, 당진항	30.0
어업 협정 이행	29.7
세월호 추모 사업 지원	29.5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어업인 복지 지원	29.2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28.3
해양 정책 및 문화 육성	27.8
항만 시설 유지 보수(비총액)	26.2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	25.0
제주 해양 항만 운영 지원	23.7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22.0
해운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0.3
제주항	19.5
환경 관리 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18.5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18.4
관상어 산업 육성	15.4
해양 산업 클러스터 지원	14.0
수산 장비(임대) 활용(지자체)	14.0
국제 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13.0
연안국과의 협력(ODA)	13.0
연안 관리	13.0
폐업 지원금	12.1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1.4
수산 연구 시설 및 선박 관리(R&D)	11.0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 사업	10.3
낙시 산업 선진화	10.2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 구축	10.0
수산물 안전 검사 체계 구축(제주)	10.0
수산 정보화(정보화)	9.6
수산물 물류 표준화	9.5
어촌 발전 기반 조성 지원	8.4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추진	8.0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6.0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5.4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제주)	5.3
해양 지명 조사 및 알리기	5.0
해양 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복원 사업	5.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해상 안전 국제협 력	5.0
광양항(3단계)	5.0
수산물 공매 납입금 부과 징수 비용	3.9
제주외항(2단계)	3.7
표지 시설	3.2
오염 퇴적물 정화 · 복원	2.8
양식 수산물 전락 품목 육성	1.2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	0.1
수산 금융자금 이차 보전	0.0
식품의약품안전처	890.6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414.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189.9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63.9
HACCP 제도 활성화	48.1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경제)	45.8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	44.9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0.2
화귀 · 필수약품센터 지원	12.2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11.5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	10.0
축산식품 안전 관리	7.0
식중독 예방 및 관리	6.4
국민 영양 안전 관리	4.8
건강 기능식품 관리	4.7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운영	2.6
식품 관리 운영	2.3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제주)	1.4
의료기기 관리 운영	0.4
위생용품 안전 관리	0.2
위해 예방 관리 운영	0.0
새만금개발청	34.1
새만금산업단지 공업 용수도 건설 지원	25.1
새만금 관광 활성화 지원	7.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 조성	2.0
행정안전부	12948.1
재해 위험 지역 정비(보조)	3725.4
소하천 정비(생활)	1997.7
특수 상황 지역 개발	1877.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944.3
우수 저류 시설 설치(보조)	695.5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479.6
재난 대책비(보조)	449.7
지역 공동체 일자리	336.2
접경권 발전 지원	297.1
위험 도로 구조 개선	250.0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	225.0
청사 시설 관리 등 위탁	195.4
풍수해보험	169.0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원금	166.9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 확충	12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113.5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102.1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92.3
서해5도 종합 발전 지원	76.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70.1
소하천 정비(제주)	65.1
소하천 정비(세종)	52.5
정부 혁신 변화 관리 지원	40.0
행정 정보화 지원 및 관리 조정(정보화)	39.9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36.5
재해 위험 지역 정비(세종)	32.7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ODA)	29.0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지원	28.4
제주4 · 3평화재단 지원	25.6
재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25.0
섬 발전 협력 사업 추진	20.0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새마을운동 지원	19.6
국가위임 사무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지원(자본)(정보화)	19.5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18.0
특수 상황 지역 개발(제주)	17.0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13.0
지역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10.0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7.1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6.4
정보화 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5.0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제주)	5.0
재난 구호 지원	4.8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 개선	4.5
국민 안전 의식 선진화	4.3
국가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	4.0
지역 공동체 일자리(제주)	4.0
위험 도로 구조 개선(제주)	3.9
지역 공동체 일자리(세종)	3.1
서민금융복지센터	3.0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보조)	2.9
재난심리회복지원	2.7
지방 회계 결산 제도 연구 개선	2.5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	2.5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	2.4
동원 자원 관리	1.3
지자체 경쟁력 지원	1.0
생활 공감 정책 추진	0.9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운영	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0.5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제주)	0.3
혁신 읍면동 시범 사업 추진	0.0
기록 관리 정책 및 교육	0.0
중소벤처기업부	9253.2
시장 경영 혁신 지원	1671.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수출 지원 기반 활용	1098.8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 기반 조성(지특, 생활 기반)	798.8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610.0
소상공인 성장 지원	526.9
창업 저변 확대	494.2
창업 인프라 지원	490.0
창업 사업화 지원	460.7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420.5
산학 협력 기술·기능 인력 양성	389.9
소공인 특화 지원	340.1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258.3
중소기업 재기 지원	196.5
마케팅 지원 사업	174.7
소상공인 창업 지원	140.0
인력 유입 인프라 조성	138.0
소상공인 재기 지원	127.5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123.0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111.1
중소기업 조사 연구 평가	86.7
기술 혁신 기반 조성	78.6
장애인 기업 육성	78.5
여성 기업 육성	71.9
대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57.2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인프라 구축	47.7
소진기금 기본 경비	40.6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 기반 조성(지특, 제주)	38.4
공공 구매제도 운영	33.3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29.4
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	27.3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20.3
레저 장비 산업 개발 지원	13.3
제주 중소기업 업무 지원	13.2
수출 인큐베이터	11.7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10.4
벤처캐피탈 선진화	10.2
M&A 활성화 지원	7.6
남북 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	2.4
창업 인프라 지원(제주)	2.4
창업 인프라 지원(세종)	1.2
국립 공고(마이스터고) 육성	1.0
소방청	210.9
소방 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	193.4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 행사 지원	9.7
소방 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	4.8
119 시민 수상 구조대 운영(보조)	3.1
해양경찰청	16.8
복지 역량 강화	16.5
총무 활동	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98.3
정보 통신 창의 인재 양성	513.2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433.6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369.6
방송 콘텐츠 진흥	32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16.8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316.3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R&D)	286.7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281.9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223.0
SW 산업 기반 확충	215.5
ICT 창의기업 육성	183.4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170.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R&D)	131.9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128.6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114.5
연구 개발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114.1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110.2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정보화)	81.1
KBS 대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76.0
해외IT지원센터 운영	57.7
공공 SW 사업 선진화(정보화)	56.8
BTL 전문 과학관 지원	53.6
미디어 다양성 증진	49.2
DB 산업 육성(정보화)	46.4
평창 ICT동계올림픽 추진	45.5
국악 방송 지원	44.2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 조성	43.4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기반 구축(정보화)	41.6
지역 SW 산업 진흥 지원(정보화, 경제)	41.3
지역 · 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1.0
정보 격차 해소 지원(정보화)	39.6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R&D)	38.5
전파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34.8
K-ICT 전파 자원 선순환 개발 환경 조성	34.7
산업 생활 주파수 활용 기반 구축	33.3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R&D)	33.0
방송 광고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30.1
IT 활용 촉진(정보화)	29.6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28.5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23.0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21.7
우수 과학자 포상	21.0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17.4
고경력 과학 기술인 활용 지원	17.3
방송 광고 · 협찬 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15.6
SW 유통 활성화(정보화)	14.3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14.2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14.0
통신 시장 경쟁 상황 및 품질 평가	12.1
클린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정보화)	11.4

보조사업명	본예산 (2018년 기준)
방송 장비 산업 인프라 구축(정보화)	10.2
방송 평가 기반 조성	9.2
방송 통신 국제 협력 강화	9.0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	8.8
SW 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정보화)	8.6
이용자 전화 사기 대응 체계 구축	7.6
정보 통신 시험 인증 허브 기반 구축(정보화)	7.5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7.3
우수 기술사 육성 관리 지원	6.0
방송 정보 활용 기반 체계화	5.5
방송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4.9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3.8
전파 방송 관리	3.6
지역 SW 산업 진흥 지원(정보화, 세종)	3.0
지역 SW 산업 진흥 지원(정보화, 제주)	2.2
위치 정보 활용 긴급 구조 지원 체계 강화	2.2
지능 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 조성	0.0
총 합계	669414.6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7).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2017).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박기영

(2014). 한국재정. 법우사.

한국재정정보원

(2018). 2018 주요 재정통계.
(2018).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행정안전부

(201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

발간일 2018년 12월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02-6908-8200

인쇄처 (주)디자인 여백플러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409호
02-2672-1535

ISBN: 979-11-965521-0-7

© 한국재정정보원, 2018